

研究報告書 97-17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연구자 : 송광섭(원광대 교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 2 절 법률서비스의 개념	13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5
제 2 장 치안환경의 변화와 범죄추세	27
제 1 절 치안환경의 변화	27
제 2 절 현대범죄의 추세	32
제 3 장 법률서비스 관련업무의 실태조사 및 분석	37
제 1 절 경찰조직의 법률서비스 관련업무 내역 분석	37
제 2 절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경찰의 의식 및 태도 분석	45
제 3 절 경찰조직의 타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활동 현황	68
제 4 절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태도 분석	72
제 4 장 경찰의 역할과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의 기대효과 및 구축을 위한 착안점	95
제 1 절 경찰에 대한 역할 기대와 경찰의 역할 모델	95
제 2 절 우리 나라 경찰의 새로운 역할변화	99
제 3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의 기대효과	102
제 4 절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착안점과 입법론적 고려사항	105
제 5 장 법률서비스 관련 외국 사례와 우리 나라	109
제 1 절 외국의 사례	109

제 2 절	우리 나라	122
제 3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정리	122
제 6 장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129
제 1 절	대민봉사부서의 신설	129
제 2 절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 및 교육과정	135
제 3 절	정보관리시스템의 Networking	140
제 4 절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145
제 5 절	법률서비스 관련 업무지침 및 처리과정의 Manual화	147
제 6 절	타 기관과의 공조체제 수립	147
제 7 절	입법론적 보완	148
제 8 절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150
제 9 절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152
제 10 절	시민협력체제의 강화	153
제 11 절	외국인의 범죄와 보호	154
제 12 절	경찰사회사업가 제도	156
제 7 장	법률서비스체계의 도입모형 및 결언	158
제 1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모형	158
제 2 절	결 언	160
참고문헌		162
ABSTRACT		169
실문지		174

표 목 차

〈표 1〉 경찰서별 설문지 배부와 회수	17
〈표 2〉 일반시민의 설문지 구성	18
〈표 3〉 경찰의 설문지 구성	19
〈표 4〉 일반시민의 일반적 특징	19
〈표 5〉 경찰의 일반적 특징	21
〈표 6〉 전체범죄 발생·검거현황(1985~1995년)	32
〈표 7〉 흉거소지현황(1995년)	33
〈표 8〉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범죄인중 점유비율(1986~1995년)	34
〈표 9〉 112 신고센터 설치현황(1995년 현재)	38
〈표 10〉 112 신고접수후 현장 도착시간(1991~1995년)	39
〈표 11〉 112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 현황(1991~1995년)	40
〈표 12〉 교통사고(인적사고) 발생현황(1991~1995년)	42
〈표 13〉 민원서류 처리실적(1990~1995년)	44
〈표 14〉 직업에 대한 사명감	45
〈표 15〉 학력별 직업에 대한 사명감	46
〈표 16〉 법률적 지식	47
〈표 17〉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	47
〈표 18〉 학력별 법률적 지식과 업무수행 곤란도	48
〈표 19〉 법률서적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49
〈표 20〉 교육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50
〈표 21〉 법률적 지식의 습득교육 기회도	50
〈표 22〉 교육을 통한 법률지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51
〈표 23〉 동료경찰관에게서 습득하는 법률적 지식	52
〈표 24〉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52

〈표 25〉 경찰관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업인 평가	53
〈표 26〉 친절봉사도 평가	53
〈표 27〉 경력별 친절봉사도	54
〈표 28〉 법률상담 요청도	55
〈표 29〉 연령별 법률상담 요청도	55
〈표 30〉 법률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56
〈표 31〉 담당업무별 법률서비스제공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57
〈표 32〉 법률서비스 부서의 설치 형태	57
〈표 33〉 경력별 법률서비스 설치형태	58
〈표 34〉 법률서비스 부서의 설치단위	58
〈표 35〉 직급별 법률서비스 설치단위	59
〈표 36〉 기존부서 활용시 가장 합당한 부서	59
〈표 37〉 인·허가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비중도	60
〈표 38〉 직급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도	60
〈표 39〉 고소·고발사건 법률서비스 제공도	62
〈표 40〉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62
〈표 41〉 청소년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63
〈표 42〉 교통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64
〈표 43〉 방범순찰 법률서비스 업무 제공	64
〈표 44〉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 선호도	65
〈표 45〉 경력별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 선호도	65
〈표 46〉 법률서비스 부서에 대한 근무 선호도	66
〈표 47〉 근무처별 법률서비스 부서 희망도	67
〈표 48〉 법률서비스부서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	67
〈표 49〉 주거지역의 범죄에 대한 안전	73
〈표 50〉 경찰과의 친밀도	73
〈표 51〉 성별 경찰과의 친밀도	74
〈표 52〉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74

〈표 53〉 경찰활동에 부정적인 이유	75
〈표 54〉 경찰이 노력하여야 할 점	75
〈표 55〉 민원상담실 이용도	76
〈표 56〉 연령별 민원상담실 이용도	77
〈표 57〉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이유	77
〈표 58〉 민원상담실 이용시 경찰관의 응대태도 평가	78
〈표 59〉 직업별 민원상담실 이용시 경찰관의 응대태도	78
〈표 60〉 민원상담실 이외의 기타 부서 이용도	79
〈표 61〉 기타 부서 이용의 종류	80
〈표 62〉 고소·고발기관 선호도	81
〈표 63〉 고소·고발시 경찰을 택하지 않은 이유	81
〈표 64〉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적 조력의 필요도	82
〈표 65〉 법률적 조력의 대상	82
〈표 66〉 학력별 법률적 조력의 대상	83
〈표 67〉 경찰을 찾아가 상담한 이유	84
〈표 68〉 경찰관의 법률지식에 대한 평가	85
〈표 69〉 경찰관이 법률적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85
〈표 70〉 법률서비스기관의 설치 요구도	86
〈표 71〉 법률서비스 제공부서의 형태	87
〈표 72〉 기존의 부서 활용시 관련도	87
〈표 73〉 법률서비스담당부서 설치 단위	88
〈표 74〉 직업별 법률서비스 단위	88
〈표 75〉 법률서비스 중점분야	89
〈표 76〉 연령과 법률서비스 분야 중점도	90
〈표 77〉 법률서비스 담당자 요구도	91
〈표 78〉 연령별 법률서비스 담당자 선호도	91
〈표 79〉 법률서비스 담당부서 장래 이용도	92
〈표 80〉 경찰이 직접 담당할 경우 이용도	93

〈표 81〉 경찰 이외의 사람이 담당할 경우 이용도	93
〈표 82〉 경찰이 직접 담당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	94
〈표 83〉 성별과 경찰관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	94
〈표 84〉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 자가 평가	102
〈표 85〉 법률서비스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경찰이미지 상승도	103
〈표 86〉 성별과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로 인한 이미지 상승도	104
〈표 87〉 직업별 법률서비스를 통한 경찰 이미지 상승도	104
〈표 88〉 고소·고발 접수현황	125

도 목 차

〈도 1〉 경찰청의 조직	132
〈도 2〉 서울지방 경찰청의 조직	133
〈도 3〉 직할시·도 지방 경찰청의 조직	134
〈도 4〉 경찰서의 조직	13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 경찰은 1945년에 창립된 이후 건국 초기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좌익과 공산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닦는 전국경찰로, 6·25전쟁시에는 생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하는 호국경찰로서 우리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후 불안정한 사회의 변혁과정에서 정치경찰·유신경찰 등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역할로 말미암아 정치권력의 속죄양으로 영욕이 점철되기도 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속의 각종 부조리와 부패의 적결, 반인륜적·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적활동의 방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경찰이 직무수행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오늘날 경찰의 임무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으나, 윌슨(O. W. Wilson)은 “범죄의 공격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설리반(J. L. Sullivan)은 “경찰의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은 생명·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예방, 법의 집행, 위반자의 체포와 유실물·도난품의 회복”이라고 하였다.¹⁾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임무 이외에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경찰의 임무도 다양화되고 있다. 즉 교통의 발달로 인한 도로교통의 과수꾼의 역할, 질서문란사범 및 풍속사범의 단속, 범죄인

1) 김상완, 경찰의 역할변화에 따른 대민관계의 재정립, 경태 논문집 제15집, 경찰대학, 1995, 426면

과 그 피해자의 구제,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봉사활동 등 많은 일들이 경찰의 임무가 되고 있다.

경찰의 임무는 크게 ① 범죄방지, ② 범죄진압, ③ 비범죄행위의 단속, ④ 봉사지원, ⑤ 개인의 자유보호 등으로 분류함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즉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그 기본적 임무로 되어 있다.

범죄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정도가 심하므로 각 국가에서는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찰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죄는 해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조직화·지능화·흉포화·기동화·광역화·연소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범죄수법도 날로 다양화하고 교묘해져 완전범죄화 할 가능성도 있어, 범죄수사활동은 점차 그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과학이 발달하여 첨단기술이나 전문지식을 범행에 이용하는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수사여건은 물적증거 확보의 어려움, 적법절차준수의 강화, 시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관심 고양, 시민의 경찰역할에 대한 기대감 증폭 등 다중적 딜레마로 인하여 날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문민정부출범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원, 고소·고발사건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검찰청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고소사건은 일본에 비하여 약 30배, 고발사건은 부러 200여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분쟁당사자간에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풍토가 미약한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현실점에서 적절한 치안시책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 이를 여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리 경찰, 그 중에서도 수사경찰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 중 가장 최일선에 서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므로 범죄현상에 수반하는 모든 위험부

담과 책임의식, 적정하고 명확한 의율, 인권의식 등을 일차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계층이 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강구해야 할 과제는 우리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국민의 욕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찰의 내·외부적인 시대적 상황과 사명하에서 우리 경찰은 더 이상 범집행관에 머물지 않고 인권보호관 또는 법무관으로서의 기능도 정립시켜 나가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민의 의식속에 그러한 역할이 분명히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더욱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영장발부진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진술 청취가 거의 의무화되다시피한 현행법체계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법률서비스체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법률서비스 부문에 집중적으로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경찰의 경찰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극대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법률서비스의 개념

현대국가의 법체계하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분쟁이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의 개인적인 자력구제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의 법적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 국가에 의한 권리구제나 법적보호의 수단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정의의 실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법적보호가 국민의 빈곤이나 무지에 의하여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법률복지증진에 많은 적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법의 불신 내지는 법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계층, 즉 부자나 빈자, 약자나 강

담과 책임의식, 적정하고 명확한 의율, 인권의식 등을 일차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계층이 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강구해야 할 과제는 우리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국민의 욕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찰의 내·외부적인 시대적 상황과 사명하에서 우리 경찰은 더 이상 범집행관에 머물지 않고 인권보호관 또는 법무관으로서의 기능도 정립시켜 나가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민의 의식속에 그러한 역할이 분명히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더욱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영장발부진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진술 청취가 거의 의무화되다시피한 현행법체계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법률서비스체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법률서비스 부문에 집중적으로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우리 경찰의 경찰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극대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법률서비스의 개념

현대국가의 법체계하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분쟁이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의 개인적인 자력구제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의 법적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 국가에 의한 권리구제나 법적보호의 수단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정의의 실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법적보호가 국민의 빈곤이나 무지에 의하여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법률복지증진에 많은 적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법의 불신 내지는 법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계층, 즉 부자나 빈자, 약자나 강

자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법률서비스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형사·민사·가사등 각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경미한 분쟁시 당사자간의 대화의 주선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민원 또는 고소·고발 등의 적절치 않거나, 낭비적이고 역기능적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확장적 개념

국민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쟁이나 법률분쟁 등에 직면하였을 때는 일차적으로 경찰의 조정이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는 엄격히 경찰업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하게 조력할 수도 없고, 한편 조력을 원하는 문제가 경찰의 소관업무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오히려 그 소극적 업무처리가 불만적 민원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민들의 모든 신고와 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내의 사항이 아닌 것은 상담을 거쳐 그 유관기관에 연결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서비스의 확장적 개념이란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수사, 정보, 방범, 경비, 보안 등의 경찰 전 부서의 법률서비스와 나아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자를 광의의 법률서비스로 보고, 후자를 최광의의 법률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한정적 개념

법률서비스의 한정적 개념이란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경찰의 수사에만 국한시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의 법률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그중에서도 수사경찰은 형사사법체계중 가장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며, 범죄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책임의식, 정확한 의욕, 인권의식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범죄 및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고소·고발 또는 민원의 폭주를 사전에 여과함으로써 인지 및 추적 수사에 치중할 수 있는 수사역량을 확보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3. 본 연구의 법률서비스의 개념

본 연구에서의 법률서비스의 개념은 상술한 확장적 개념의 최광의의 법률서비스에서 수사, 정보, 방법, 경비, 보안 등의 경찰 전부서에서의 법률서비스와 더 나아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및 자문,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지역사회문제, 생활환경문제, 법률분쟁의 중재 등을 포함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법률서비스체계의 구축은 우리 나라의 전체 형사사법기관의 법률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에서는 전술한 확장적 개념의 최광의의 법률서비스에서 수사, 정보, 방법, 경비, 보안 등의 경찰 전부서에서의 법률서비스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및 자문,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지역사회문제, 생활환경문제, 법률분쟁의 중재 등을 포함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가. 이론적 접근

우리 경찰은 그중에서도 수사경찰은 형사사법체계중 가장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는 막중한 위치에 있으며, 범죄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책임의식, 정확한 의욕, 인권의식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범죄 및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고소·고발 또는 민원의 폭주를 사전에 여과함으로써 인지 및 추적 수사에 치중할 수 있는 수사역량을 확보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3. 본 연구의 법률서비스의 개념

본 연구에서의 법률서비스의 개념은 상술한 확장적 개념의 최광의의 법률서비스에서 수사, 정보, 방법, 경비, 보안 등의 경찰 전부서에서의 법률서비스와 더 나아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및 자문,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지역사회문제, 생활환경문제, 법률분쟁의 중재 등을 포함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법률서비스체계의 구축은 우리 나라의 전체 형사사법기관의 법률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에서는 전술한 확장적 개념의 최광의의 법률서비스에서 수사, 정보, 방법, 경비, 보안 등의 경찰 전부서에서의 법률서비스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및 자문,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지역사회문제, 생활환경문제, 법률분쟁의 중재 등을 포함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가. 이론적 접근

이론적 접근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본 주제와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와 논문·서적 등에 의한 국내외 문헌연구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현황과 공식통계자료 및 기타 내부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찰의 역할모델과 국민의 기대모델을 추출해 보고, 아울러 선진각국의 경찰제도 및 경찰정책을 비교·검토하는 사례연구를 행한다.

나. 실증적 접근

실증적 접근방법으로는 일반시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체계구축에 필요한 因子들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연구와 접목시켜 1차적으로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2차적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도입의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1)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과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 481부가 회수되어 96.2%의 설문조사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라북도의 전주,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에 대한 기초훈련을 받은 대학생 30명이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역, 티비널, 관공서, 병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1996년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면접원에 대하여 설문조사상의 어려움을 알아 본 결과 시민들이 '미찮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설문응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2) 경찰에 대한 설문조사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찰의 의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각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경찰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경찰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발송 및 회수를 하였는데, 그 중 463부가 회수되어 92.6%

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설문조사기간은 199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각 경찰서별 설문지 배부와 회수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경찰서별 설문지 배부와 회수

구 분	배 부	회 수
전주경찰서	45	43
전주북부경찰서	55	52
익산경찰서	55	51
군산경찰서	55	46
고창경찰서	20	20
부안경찰서	20	19
완주경찰서	20	20
순창경찰서	30	18
남원경찰서	40	40
정주경찰서	40	39
김제경찰서	40	38
무주경찰서	20	20
임실경찰서	20	20
진안경찰서	20	20
장수경찰서	20	17
합 계	500	463

3) 설문지의 구성

(가) 일반시민의 설문지 구성

일반시민용의 설문지 구성은 시민의 경찰 및 치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의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이와 관련되는 문항 및 경찰의 법률서비스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인식되고 있는 민원상담실에 대한 시민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민의 가장 적극적인 대법죄활동의 요구

표시인 고소, 고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고소, 고발을 택하는 기관에 관련된 문항과 일반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경찰이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식의 정도를 일반시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시민이 바라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시민의 설문지 구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시민의 설문지 구성

설문내용	문항수
1. 경찰 및 치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5문항
2. 민원상담실 이용실태	5문항
3. 고소·고발시 선호하는 기관	2문항
4. 일상생활에 있어서 법률적 필요도	3문항
5. 경찰의 법률적 지식정도에 대한 시민의 평가	2문항
6. 경찰의 법률서비스 형태 파악	11문항
7. 일반적 사항	8문항
합 계	36문항

(나) 경찰의 설문지 구성

경찰의 설문지 구성은 경찰의 일반적인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는 대상의 정도를 알아 보는 문항, 직무수행에 있어서 또는 앞으로 법률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법률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찰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과 범죄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의 사항을 해결하는 주 일무를 수행하고 있는 112제도에 관한 문항도 삽입하여 自家評價度를 측정해 보았다.

생치안을 더욱 강조하면서 경찰은 시민과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시민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민주질서의 정착 노력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에는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의 독자적 관청형태를 유지시켰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분민적 경찰위원회의 구성하였고, 집회시위의 허가와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거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국민의 경찰에 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대시민 서비스 요청이 많아져 가는 추세에 맞추어서 경찰의 역할도 대 국민 서비스 위주이어야 한다. 경찰의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관리체제도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 국민서비스 중심적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³⁵⁾

첫째,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불편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설문, 상담, 제안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파악되는 행정수요나 국민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향후 경찰시책에 반영되어야만이 앞으로 경찰의 대응성이 개고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된다.

둘째, 대민봉사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지침만을 기다리거나 지침을 그대로 집행만 해 가지고는 대민봉사의 강화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초일선기관에 있는 경찰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대 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대민봉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찰내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관리차원에서 분임조, 스터디그룹 등의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봉사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지향적, 서비스 지향적, 문제해결적 경찰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직자의 능력개발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경찰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능력의 예로서

35) 김상환, 경찰의 역할변화에 따른 대민관계의 성립, 445면 이하 참조

결 혼 여 부	빈 도	%
미혼	217	45.1
기혼	246	51.1
이혼	7	1.5
사별	8	1.7
기타	3	0.6
합 계	481	100
가 족 수	빈 도	%
2인미만	18	3.77
3-4인	237	49.3
5-6인	192	39.9
7인이상	34	7.1
합 계	481	100
학 력	빈 도	%
중졸	28	5.8
고졸	174	36.2
전문대졸	233	48.4
대졸	20	4.2
대학원졸	26	5.4
합 계	481	100
직 업	빈 도	%
학생	105	21.8
회사원	73	15.2
자영업	59	12.3
공무원/국영기업	92	19.1
전문직	31	6.4
농·수산업	17	3.5
주부	53	11.0
생산직	11	2.3
기타	40	8.3
합 계	481	100

주거지역	빈도	%
상가지역	33	6.9
농촌지역	96	20.0
아파트지역	175	36.4
위락지역	2	0.4
주택지역	168	34.9
기타	7	1.5
합계	100	100
생활수준	빈도	%
상	6	1.2
중상	86	17.9
중	293	60.9
중하	71	14.8
하	25	5.2
합계	481	100

(나) 경찰

경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40.4%, 학력별로는 고졸 66.2%, 월수입별로는 150만원이하 57.9%, 생활수준별로는 중수준이 47.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직급별로는 경장이 33.2%, 경력별로는 5년미만이 32.9%, 담당업무별로는 기타(경비 11, 정보 27, 보안 23, 교통 31명 등)가 44.4%, 근무처별로는 경찰서가 80.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5> 경찰의 일반적 특징

연령	빈도	%
20-29	59	13.0
30-39	183	40.4
40-49	126	27.8
50세이상	85	18.8
합계	453	100

학 력	빈 도	%
고졸이하	9	2.0
고졸	300	66.2
대졸	126	27.8
대졸이상	11	2.4
기타	7	1.5
합 계	453	100
월 수 입	빈 도	%
100만원이하	74	16.5
150만원이하	260	57.9
200만원이하	95	21.2
200만원이상	20	4.5
합 계	449	100
생 활 수 준	빈 도	%
상	2	0.4
중상	27	6.0
중	216	47.9
중하	156	34.6
하	50	11.1
합 계	451	100
직 급	빈 도	%
순경	128	28.3
경장	150	33.2
경사	135	29.9
경위	32	7.1
경감	7	1.5
정정이상	—	—
합 계	452	100

경찰경력	빈도	%
3년미만	22	4.9
5년미만	149	33.0
10년미만	50	11.1
20년미만	131	28.9
20년이상	100	22.1
합계	452	100
담당업무	빈도	%
수사담당업무	45	10.0
조사담당업무	22	4.9
방법담당업무	100	22.2
형사담당업무	36	8.0
경무담당업무	47	10.4
기타	200	44.4
합계	450	100
근무처	빈도	%
경찰서	366	80.6
파출소	88	19.4
합계	454	100

5) 설문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설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설문분석을 위하여 동원한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본의 추출은 층화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5%의 유의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적정수를 고려하여 추출되었다. 선정된 대상층정의 단위는 개인수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요인분석에 필요한 분석을 위하여 집단수준으로 분석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즉 본 조사는 층화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은 대상으로 조사하게 될 설

문구성은 각 문항에 등간격을 부여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의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코딩(Coding)을 거친 후 PC용 SA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된 통계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분할표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고찰하면, 먼저 조사대상표본의 특성과 이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 등의 내용에 대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집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할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할표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Chi-Square 검증은 기대빈도와 관찰빈도의 차이를 통계적 계산에 의하여 수치를 산출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추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특성을 구성하는 각 항목들과 경찰 및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반 항목들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 및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의 유의성은 F 검증으로 가능하며 이 방법은 집단간의 변화도가 충분히 커서 집단내의 변화도와 비교함에 있어서 상이한 집단이 모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은가의 추정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문항들간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의 관계분석은 이들 변수 모두가 등위척도 이상의 자료로 변환한 다음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상관도 위의 각 점을 회귀선이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나를 가리켜 주는 측정치이다. 사례가 회귀선에 많이 벗어날수록 r은 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두 변수간의 관련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3.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로서 예상되는 주요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범죄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원천적인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되어 신속하고 확실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고소·고발사건 또는 민원의 폭주를 여과함으로써 인하여 사건의 건수가 감소되어 비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사건의 건수가 감소하게 되어 보다 조사업무에 충실화를 기할 수 있고, 인지수사 및 추적수사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법준수의식의 고양과 아울러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된다.

셋째, 민원인, 장애인, 노인, 소외계층 등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한 이웃중심의 봉사활동으로 경찰에 대한 기피심리가 개선되어 민경협력체제가 확립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개선에 기여한다.

넷째, 법률서비스 정책을 경찰내부적으로 활용하여 의율의 정확성과 충실함을 기할 수 있고, 수사요원들의 자질이 향상됨으로서 이에 의한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수사분야 이외의 교통, 방법분야 등에도 이와 같은 치안서비스를 준용하여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의 연계 및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즉 경찰조직의 합리적인 기능의 분리로 경찰의 새로운 역할과 다양한 수준의 업무분야를 발굴하여 범죄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법률서비스의 제공 등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자세의 확립으로 경찰 이미지의 제고에 기여한다.

여섯째, 법률서비스 정책의 연계선상에서 후속적인 치안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아감으로써(예컨대, 적극적인 경찰 홍보, 법집행 탐구 프로그램 등) 경찰과 일반 국민들의 관계가 보다 더 친밀해지고 이로 인한 국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행정이 효율적인 발전과 경찰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일곱째, 지역거점치안체계에서 통신 및 정보거점체제로 전환되어 민생치안의 역할이 강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의 법률교육의 강화로 경찰조직의 리엔지니어링의 가속화가 달성되어 질적 수준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습득으로 경찰의 엘리트화가 달성된다. 전문상담요원의 임용과 경찰 내부 인력의 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자원의 체계적인 확보로 법집행 분야의 의율의 정확을 기할 수 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서비스체계의 구축의 결과 장래에 있어서 경찰이 형사사법체계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시금석을 확보한다.

제 2 장 치안환경의 변화와 범죄추세

제 1 절 치안환경의 변화

1. 도시화와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다양화

수도권의 비대화 및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신전됨으로서 대도시의 인구부담이 그 세력권 및 통근권내 중소도시로 확산되어 대도시 인구의 고밀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의 집중에 따르는 거래관계의 복잡화 및 대량화, 인구의 이동에 따른 사회적 유대감의 약화,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관 불일치,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의 확산, 빈부격차 및 빈민지역의 형성 등이 범죄유발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화의 역기능 측면에서 상호 관계되는 범죄유발요인은 사회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면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행의 은닉이 용이하게 되며,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범죄의 유형이 발생되고 있다.

결국 도시화의 지속적인 진전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는 경찰은 지역주민의 공동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며, 이를 경찰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²⁾

더욱이 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는 단순한 근로공간이기 보다는 소비와 생활공간으로서 이용되며, 도시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는 생활의 질을 전체적으로 저하시키게 되고, 소득 계층간 지역적 격리현상이 나타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지고 범죄권역이 형성될 수도 있다. 아울러 도시화는 도심업무지역의 주야간 인구의 유동성, 24시간 유흥가의 소도시화, 쇼핑과 오락을 위한 위탁지구의 형성으로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유류 및 가스 등 위험물의 산재, 지

2) 김보환,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5, 35면

라도와 고밀도 고층아파트 및 고층빌딩 군의 형성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허의 대규모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도시화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과 규범의식의 와해, 범죄억제력의 저하, 도시의 특성인 이질성·익명성과 비인격성, 상대적 박탈감이 도덕기준을 해이하게 하는 등 범죄촉진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개인주의적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는 타인의 생활과 주위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어 범죄의 신고 또는 경찰활동에의 협력을 기피하게 되고 간섭을 싫어하게 되므로 수사를 비롯한 경찰활동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법률서비스 기능의 강화는 개인주의 의식이 팽배한 도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2. 교통량의 격증과 생활권역의 확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수단의 발달은 동시에 사고의 다발에 의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새로운 범익침해의 형태를 만들어 냈고, 도로교통망이 확장됨에 따라 전국이 일일생활권역화가 되어 교통의 혼잡과 교통사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의 우리 현실은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교통사고는 차량의 증가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도로교통의 문제는 비단 도시에서의 현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로 경찰행정에 있어서도 기동화 및 광역화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 대한 경찰의 법률서비스는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접촉사고 등의 경미한 사고에 의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민생치안수요의 증가

지방자치제의 추진과 병행하여 지역적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확산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 및 행정능력의 보장을 위한 제반 시책의 실시와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요의 증

대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에의 집중에 따른 지방도시의 침체와 농촌의 일부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농민의식의 급진화 경향과 취업과 교육을 위한 농촌떠나기로 농촌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는 반면 농촌문제의 도시화가 이루어져 농촌지역의 치안수요는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자치권을 이양받고자 부단한 요구를 하게 되며, 스스로 자치기능의 영역을 넓히고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지방별료의 특성과 여건이 강조되는 다양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치안행정의 환경과 수요도 큰 상이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자 생활자치로 발전되어갈 것이므로 민생치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자치권의 신장과 자치활동의 확대에 비례하여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어진다.³⁾

4. 활발한 국제교류와 정보화사회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모시켜 국가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의 증대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제3세계 및 사회권 국가와의 교류도 활성화되어 이념의식이 희박하여지고 좌경의식이 과도기적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안보의식의 정립과 대공활동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내국인 및 교포의 해외활동은 생활공간 자체를 지구촌으로 확장시키고, 세계 각국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왕래하게 되어 범죄의 국제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다양한 정보의 균점으로 국민의 문제의식과 비판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반면 정보의 홍수속에서 주체적인 선택적 수용이 더욱 어려워져 부화뇌동적인 사고를 촉발시켜 집단적 반응을 일상화시키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사회의 이기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⁴⁾ 따라서 경찰행정

3) 김안개, 국제화·개방화·지방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예측, 21세기 경찰발전방향, 치안연구소, 1994, 23면

4) 송광섭, 형사정책, 대왕사, 1996, 559면 이하 참조

에 있어서도 고도정보화사회의 기술과 관리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시행하여 무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생활수준의 향상과 형평의 요구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는 레저공간을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생활 여성인구의 증가 및 독신세대와 일반화에 따른 주거지역의 방범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신용사회의 정착은 개인수표 및 신용카드의 상용에 따르는 신용관련범죄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는 타인의 법익보다는 자기의 법익을 중시하여 自衛意識이 제고되는 반면 공공의 보호를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고 형평의 요구를 대중운동이나 지역사회운동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에 따른 연령별·계층별 가치관의 다양화와 기존 도덕 및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지역사회 상부상조적 공동체의식의 결여는 경찰활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6. 청소년의 성인범죄화 심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반항심·신체적 급변 그리고 정서의 가변성 및 사회적 미성숙 등으로 요약되는 성장발달 과정상의 과도기이다. 즉 청소년은 그 특성상 세반사회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은 가정·학교를 비롯한 사회의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학교 및 주택, 유흥업소 등의 불량환경이 존재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인성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가정환경적 측면에서도 도시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나타나는 핵가족화, 소외현상 등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가정은 교육적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일탈, 비행 등의 상담을 통하여 이들이 성인범죄를 범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시민의식의 성숙과 인권의식의 고양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안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문제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찰은 제한된 인력과 열악한 장비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해 국민들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민주경찰의 지위와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국민에게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그 당위성을 가진다.

8. 신종범죄의 출현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과학이 발달하여 첨단기술이나 전문지식을 범행에 이용하는 신종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종범죄를 대표적인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로서는 컴퓨터범죄, CD범죄, 개인정보침해범죄, 인쇄·복사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화위조·문서위조 등의 범죄, ②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로서는 보험금목적 범죄(살인·방화·교통사고 등), 신용카드범죄, ③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신종범죄로서는 지하철 범죄, 지하주차장범죄 등 도시 사각지대범죄, 동거없는 살인 등의 범죄, ④ 산업화에 따르는 환경범죄 ⑤ 국제화·개방화에 따르는 위약인범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⁵⁾

이러한 새로운 범죄들이 출현하는 현상에 따라 경찰의 각 부분별 담당 직원에

5) 김보환,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강화방안, 25면

의한 법률서비스는 일반국민의 무지에서 또는 부주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예방을 도모할 수 있고, 형사법관계의 경제적·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제 2 절 현대범죄의 추세

1. 범죄의 양적증가

범죄는 국민소득의 향상이나 복지정책만으로는 감소되지 않는다.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의 양적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은 <표 6>과 같다. 발생건수는 1985년에 810,416건이던 것이 1994년에는 1,373,407건, 1995년에는 1,399,085건이 발생하였다.

<표 6> 전체범죄 발생·검거현황(1985~1995년)

구분 년도	발생건수	전년 대비		검거율 (%)	검거인원	총인구 (단위: 1,000명)	인구비
		증감율 (%)	검거건수				
1985	810,416	0.8	693,270	85.5	885,765	40,806	1,986
1986	809,660	-0.1	704,874	87.0	902,895	41,134	1,966
1987	946,390	16.9	825,601	87.2	1,054,407	41,575	2,276
1988	968,965	2.4	856,517	88.4	1,114,468	41,975	2,308
1989	1,073,997	10.8	949,308	88.4	1,179,156	42,330	2,534
1990	1,171,380	9.1	1,047,760	89.4	1,326,775	42,733	2,737
1991	1,230,118	5.0	1,130,262	91.9	1,418,168	43,238	2,843
1992	1,241,102	0.9	1,135,146	91.5	1,451,942	43,633	2,842
1993	1,359,094	9.5	1,298,637	95.6	1,658,992	44,056	3,123
1994	1,373,407	1.2	1,246,582	90.8	1,582,428	44,453	3,056
1995	1,399,085	1.0	1,269,375	90.7	1,599,930	44,850	3,119

※ 자료: 범죄백서

주: 인구비는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의한 법률서비스는 일반국민의 무지에서 또는 부주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예방을 도모할 수 있고, 형사법관계의 경제적·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제 2 절 현대범죄의 추세

1. 범죄의 양적증가

범죄는 국민소득의 향상이나 복지정책만으로는 감소되지 않는다.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의 양적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은 <표 6>과 같다. 발생건수는 1985년에 810,416건이던 것이 1994년에는 1,373,407건, 1995년에는 1,399,085건이 발생하였다.

<표 6> 전체범죄 발생·검거현황(1985~1995년)

구분 년도	발생건수	전년 대비		검거율 (%)	검거인원	총인구 (단위: 1,000명)	인구비
		증감율 (%)	검거건수				
1985	810,416	0.8	693,270	85.5	885,765	40,806	1,986
1986	809,660	-0.1	704,874	87.0	902,895	41,134	1,966
1987	946,390	16.9	825,601	87.2	1,054,407	41,575	2,276
1988	968,965	2.4	856,517	88.4	1,114,468	41,975	2,308
1989	1,073,997	10.8	949,308	88.4	1,179,156	42,330	2,534
1990	1,171,380	9.1	1,047,760	89.4	1,326,775	42,733	2,737
1991	1,230,118	5.0	1,130,262	91.9	1,418,168	43,238	2,843
1992	1,241,102	0.9	1,135,146	91.5	1,451,942	43,633	2,842
1993	1,359,094	9.5	1,298,637	95.6	1,658,992	44,056	3,123
1994	1,373,407	1.2	1,246,582	90.8	1,582,428	44,453	3,056
1995	1,399,085	1.0	1,269,375	90.7	1,599,930	44,850	3,119

※ 자료: 범죄백서

주: 인구비는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2. 범죄의 질적 변화

가. 범죄의 흉포화·잔인화

근래의 범죄양상은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하고 흉악하다. 즉 권총·공기총 등의 총기류, 생선회칼·대검 등의 도검류, 쇠파이프·야구방망이 등의 둔기류 등을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케 하고 있다. <표 7>는 흉기소지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범행중 흉기를 소지한 비율은 살인이 66.4%, 강도가 38.9%이며, 사용흉기의 종류는 모두 도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살인은 63.2%가, 강도는 65.5%가 도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흉기준비현황을 보면 살인의 경우 사전준비를 한 경우가 24.7%, 피해자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10.6%이며 강도의 경우에는 사전준비를 한 경우가 27.6%, 피해자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10.9%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의 비율이 매우 커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표 7> 흉기소지현황(1995년)

구분	죄명		살인	강도
	계			
흉기소지상황	계		708	4,152
	소지무		238(33.6)	2,538(61.1)
	흉기소지		470(66.4)	1,614(38.9)
	총기		25(5.3)	19(1.2)
	도검		315(67.0)	1,057(65.5)
	약물		13(2.8)	6(0.4)
	둔기		67(14.3)	258(16.0)
	기타		50(10.6)	274(17.0)
흉기준비상황	계		470(100)	1614(100)
	사전준비		116(24.7)	446(27.6)
	피해자것사용		50(10.6)	176(10.9)
	기타		304(67.1)	992(61.5)

※ 자료 : 범죄백서

주: 1. ()안은 %.

2. 강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 강도강간 등) 포함.

나. 범죄자의 연소화

〈표 8〉은 최근 10년동안 전체범죄인(검거인원)중 소년범의 점유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소년범은 10만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인 중 점유비율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년대비 증감율이 1990년 -2.3%, 1991년 -2.9%, 1992년 -3.2%, 1993년 11.4%, 1994년 -2.0%, 1995년 14.7%인 점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 8〉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범죄인중 점유비율(1986~1995년)

년도	구분	전 체	전년대비	전체범죄인중	소 년	소 년
	소년범	소년범	증감율(%)	점유비율	형법범	특별법범
1986		106,355	4.0	13.1	89,206	17,149
1987		97,849	-8.0	9.3	80,025	17,824
1988		104,052	6.3	9.3	80,641	23,411
1989		108,015	3.8	9.2	85,428	22,587
1990		105,567	-2.3	8.0	82,446	23,121
1991		102,537	-2.9	7.2	72,413	30,124
1992		99,301	-3.2	6.8	67,553	31,748
1993		110,604	11.4	6.7	74,465	36,169
1994		108,342	-2.0	6.8	77,476	30,866
1995		124,244	14.7	6.8	85,461	38,783

※ 자료: 범죄백서

주: 1. 폭력행위처벌법범과 성폭력특별법범은 형법범에 포함

2. 14세미만 보호소년 제외

나. 범죄의 조직화·집단화

형법범을 중심으로 한 범죄의 공범에 있어서는 검거건당 검거인원이 적을수록

구성비는 높다. 그러나 주요범죄(강력범·폭력범·절도범)에 있어서는 공범수가 클수록 급증하고 있어 주요범죄를 중심으로 한 범죄의 집단화·조직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범죄가 집단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범죄는 범죄의 직업화를 통한 범행의 상습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생치안의 확립에 있어서는 조직범죄의 발본색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항상 순찰시 주의깊게 관찰하고 마스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폭력을 증오하고 거부하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⁶⁾

라. 범죄의 기동화·광역화

자동차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범죄권화되어 범죄의 기동화·광역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차량이용범죄는 주로 차량의 도난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적 보완이나 소유주의 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찰에서는 방법·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 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순찰할 필요가 있으며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도난차량을 수배 또는 차량절도범을 검거하여 도난차량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⁷⁾ 따라서 경찰내 대민봉사부서에서 도난차량 신고 접수시 즉각 각 검문소당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범죄의 지능화·전문화

사회의 산업화·과학화·전문화는 범죄에도 현대의 발달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

6)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는 송광섭, 형사정책, 589면 이하 참조

7) 도난차량의 회수를 위하여 1996년 전라북도 경찰청에서는 한 민간도난방지시스템 개발회사와 공동으로 차량추적신호장치를 이용한 도난방지차량 회수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를 보였다.

하게 됨으로써 점차 그 수범이 지능화·전문화 경향을 띠고 보험금 사기·컴퓨터 이용범죄·신용카드 범죄 등 신종범죄의 출현과 더불어 사기·횡령·배임·경계범죄나 화이트 칼라 범죄 등 지능범죄가 증가함은 물론 그렇지 않은 범죄도 완전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그 수범이 교활해지고 있다.

바. 외국인 범죄의 급증

우리 나라는 1980년대초에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외국인의 출입국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저급에 이르기 까지 급격한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의 급증이 불법체류자의 처리와 함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증가와 그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내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처하던 수사환경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및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 등에 대한 범죄로 변화하여, 이들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통역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제 3 장 법률서비스 관련업무의 실태조사 및 분석

제 1 절 경찰조직의 법률서비스 관련업무 내역 분석

경찰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이렇듯 법에 규정된 우리 나라 경찰의 수행기능은 매우 포괄적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거의 전 부처에서 요구하는 방대한 양의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부서와 관련업무를 간략하게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1. 방 법

방법은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으로, 경찰기능 중 가장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방법기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또는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사전계몽 또는 지도행정의 방식으로 해 나가야 한다.

경찰의 청소년보호 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파악, 지도·단속, 비행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 보호 및 수배,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절인·부랑아 단속 및 보

- 8) 그러나 협조를 의뢰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업무는 조사 및 단속과 처벌을 해당기관이 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과 조사 및 단속등의 단순 업무는 해당기관이 독자적으로 하되, 그 결과에 따른 처벌 등의 조치에 관해서만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 고유기능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인 업무에 관하여 협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호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여 용이하게 범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선·교화도 쉽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경찰이 각급학교에 일일교사가 되어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약물남용방지 교육 및 청소년들의 고민 또는 법률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가출 청소년이 찾아가기 쉬운 직업소개소·유용접객업소 등의 불법취업알선 및 고용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행·불우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교실⁹⁾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법순찰에 관하여 살펴보면, 방법순찰업무에는 112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지령실 운영, 방법순찰기획 및 배치(실제 순찰업무는 주로 파출소에서 수행)와 방법순찰지도·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2제도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SOS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들 생활 속에 “범죄신고는 112”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고 있다. 1987년에는 C3 제도가 도입되어 112신고 즉응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신고접수후 3분 이내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¹⁰⁾ 112신고센터 설치 현황은 <표 9>과 같다.

<표 9> 112 신고센터 설치현황(1995년 현재)

개	주신고센터		경찰서 신고센터	보조센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통합센터		
	9개소	6개소	135개소	82개소
232개소	지방청 소재 도시권 통합운영	대도시 경찰서와 인접경찰서 구역통합운영	경찰서별 단독운영	직접 112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통합센터의 지령을 받는 경찰서 센터

* 자료 : 경찰백서

9) 사랑의 교실은 비행청소년의 자성교육의 일환으로 한국 BBS연맹·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등 청소년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비행청소년, 불량소년, 각급 중·고등학교의 문제학생 및 단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경찰백서, 77면 이하 참조
10) 1995년중 112 신고접수후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전체의 약 58.1%로 나타나 있으며, 5분 이내에 출동한 경우는 90.9%로 나타나고 있다.

112제도는 위험에 처해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어김없이 경찰이 달려와 준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점에서 112제도를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¹¹⁾ 112제도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부름에 얼마나 빨리 응할수 있는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112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낡고 노후한 장비를 현대의 최첨단 기기로 대체하여야 하며, 지령실 운영체제도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전문성 및 상황 대응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과 가장 근접해 있는 파출소마다 112순찰차가 배치되어 기동력 있는 순찰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¹²⁾

〈표 10〉 112 신고접수후 현장 도착시간(1991~1995년)

구 분	총 출동건 수	3분이내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이상
1991	616,124 (100)	268,853 (43.7)	217,752 (35.4)	94,130 (15.2)	35,389 (5.7)
1992	583,991 (100)	370,673 (54.2)	204,793 (29.9)	87,268 (12.8)	21,257 (3.1)
1993	816,984 (100)	469,710 (57.5)	259,987 (31.8)	77,046 (9.4)	10,241 (1.3)
1994	1,038,325 (100)	510,786 (49.2)	373,700 (40.0)	135,848 (13.1)	17,991 (1.7)
1995	1,211,951 (100)	704,164 (58.1)	398,093 (32.8)	99,176 (8.2)	10,518 (0.9)

※ 자료: 경찰백서

11) 1994년에는 1993년보다 약 29% 증가된 117만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1995년에는 130만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1994년보다 11%가 증가 하였다. ; 경찰백서 42면 참조

12) 1995년말 전국 3,404개 파출소 중 수요가 많은 2,033개소에 1대 내지 2대씩 총 2,298대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전 파출소에 빠짐없이 배치되어야 한다. ; 경찰백서, 42면 참조

112신고 후 112제도의 직접적인 성과는 출동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1995년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 5대 범죄사범의 현장검거율은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여 약 24%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범죄의 기동화·광역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표 11) 112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 현황(1991~1995년)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신청접수(건)	272,128	294,889	257,422	389,321	302,842
현장검거(건)	73,669	128,659	89,718	99,008	72,564
검거율(%)	21.1	43.6	34.9	25.4	24.0

※ 자료 : 경찰백서

또한 112신고를 통해 비단 범죄상황 뿐 아니라 응급환자나 수험생들의 수송 등 시민들의 각종 긴급상황에 경찰이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와줌으로써 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봉사자로서 인식되어 신뢰받는 경찰이 되고 있다.

2. 수 사

조사업무는 대부분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의 민원업무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은 사기나 횡령과 같은 지능범죄, 풍속범죄, 폭력범죄 등과 같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가 많기 때문에, 고발·진정·탄원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업무는 먼저 법률서비스 부서의 대민봉사부서에 접수시켜 상담을 통하여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민원업무를 여과시켜 남은 경찰력을 다른 경찰활동에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

유치장관리업무는 피의자의 유치·면회·호송, 보호실관리, 영치금 수불 등을 포함한다. 이때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형사업무는 강력사건, 폭력사건, 절도사건 및 그 밖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서부업무를 포함한다. 범죄수사는 헌행법상의 수사절차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수사활동의 이념인 실제적 진실발견과 인권 보상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며 수사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적극 실현하여, 피해자의 신변과 비밀을 보호해 주며 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피의자,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법률전문가로서 자문역을 두는 제도가 있다.¹³⁾ 우리 나라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자, 우수 수사간부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여 유치장 관리지도, 피의자 상담, 수사외의 사건 처리 및 지도, 경찰관 정신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하다.

3. 교 통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교통행정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사정, 교통혼잡상황, 교통사고 발생 등의 교통정보를 운전자들에게 빠르게 제공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대비토록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에서는 교통정보센터내에 현장방송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연발연시 등 교통량이 급증되는 때에는 특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통전문방송으로 자리잡은 교통방송국(TBS)이 1990년 개국

13) 형사정책연구원,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149면.

하였는데,¹⁴⁾ 여기에서는 서울지방청 교통정보센터 및 교통경찰과 직접 연계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은 최근 5년간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24만 8천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0,323명(하루 평균 28.3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¹⁵⁾

〈표 12〉 교통사고(인적사고) 발생현황(1991~1995년)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발 생 건 수	265,964	257,194	260,921	266,107	248,865
사 망 자	13,425	11,640	10,402	10,087	10,323
부 상 자	331,610	325,943	337,679	350,892	331,747
인구10만명당 사망자	31.1	26.7	23.6	22.7	23.0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	32	22	17	14	12

※ 자료 : 경찰백서

한편 교통경찰하면 흔히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교통사고 예방 및 처리, 교통소통 확보,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운전면허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범죄의 기동·광역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범죄차량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범인 검거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교통경찰은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매연·소음·사고의 위험 등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만큼, '거리의 봉사자'로서 사고예방 및 국민불편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4) 교통방송국은 당초 경찰에서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개국하였다가, 1991년 8월 경찰청이 발족하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15) 교통사고율이기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사망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뿐 아니라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외사업무

외사업무에는 외국인, 교포, 외국기관, 외국인고용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사검보수집, 외사관계 신원조사, 외국인 및 교포 범죄수사, 대 테러동향 및 신원특이자 동향관찰 등이 포함된다.

외사업무는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국제사회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가간 인적·물적교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범죄·환경오염·핵문제 등의 확산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가 인류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범죄현상의 탈국경화 추세가 되고 있고, 마약밀매·총기류 밀반입·밀수·국제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조직, 외화위조 및 밀반출 등에 대하여 특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력 향상과 근로자의 3D현상 심화¹⁶⁾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불법취업·체류 및 이들에 의한 범죄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출입국 자체의 엄격한 정책에서 한걸음 더 발전하여 체류자에 대한 엄격 관리도 병행하는 정책의 전환이 요청된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체류자의 동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들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전국적 세포 조직망이 있고, 현장에서 그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 내무부와 방법·수사 등과 같은 특별분야의 경찰조직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행정위주의 사고도 앞으로는 적법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호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¹⁷⁾ 즉 외국인 입국에 대한 규제위주의 조직으로부터 거주관리·경력관리 및 서비스 위주의 조정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16) 3D란 Difficulty, Dirty, Dangerous 이다.

17) 박준희, 불법체류 외국인에의 적대적 범죄, 수사연구, 1998, 5, 31면.

뿐만 아니라 외국인 체류에 의한 역기능적 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기관인 경찰조직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의 폭증현상에 상응하도록 그 조직의 확대·개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는 외사과를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확대설치하고, 나아가 전 경찰서도 확대시켜 대민봉사부서와 협력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민원업무

민원업무는 민원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원봉사실에서 주로 접수·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경찰 인·허가, 증명확인 및 고소·고발에 관련된 사항이다. <표 13>를 보면 민원서류 처리실적이 1990년에는 234만여건이었던 것이 갈수록 증가하여 1994년에는 총 590만여건, 1995년에는 650만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경찰청에서는 1994년 2월부터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 및 하이텔에 '경찰청 서비스'를 개설, 운영중이며 각 지방청에서도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표 13> 민원서류 처리실적(1990~1995년)

연 도	계	인·허가	증명확인	진정·탄원	고소·고발	질 의	구 의	기 타
1990	2,340,083	798,190	69,140	26,904	67,923	9,149	4,205	542,007
1991	5,093,046	1,126,184	3,220,641	29,748	417,403	3,762	1,25	294,183
1992	5,383,501	1,171,727	2,251,368	29,742	427,034	1,826	1,558	1,500,264
1993	6,139,189	942,105	2,775,580	38,635	537,948	749	1,573	1,842,599
1994	5,929,139	792,789	3,248,785	36,265	667,314	1,111	1,928	1,180,947
1995	6,524,612	1,355,382	3,366,636	36,171	657,449	1,222	1,575	1,106,177

※ 자료 : 경찰백서

그러나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일반 주민들은 민원상담실에 있는 경찰관들의 응대태도는 비교적 친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70.3%),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시행되어야만 하며 위의 민원사항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상의 문제,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등 어떠한 문제라도 상의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기다리는 민원행정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경찰이 됨으로서 신뢰받는 경찰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경찰의 의식 및 태도 분석

1. 경찰의 의식 및 태도 분석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질문 항목에 대한 단순빈도를 추출하였고, 필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무경력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직급별, 담당업무별 교차분석을 하여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경찰의 의식 및 태도를 분석하였다.

가. 경찰공무원의 사명감

1) 직업에 대한 사명감(전체)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는 질문에 97.4%가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직업에 대한 사명감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267	62.3
(2) 그렇다.	162	35.1
(3) 그저그렇다	7	1.5
(4) 그렇지 않다	3	0.7
(5) 전혀 그렇지 않다	2	0.4
합 계	461	100

시행되어야만 하며 위의 민원사항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상의 문제,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등 어떠한 문제라도 상의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기다리는 민원행정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경찰이 됨으로서 신뢰받는 경찰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경찰의 의식 및 태도 분석

1. 경찰의 의식 및 태도 분석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질문 항목에 대한 단순빈도를 추출하였고, 필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무경력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직급별, 담당업무별 교차분석을 하여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경찰의 의식 및 태도를 분석하였다.

가. 경찰공무원의 사명감

1) 직업에 대한 사명감(전체)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는 질문에 97.4%가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직업에 대한 사명감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267	62.3
(2) 그렇다.	162	35.1
(3) 그저그렇다	7	1.5
(4) 그렇지 않다	3	0.7
(5) 전혀 그렇지 않다	2	0.4
합 계	461	100

2) 구분별 직업에 대한 사명감

학력별로는 적은 수치이지만 고졸이하의 학력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100%가 응답하였으며, 고졸학력에서는 99.0%, 대졸학력에서는 95.3% 응답하여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력별 직업에 대한 사명감

구분	합계	고졸이하	고졸	대졸	대졸이상	기타
(1) 매우 그렇다	81 (62.3)	7 (77.8)	185 (62.1)	77 (61.1)	3 (72.8)	4 (57.1)
(2) 그렇다	159 (35.3)	2 (22.2)	110 (36.9)	43 (34.1)	2 (18.1)	2 (28.6)
(3) 그저 그렇다	7 (1.6)	—	2 (0.7)	4 (3.1)	1 (9.9)	—
(4) 그렇지 않다	3 (0.7)	—	1 (0.3)	1 (0.8)	—	1 (14.3)
(5)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	—	1 (0.8)	—	—
합계	451 (100)	9 (100)	298 (100)	126 (100)	11 (100)	7 (100)

$\chi^2=32.965$ DF=16 P<0.007

경력별로는 응답자 450명 중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는 응답에 3년미만에서는 21명중 21명으로 100%, 5년미만은 149명중 145명으로 97.3%, 20년미만은 131명중 130명으로 99.2%, 10년미만은 50명중 45명으로 99.1%, 20년이상은 99명중 98명으로 99.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찰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경찰공무원의 법률적 지식 보유도

1) 법률적 지식

경찰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96.9%가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경찰의 법률적 지식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법률적 지식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197	43.1
(2) 그렇다.	246	53.8
(3) 그저 그렇다	9	2.0
(4) 그렇지 않다	4	0.9
(5)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합 계	457	100

2) 법률지식 부족과 업무수행

(가)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전체)

업무수행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얼마나 겪느냐는 질문에 18.8%가 많이 겪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로 많다는 비율보다 높았으나 보통의 비율 53.1%나 되어 자신의 법률적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법률지식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하고, 경찰임용시에 선발자격에 경찰대학 출신 또는 4년제 법과대학 등에서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표 17〉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

구 분	빈 도	%
(1) 아주 많다	15	3.2
(2) 많다	72	15.6
(3) 보통이다	246	53.1
(4) 적다	105	22.7
(5) 아주 적다	25	5.4
합 계	463	100

(나) 구분별 법률적 지식과 업무수행의 곤란

학력별로는 '아주 많다', '많다'에 대졸 22.9%, 대졸이상 18.2%, 고졸 16.3%, 고졸이하 11.1%의 순으로 나타나 오히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수행과정에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학력별 법률적 지식과 업무수행 곤란도

구분	합계	고졸이하	고졸	대졸	대졸이상	기타
(1) 아주 많다	15 (3.3)	1 (11.1)	6 (2.0)	4 (3.1)	2 (18.2)	2 (28.6)
(2) 많다	71 (15.7)	—	43 (14.3)	25 (19.8)	—	3 (42.9)
(3) 보통이다	239 (52.8)	4 (44.5)	159 (53.0)	70 (55.6)	4 (36.4)	2 (28.5)
(4) 적다	103 (22.7)	3 (33.3)	72 (24.0)	23 (18.3)	5 (45.4)	—
(5) 아주 적다	25 (5.5)	1 (11.1)	20 (6.7)	4 (3.2)	—	—
합계	453 (100)	9 (100)	300 (100)	126 (100)	11 (100)	7 (100)

$$\chi^2 = 43.205 \quad DF = 16 \quad P < 0.000$$

연령별로는 453명의 응답자중 '아주 많다', '많다'에 20대 59명중 18명으로 30.5%, 30대 183명중 36명으로 19.6%, 40대 126명중 22명으로 17.5%, 50대이상 85명중 10명으로 11.8%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대·30대 경찰관의 역할이 앞으로 경찰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률교육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각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경력별로는 응답자 452명중 '아주 많다', '많다'에 3년미만은 22명중 10명으로 45.4%, 5년미만은 149명중 34명으로 22.8%, 20년미만은 131명중 23명으로 17.5%

%, 10년미만은 50명중 8명으로 16.0%, 20년이상은 100명중 11명으로 11.0%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경력이 낮을수록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률적 지식의 습득 정도

(가) 법률서적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식을 법률서적에서 어느 정도 습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법률서적에서 비교적 많이 얻는다는 응답에 66.8%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및 그 산하기관의 도서시설 및 자료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법률적 지식을 업무수행중 즉각 찾아서 얻을 수 있지 못하다. 따라서 경찰내부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스스로의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인적·물적 예산의 배정이 시급하다.

〈표 19〉 법률서적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구 분	빈 도	%
(1) 매우 많이 얻는다	102	22.7
(2) 많이 얻는다	198	44.1
(3) 보통이다	126	28.1
(4) 조금 얻는다	22	4.9
(5) 전혀 얻지 못한다	1	0.2
합 계	449	100

(나) 경찰교육을 통한 법률적 지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식을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습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3.91%만이 전혀 얻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교육을 통하여 법률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지식 습득교육을 위한 경찰내 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일반 법과대학에의 위탁교육과정의 개설 등을 통하여 법률지식의 함양을 꾀하여야 한다. 법률지식의 제고는 경찰

의 법률지식의 박약에 대한 비난을 일소할 수 있고, 인권의식의 함양과 궁극적으로는 경찰 수사권독립과도 상관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0〉 교육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구 분	빈 도	%
(1) 매우 많이 얻는다	24	5.6
(2) 많이 얻는다	123	28.5
(3) 보통이다	171	39.6
(4) 조금 얻는다	97	22.5
(5) 전혀 얻지 못한다	17	3.9
합 계	432	100

(1) 법률적 지식의 습득교육 기회도(전체)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법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33.4%가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적절히 갖게 되는 편이다'라는 응답을 하여 전체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무년수의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재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표 21〉 법률적 지식의 습득교육 기회도

구 분	빈 도	%
(1)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27	5.9
(2) 적절히 갖게 되는 편이다	127	27.5
(3) 보통이다	185	40.1
(4) 적다	45	9.8
(5) 아주 적다	77	16.7
합 계	461	100

연령별 법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에 대하여 연령별로는 451명의 응답자 중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적절히 갖게 되는 편이다'에 40대

125명 중 53명으로 42.4%, 50대이상은 85명 중 36명으로 42.3%, 30대이상은 182명 중 50명으로 27.4%, 20대 59명 중 14명으로 23.7%의 순으로 응답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법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경력이 많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많이 가져 법률적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을 통한 법률지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었다면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이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58.3%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에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면, 교육을 통하여 얻은 법률지식이 대 국민 법률서비스에 관련된 업무수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교육을 통한 법률지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구 분	빈 도	%
(1)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39	10.1
(2) 많은 도움이 되었다	186	48.2
(3) 그저 그렇다	120	31.1
(4)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36	9.3
(5)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5	1.3
합 계	386	100

(3) 동료경찰관에게서 습득하는 법률적 지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식을 동료경찰관에게서 어느 정도 습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39.6%가 비교적 많이 얻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동료경찰관의 확보는 신규임용과 교육을 통하여 확보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 23〉 동료경찰관에게서 습득하는 법률적 지식

구 분	빈 도	%
(1) 매우 많이 얻는다	29	6.8
(2) 많이 얻는다	140	32.8
(3) 보통이다	148	34.7
(4) 조금 얻는다	103	24.1
(5) 전혀 얻지 못한다	7	1.6
합 계	427	100

학력별로 동료경찰관에게서 습득하는 법률적 지식은 418명의 응답자 중 '매우 많이 얻는다', '많이 얻는다'라는 응답에 대졸이상 11명 중 8명으로 72.8%, 대졸 120명 중 49명으로 40.8%, 고졸 273명 중 102명으로 37.3%, 고졸이하 8명 중 2명으로 25.0%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동료경찰관에게서 많은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식을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서 어느 정도 습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28.1%가 비교적 많이 얻는다고 응답하였을 뿐이다. 이는 업무량의 폭주와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신문, 잡지 등 시사성 있는 간행물은 잘 접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4〉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서 얻는 법률적 지식

구 분	빈 도	%
(1) 매우 많이 얻는다	17	4.0
(2) 많이 얻는다	103	24.1
(3) 보통이다	164	38.3
(4) 조금 얻는다	125	29.2
(5) 전혀 얻지 못한다	19	4.4
합 계	428	100

다. 경찰관에 대한 평가

일반시민들이 “경찰관들은 직구수행과 관련하여 해당업무에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업인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41.1% 만이 ‘매우 타당하다’, ‘타당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회의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면, ‘잘못 알고 있다’, 9.2%, ‘매우 잘못 알고 있다’ 2.6%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경찰의 자신들에 대한 자가평가기기 때문에 후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비교해 볼 때 명백히 나타난다.

〈표 25〉 경찰관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업인 평가

구 분	빈 도	%
(1) 매우 타당하다	24	6.1
(2) 타당하다	137	35.0
(3) 보통이다	184	47.1
(4) 잘못 알고 있다	36	9.2
(5) 매우 잘못 알고 있다	10	2.6
합 계	391	100

라. 친절봉사 업무

1) 친절봉사도 평가

경찰공무원은 다른 업무보다는 대민 친절·봉사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질문에 아주 긍정적인 응답이 79.3%의 비율을 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에 비하여 경찰의 대민봉사 의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친절봉사도 평가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158	34.5
(2) 그렇다.	205	44.8

(3) 그저그렇다	58	12.7
(4) 그렇지 않다	31	6.8
(5) 전혀 그렇지 않다	6	1.3
합 계	458	100

2) 경력별 친절봉사도

경력별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는 응답에 20년이상에서 86.6%를 점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5년미만 83.0%, 20년미만 81.4%, 3년미만 71.4% 순으로 나타났고, 10년미만은 5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민봉사업무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들이 언제나 친절하고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대민관계에 있어서 친절봉사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고충이나 상담등의 법률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7〉 경력별 친절봉사도

구 분	합 계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1) 매우 그렇다	153 (34.2)	8 (38.1)	51 (34.7)	8 (16.0)	47 (36.4)	39 (39.0)
(2) 그렇다	202 (45.2)	7 (33.3)	71 (48.3)	19 (38.0)	58 (45.0)	47 (47.0)
(3) 그저 그렇다	56 (12.5)	3 (14.3)	16 (10.9)	14 (28.0)	15 (11.6)	8 (8.0)
(4) 그렇지 않다	30 (6.7)	3 (14.3)	8 (5.4)	7 (14.0)	8 (6.2)	4 (4.0)
(5) 전혀 그렇지 않다	6 (1.3)	—	1 (0.7)	2 (4.0)	1 (0.8)	2 (2.0)
합 계	447 (100)	21 (100)	147 (100)	50 (100)	129 (100)	100 (100)

$\chi^2 = 37.073$ $DF = 20$ $P < 0.011$

2.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가. 법률상담 요청도

일반시민들로 부터 시민생활과 관련한 법률상담요청을 어느 정도나 받느냐에 대한 질문에 87.9%가 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법률상담을 자주 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면, 현재 경찰에서 법률서비스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대 국민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보된다.

〈표 28〉 법률상담 요청도

구 분	빈 도	%
(1) 매우 많다	23	5.0
(2) 많다	141	30.5
(3) 보통이다	242	52.4
(4) 흔하지 않다	51	11.0
(5) 전혀 없다	5	1.1
합 계	462	100

연령별로는 40대 95.2%, 50대 88.3%, 20대 86.4%, 30대 84.1% 순으로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하여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법률상담의 요청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연령별 법률상담 요청도

구 분	합 계	20-29	30-39	40-49	50세이상
(1) 매우 많다	22 (4.9)	2 (3.4)	5 (2.7)	6 (4.8)	9 (10.6)
(2) 많다	140 (30.9)	11 (18.6)	64 (35.0)	42 (33.3)	23 (27.1)

(3) 보통이다	238 (52.5)	38 (64.4)	85 (46.4)	72 (57.1)	43 (50.6)
(4) 흔하지 않다	48 (10.6)	8 (13.6)	24 (13.1)	6 (4.8)	10 (11.8)
(5) 전혀 없다	5 (1.1)	—	5 (2.7)	—	—
합 계	453 (100)	59 (100)	183 (100)	126 (100)	85 (100)

$$\chi^2 = 280773 \quad DF = 12 \quad P < 0.004$$

나. 법률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경찰에게 법률서비스제공을 전담할 전문 부서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85.3%가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경찰관 자체도 법률서비스 기관의 설치를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법률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구 분	빈 도	%
(1) 아주 필요하다	125	27.1
(2) 필요하다	269	58.2
(3) 그저 그렇다	44	9.5
(4) 필요치 않다	20	4.3
(5) 전혀 필요치 않다고 본다	4	0.9
합 계	462	100

담당업무별로는 '아주 필요하다', '필요하다'에 방법업무 91.0%, 수사업무 86.9%, 조사업무 81.8%, 경무업무 80.8%, 형사업무 80.6%의 순으로 나타나 방법업무에 큰부하는 경찰이 가장 높은 비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31〉 담당업무별 법률서비스제공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구 분	합 계	수사업무	조사업무	방법업무	형사업무	경무업무	기타
(1) 아주 필요하다	125 (27.8)	23 (51.1)	9 (40.9)	21 (21.0)	6 (16.7)	11 (23.4)	55 (27.5)
(2) 필요하다	261 (58.0)	16 (35.6)	9 (40.9)	70 (70.0)	23 (63.9)	27 (57.4)	116 (58.0)
(3) 그저 그렇다	42 (9.3)	6 (13.3)	3 (13.6)	7 (7.0)	4 (11.1)	6 (12.8)	16 (8.0)
(4) 필요치 않다	19 (4.2)	—	1 (4.5)	2 (2.0)	1 (2.8)	3 (6.4)	12 (6.0)
(5) 전혀 필요치 않다고 본다	3 (0.7)	—	—	—	2 (5.6)	—	1 (0.5)
합 계	450 (100)	45 (100)	22 (100)	100 (100)	36 (100)	47 (100)	200 (100)

$\chi^2=44.059$ DF=20 P<0.001

다. 법률서비스 부서의 설치 형태

경찰이 법률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면 현 경찰조직내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62.8%가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한다'에 응답하였고, 37.2%가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에 응답하여 전문부서 설치의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법률서비스 부서의 설치 형태

구 분	빈 도	%
(1)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 부서를 설치한다	273	62.8
(2)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	162	37.2
합 계	435	100

경력별로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한다'에 3년미만 66.7%, 5년미만 65.7%, 10년미만 65.3%, 20년미만 64.5%, 20년이상 56.7%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경력이 낮을수록 전문부서의 설치 요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경력별 법률서비스 설치형태

구 분	합 계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1)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한다	271 (62.8)	14 (66.7)	92 (65.7)	32 (65.3)	78 (64.5)	55 (56.7)
(2)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	157 (37.2)	7 (33.3)	48 (34.3)	17 (34.7)	43 (35.5)	42 (43.3)
합 계	428 (100)	21 (100)	140 (100)	49 (100)	121 (100)	97 (100)

$\chi^2=46.309$ DF=20 P<0.001

라. 법률서비스 부서의 설치 단위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면 어느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83.1%가 경찰서에 응답하여, 압도적으로 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와 같은 설치단위의 응답이다.

〈표 34〉 법률서비스 부서의 설치단위

구 분	빈 도	%
(1) 분청	3	0.8
(2) 지방경찰청	40	10.4
(3) 경찰서	320	83.1
(4) 파출소	22	5.7
합 계	385	100

직급별로 경찰서에 응답한 비율이 경위 93.3%, 경사 87.2%, 경장 81.4% 순으로 경위직급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직급별 법률서비스 설치단위

구 분	합 계	순 경	경 장	경 사	경 위	경정이상
(1) 본청	3 (0.8)	1 (0.9)	—	1 (0.9)	—	1 (14.3)
(2) 지방경찰청	38 (10.0)	13 (12.4)	14 (10.9)	8 (7.3)	2 (6.7)	1 (14.3)
(3) 경찰서	317 (83.4)	84 (80.0)	105 (81.4)	95 (87.2)	28 (93.3)	5 (71.4)
(4) 파출소	22 (5.8)	7 (6.7)	10 (7.7)	5 (4.6)	—	—
합 계	380 (100)	105 (100)	130 (100)	109 (100)	30 (100)	7 (100)

$$\chi^2 = 26.595 \quad DF = 16 \quad P < 0.046$$

마. 기존부서 활용시 합당한 부서

법률서비스 제공시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면 어느 부서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61.6%가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에 응답하여 민원봉사부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기존부서 활용시 가장 합당한 부서

구 분	빈 도	%
(1) 민원봉사업무담당부	199	61.6
(2) 교통업무담당부서	11	3.4
(3) 방범업무담당부서	14	4.3
(4) 경비업무담당부서	—	—
(5) 정보업무담당부서	4	1.2

(6) 보안업무담당부서	2	0.6
(7) 수사업무담당부서	42	13.0
(8) 형사업무담당부서	14	4.3
(9) 조사업무담당부서	37	11.5
합 계	323	100

바. 법률서비스 업무 비중도

1) 인·허가 문제

일반시민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허가 문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3.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37〉 인·허가 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비중도

구 분	빈 도	%
(1) 아주 그렇다	72	16.8
(2) 그렇다	243	56.8
(3) 그저 그렇다	94	22.0
(4) 그렇지 않다	16	3.7
(5)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합 계	428	100

직급별로는 '아주 그렇다', '그렇다'의 응답에 경사 80.2%, 순경 72.5%, 경장 72.4%, 정감이상 66.6%, 경위 60.8%가 응답하여 경사가 다른 직급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8〉 직급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도

구 분	합 계	순 경	경 장	경 사	경 위	정감이상
(1) 아주 그렇다	71 (17.0)	10 (8.3)	21 (15.2)	33 (26.2)	5 (17.9)	2 (33.3)
(2) 그렇다	238 (56.9)	77 (64.2)	79 (57.2)	68 (54.0)	12 (42.9)	2 (33.3)

(3) 그저 그렇다	91 (21.8)	26 (21.7)	30 (21.7)	23 (18.3)	10 (35.7)	2 (33.3)
(4) 그렇지 않다	15 (3.6)	5 (4.2)	8 (5.8)	2 (1.6)	—	—
(5)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2 (1.7)	—	—	1 (3.6)	—
합 계	418 (100)	120 (100)	138 (100)	126 (100)	28 (100)	6 (100)

$$\chi^2=30.466 \quad DF=16 \quad P<0.016$$

성령별로는 418명의 응답자 중 ‘아주 그렇다’, ‘그렇다’의 응답에 20년이상 92명 중 75명으로 81.5%, 3년미만 22명 중 17명으로 77.3%, 20년미만 120명 중 87명으로 72.5%, 5년미만 138명 중 100명으로 72.4%, 10년미만 46명 중 29명으로 63.0%가 응답하여 20년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다.

2) 고소·고발사건

일반시민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소, 고발사건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86.0%가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가장 적극적인 대범죄활동 요구표시인 고소, 고발이 꾸준히 증가하여 범죄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볼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담당부서가 신설된다면 형사사법의 최초단계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통하여 민사사건·형사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사건은 조정 또는 화해토록 이해당사자간에 대화를 주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고소·고발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여과해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경찰력의 강화를 얻을 수도 있다.

〈표 39〉 고소·고발사건 법률서비스 제공도

구분	빈도	%
(1) 아주 그렇다	130	29.9
(2) 그렇다	244	56.1
(3) 그저 그렇다	47	10.8
(4) 그렇지 않다	14	3.2
(5)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435	100

학력별로는 총 426명의 응답자 중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고졸이하는 8명 중 8명으로 100%, 대졸이상은 10명 중 9명으로 90.0%. 고졸 281명 중 249명으로 88.6%, 대졸은 121명 중 97명인 80.4% 순으로 나타나 고졸이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가정문제

일반시민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정문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57.7%가 응답하여 다른 사항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정문제에 개입하지 꺼려하는 경향은 한국사회의 가정문제는 남의 문제로써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불분율적 사고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가정내 문제라는 양관자적 자세로 말미암아 가정내 폭력, 학대, 성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그 정도와 피해는 날로 심각함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

〈표 40〉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구분	빈도	%
(1) 아주 그렇다	49	11.6
(2) 그렇다	195	46.1
(3) 그저 그렇다	135	31.9
(4) 그렇지 않다	33	7.8
(5) 전혀 그렇지 않다	11	2.6
합계	423	100

4) 청소년문제

일반시민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문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80.9%가 응답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범죄와 비행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원호하고 계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위주·예방위주의 경찰활동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표 41〉 청소년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구 분	빈 도	%
(1) 아주 그렇다	98	23.2
(2) 그렇다	244	57.7
(3) 그저 그렇다	73	17.3
(4) 그렇지 않다	6	1.4
(5)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합 계	423	100

학력별로는 총 414명의 응답자 중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고졸이하는 7명 중 7명 100%, 고졸 270명 중 226명 83.7%, 대졸 121명 중 91명 75.3%, 대졸이상 10명 중 7명인 70.0%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통관련문제

일반시민에 대하여 법률서비스 업무를 제공한다면 교통문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86.3%가 응답하였다. 이는 늘어나는 교통관련 민원행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8) 1996년 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제를 실시한 결과 학교내 또는 학교 주변에서의 은밀히 행하여진 담배판매·절도·폭행 등이 감소하였다는 실증적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표 42〉 교통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구 분	빈 도	%
(1) 아주 그렇다	142	33.4
(2) 그렇다	225	52.9
(3) 그저 그렇다	51	12.0
(4) 그렇지 않다	5	1.2
(5)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합 계	425	100

학력별로는 416명의 응답자 중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고졸이하 7명 중 7명으로 100%, 고졸 272명 중 239명으로 87.9%, 대졸 121명 중 100명으로 82.6%, 대졸 이상 10명 중 8명인 80.0%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 방법순찰

일반시민에 법률서비스 업무를 제공한다면 방법순찰이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80.6%가 응답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3〉 방법순찰 법률서비스 업무 제공

구 분	빈 도	%
(1) 아주 그렇다	131	30.7
(2) 그렇다	213	49.9
(3) 그저 그렇다	70	16.4
(4) 그렇지 않다	12	2.8
(5)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합 계	427	100

담당업무별로는 총 응답자 415명 중 ‘아주 그렇다’, ‘그렇다’에 수사업무 담당자는 40명 중 35명으로 87.5%, 방법업무는 94명 중 82명으로 87.2%, 경무업무는 46명 중 33명으로 71.8%, 조사업무 19명 중 13명으로 68.4%, 형사업무 34명

중 20명 58.8%의 순으로 나타나 수사업무 경찰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7)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 선호도

경찰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면 이를 전담할 전문인이 누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전문상담요원선발이 43.8%, 경찰관이 34.4%, 경찰내 변호사자격자 임용순으로 응답하여, 오히려 경찰관 자신보다는 전문상담요원을 선발하자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이 설문결과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와 동일하게 법률서비스전문담당요원의 채용을 선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 선호도

구 분	빈 도	%
(1) 경찰내 변호사자격자 임용	79	17.4
(2) 경찰관	156	34.4
(3) 법학교수	15	3.3
(4) 전문상담요원선발	199	43.8
(5) 기타	5	1.1
합 계	454	100

경력별로는 ‘전문상담요원선발’의 응답이 3년미만에서 59.1%로 가장 높았으며, ‘경찰관’의 응답은 5년미만에서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찰내 변호사자격자 임용’은 20년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5〉 경력별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 선호도

구 분	합 계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1) 경찰내 변호사 자격자 임용	78 (17.6)	4 (18.2)	20 (13.7)	9 (18.0)	26 (20.3)	19 (19.4)
(2) 경찰관	154 (34.7)	5 (22.7)	67 (45.9)	21 (42.0)	35 (27.3)	26 (26.5)

(3) 법학교수	13 (2.9)	-	3 (2.1)	3 (6.0)	4 (3.1)	3 (3.1)
(4) 전문상담요원 선발	194 (43.7)	13 (59.1)	54 (36.9)	16 (32.0)	61 (47.7)	50 (51.0)
(5) 기타	5 (1.1)	-	2 (1.4)	1 (2.0)	2 (1.6)	-
합 계	444 (100)	22 (100)	146 (100)	50 (100)	128 (100)	98 (100)

$\chi^2=54.105$ DF=20 P<0.000

아. 법률서비스부서에 대한 근무 선호도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부서가 설치될 경우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33.8% 가장 높아 중립적 입장을 취한 비율이 높았으며, '조금은 희망할 것이다'가 32.7%, '근무하기를 대단히 희망할 것이다'가 18.0%, '근무하기를 별로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가 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84.5%가 희망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법률서비스 부서에 대한 근무 선호도

구 분	빈 도	%
(1) 근무하기를 대단히 희망할 것이다	82	18.0
(2) 조금은 희망하게 될 것이다	149	32.7
(3) 보통이다	154	33.8
(4) 근무하기를 별로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53	11.6
(5) 현 부서에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17	3.7
합 계	455	100

근무지별로는 '근무하기를 대단히 희망할 것이다', '조금은 희망할 것이다'의 응답률이 경찰서의 경우 49.1%, 파출소의 경우 56.4%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보다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근무처별 법률서비스 부서 희망도

구 분	합 계	경찰서	파출소
(1) 근무하기를 대단히 희망할 것이다	82 (18.3)	66 (18.3)	16 (18.4)
(2) 조금은 희망하게 될 것이다	144 (32.2)	111 (30.8)	33 (38.0)
(3) 보통이다	153 (34.2)	124 (34.4)	29 (33.3)
(4) 근무하기를 별로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51 (11.4)	44 (12.2)	7 (8.0)
(5) 현부서에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17 (3.8)	15 (4.0)	2 (2.3)
합 계	447 (100)	360 (100)	87 (100)

$\chi^2=9.876$ DF=4 P<0.043

자. 법률서비스부서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

법률서비스부서에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근무조건외 열악’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결여’ 35.5%, ‘법률서비스의 급격한 과중현상’ 13.4%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결여가 법률서비스 부서의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주이유로 보인다.

〈표 48〉 법률서비스부서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 도	%
(1)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결여	66	35.5
(2) 근무조건외 열악	78	41.9
(3) 진급의 어려움	11	5.9
(4) 법률서비스의 급격한 과중현상	25	13.4
(5) 기타	6	3.2
합 계	186	100

생활수준별로는 적은 수치이지만 상집단에서 ‘근무조건 열악’에 응답한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중상집단이 58.3%, 중하집단이 51.6%의 비율을 보였으며, 하집단이 40.0%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중집단에서는 45.8%가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결여’에 응답하였다.

제 3 절 경찰조직외 타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활동 현황

우리 나라의 법률상담, 인권상담 등의 활동은 주로 변호사와 검사, 법무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옹호연맹, 한국인권옹호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소비자모임, 노총, 각 정당인권위원회, YMCA 시민중계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구조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대여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대한법률구조공단¹⁹⁾은 서울에 본부사무소가 있고 지방경찰청과 지청의 청사안에 지부(11개) 및 출장소(38개)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공단본부에 본부법률구조심사위원회와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직할출장소에 직할출장소법률심사위원회를 두고, 각급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본부, 지부 또는 출장소에는 소송업무 등을 전담할 법률구조전담변호사를 둘

19)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디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생활수준별로는 적은 수치이지만 상집단에서 ‘근무조건 열악’에 응답한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중상집단이 58.3%, 중하집단이 51.6%의 비율을 보였으며, 하집단이 40.0%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중집단에서는 45.8%가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결여’에 응답하였다.

제 3 절 경찰조직외 타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활동 현황

우리 나라의 법률상담, 인권상담 등의 활동은 주로 변호사와 검사, 법무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옹호연맹, 한국인권옹호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소비자모임, 노총, 각 정당인권위원회, YMCA 시민중계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구조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대여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대한법률구조공단¹⁹⁾은 서울에 본부사무소가 있고 지방경찰청과 지청의 청사안에 지부(11개) 및 출장소(38개)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공단본부에 본부법률구조심사위원회와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직할출장소에 직할출장소법률심사위원회를 두고, 각급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본부, 지부 또는 출장소에는 소송업무 등을 전담할 법률구조전담변호사를 둘

19)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디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 공단본부, 지부 및 직할출장소에 모두 18명의 공단소속전담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다.

나. 법률구조의 절차

1) 신청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뢰자)는 주민등록부분,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청구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법률구조신청서를 공단본부 또는 지부 및 출장소 사무소의 법률구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자격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선변호사를 선정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의하면 법률구조는 법률상항과 달리 그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세 농 어민
- ②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③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의 군인
- ④ 국가보훈대상자
- ⑤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⑥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

3) 구조신청사건 처리절차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한다. 그리고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설명하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화해가 되지 않은 사건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구조심사회에 회부하여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토록 하고, 동 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건 등은 이사장 또는 지부장 등이 직권으로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소속변호사 또는 공단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재판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부담한다.

그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건, 즉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공단본부의 중앙법률구조심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심사회에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²⁰⁾

다. 법률상담

법률상담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의뢰자가 공단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면접할 수 있고 전화, 서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공단본부에서는 1991년 10월 1일 부터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한 야간 및 휴일 상담을 실시하고, 1994년 12월 31일 현재 20,273건의 야간 휴일상담을 실시하였다. 현재 공단본부에서는 동작구청, 강남구청, 서울지방노동청 등과 협의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여 주는 이동법률상담도 실시중이다. 또한 컴퓨터통신 등에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하여 1994년의 경우 천리안, 포스서브, 하이텔, 정부전자계산소 등이 PC를 통하여 74,598건의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하였고, 직장이나 가정등에서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화자동법률상담(700-2080)을 통하여는 215,166건의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²¹⁾ 법률상담현황을 보면 1991년에는 262,832건, 1992년에는 303,234건, 1993

20) 법률상담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지만, 소송구조된 사건에 대해서는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종료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그 사건의 승소가액의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변호사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 그러나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상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면제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다.

21) 검찰연감, 내검찰청, 1995. 244면 참조.

년에는 342,049건, 1994년에는 344,364건의 상담성과를 나타내고 있다.²²⁾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법률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비추어 경찰의 대민봉사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법률상담의 건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동안 각 지방변호사협회별로 개별적인 구조활동에 일임하고 있었으나, 1982년 12월 변호사법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회 회칙을 개정하여 그 제10장에서 “법률구조사업” 규정을 두어 그에 따라 법률구조사업회비 1억 6천만의 기금을 모아 1985년 6월부터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통합되기 이전에도 1962년도부터 인권상담소 등을 설치하여 꾸준히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구조활동을 하여 왔고, 198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당직변호사제도²³⁾는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3. 법무사협회

법무사협회에서도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일조하고 있다. 법무사협회에서도 자율적인 결정이나 신청에 의하여 법률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활동을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검찰과 공동으로 법의 생활화운동의 일환으로 대학교 하계 방학 동안에 농·어촌봉사 활동에 뜻을 둔 대학생과 법무사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민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강연회, 좌담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생활법률상식의 보급과 준법의식 계도에 의하여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변호사없는 지역에서의 국선변호사, 호적정리무료봉사사업,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사건 등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2) 검찰인감, 대검찰청, 1995, 244~245면 참조.

23) 1996년 당직변호사항황실운영 현황을 보면, 집건 848건에 수인건수는 150건으로 수입율은 17%로 나타나고 있다.

4. 각 법과대학 부설상담소

서울대, 충남대, 연세대, 건국대, 단국대, 부산대, 청주대, 전남대, 원광대 등에 서는 교수와 학생이 법률상담을 중심으로 법률구조활동을 하여 왔다. 전주대, 대구대, 배재대 등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합하여 대학부설 가정법률상담소 지부를 개설하여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펼치고 법과대학생,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등 국민의 복지와 관련있는 학과의 학생들의 임상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타 대학에서는 법학연구소에 법률상담실을 개설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 중 일반 시민은 거의 없어 교내상담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1964년 3월부터 4학년 교과과정에 “법률상담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우리 나라 법과대학에서는 최초로 법률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나가서 법률임상실습을 하고 있다.²⁴⁾

제 4 절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태도 분석

1. 주거지역의 범죄에 대한 안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일반시민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보통이다’가 45.2%, ‘그렇지 않다’ 또는 ‘절대 그렇지 않다’가 36.7%로 81.9%가 다소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지역치안이 불안감을 이르는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순찰 등의 활동강화와 범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암수범죄의 문제는 신고후 시민이 겪게 되는 불편

24) 교과내용은 세계의 법률구조역사, 우리 나라 법률구조활동의 시기와 현황, 법률구조란 무엇인가?, 법률구조법, 상담이론, 법학도의 사명, Case Study(가사사건 중심으로), 현장실습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법률구조의식과 사회봉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4. 각 법과대학 부설상담소

서울대, 충남대, 연세대, 건국대, 단국대, 부산대, 청주대, 전남대, 원광대 등에 서는 교수와 학생이 법률상담을 중심으로 법률구조활동을 하여 왔다. 전주대, 대구대, 배재대 등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합하여 대학부설 가정법률상담소 지부를 개설하여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펼치고 법과대학생,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등 국민의 복지와 관련있는 학과의 학생들의 임상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타 대학에서는 법학연구소에 법률상담실을 개설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 중 일반 시민은 거의 없어 교내상담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1964년 3월부터 4학년 교과과정에 “법률상담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우리 나라 법과대학에서는 최초로 법률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나가서 법률임상실습을 하고 있다.²⁴⁾

제 4 절 법률서비스제공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태도 분석

1. 주거지역의 범죄에 대한 안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일반시민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보통이다’가 45.2%, ‘그렇지 않다’ 또는 ‘절대 그렇지 않다’가 36.7%로 81.9%가 다소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지역치안이 불안감을 이르는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순찰 등의 활동강화와 범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암수범죄의 문제는 신고후 시민이 겪게 되는 불편

24) 교과내용은 세계의 법률구조역사, 우리 나라 법률구조활동의 시기와 현황, 법률구조란 무엇인가?, 법률구조법, 상담이론, 법학도의 사명, Case Study(가사사건 중심으로), 현장실습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법률구조의식과 사회봉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과 시민목적자에 대한 조사시의 경찰의 태도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한 처우대책도 개선하여야 한다.

〈표 49〉 주거지역의 범위에 대한 안전

구 분	빈 도	%
(1) 아주 그렇다	13	2.7
(2) 그렇다	74	15.4
(3) 보통이다	217	45.2
(4) 그렇지 않다	133	27.7
(5) 절대 그렇지 않다	43	9.0
합 계	480	100

2. 경찰과의 친밀도

일반시민과 경찰과의 친밀도를 알아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응답자의 57.5%가 친밀하지 않거나, 아주 친밀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일반적으로 경찰은 시민과 가깝지 않다는 인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찰과의 친밀도가 부정적인 응답이(57.5%) 내지는 보통(36.2%)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간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부족 또는 경찰의 역할 수행의 무능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경찰'로 인식되기 위하여는 대 국민 이미지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표 50〉 경찰과의 친밀도

구 분	빈 도	%
(1) 아주 친밀하다	9	1.9
(2) 그렇다	21	4.4
(3) 보통이다	174	36.2
(4) 친밀하지 않다	215	44.8
(5) 아주 아니다	61	12.7
합 계	480	100

성별에 따른 경찰과의 친밀도는 ‘친밀하지 않다’는 응답에 남자의 경우 53.3%, ‘아주 아니다’라는 응답에 62.3%로 여자의 각 47.0%, 37.7%에 비하여 훨씬 경찰과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51〉 성별 경찰과의 친밀도

구분	합계	아주 친밀하다	그렇다	보통이다	친밀하지 않다	아주 아니다
남	291 (60.9)	5 (55.6)	13 (61.9)	121 (70.3)	114 (53.0)	38 (62.3)
여	187 (39.1)	4 (44.4)	8 (38.1)	51 (29.7)	101 (47.0)	23 (37.7)
합계	478 (100)	9 (100)	21 (100)	172 (100)	215 (100)	61 (100)

$\chi^2=15.723$ DF=8 P<0.047

3.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54.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경찰활동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
(1) 매우 잘한다	4	0.8
(2) 잘한다	18	3.7
(3) 보통이다	238	49.6
(4) 못한다	184	38.3
(5) 아주 못한다	36	7.5
합계	480	100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권위적이

기 때문에’, ‘뇌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가 전체 응답의 61.4%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시민들이 아직도 경찰이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권위적인 자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경찰과 뇌물과의 상관관계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경찰활동에 부정적인 이유

구 분	빈 도	%
(1) 권위적이기 때문에	106	30.7
(2) 법률적 지식의 부족 때문에	43	12.5
(3) 수사능력 부족때문에	69	20.0
(4) 뇌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106	30.7
(5) 기타	21	6.1
합 계	345	100

4. 경찰이 노력하여야 할 점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이 되기 위하여 경찰이 가장 노력하여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30.4%, ‘정당한 법집행’에 28.2%가 응답하여 시민은 경찰이 범죄예방능력을 많이 배양할 것과 정당한 법집행을 경찰에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민봉사활동’에도 17.9%가 응답하여 대 국민 법률서비스에도 경찰이 상당히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4〉 경찰이 노력하여야 할 점

구 분	빈 도	%
(1) 범인검거	72	8.4
(2) 범죄예방활동강화	262	30.4
(3) 정당한 법집행	243	28.2
(4) 민원처리	110	12.8
(5) 대민봉사활동	154	17.9

(6) 정보수집	18	2.1
(7) 시위진압	1	0.1
(8) 기타	1	0.1
합 계	861	100

5. 민원상담실 이용

가. 민원상담실 이용도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20.1% 만이 비교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9%가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경험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민원상담실 이용도

구 분	빈 도	%
(1) 아주 많다	4	0.8
(2) 많다	17	3.6
(3) 보통이다	75	15.7
(4) 적다	109	22.8
(5) 아주 적다	273	57.1
합 계	478	100

나. 연령과 민원상담실 이용도

연령별로는 40대가 30.6%, 50대가 27.6%로 나타나 비교적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민원상담실의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연령별 민원상담실 이용도

구 분	합 계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 아주 많다	4 (0.8)	2 (0.9)	2 (1.3)	—	—	—
(2) 많다	17 (3.6)	6 (2.8)	5 (3.4)	4 (5.6)	2 (6.9)	—
(3) 보통이다	75 (15.7)	26 (12.2)	23 (15.4)	18 (25.0)	6 (20.7)	2 (13.3)
(4) 적다	109 (22.8)	35 (16.4)	42 (28.2)	22 (30.6)	5 (17.2)	5 (33.3)
(5) 아주 적다	273 (57.1)	144 (67.6)	77 (51.71)	28 (38.9)	16 (55.2)	8 (53.3)
합 계	478 (100)	213 (100)	149 (100)	72 (100)	29 (100)	15 (100)

$\chi^2=28.022$ DF=16 P<0.031

다.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이유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교통위반 및 사고처리 36.5%, 민사문제 29.9%, 인·허가문제 12.8%, 형사문제 8.1%로 나타나 일반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교통문제, 민사, 인·허가 문제가 민원상담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임을 알수 있다.

〈표 57〉 민원상담실을 이용한 이유

구 분	빈 도	%
(1) 형사문제로	17	8.1
(2) 민사문제로	63	29.9
(3) 인·허가문제로	27	12.8
(4) 교통위반 및 사고처리	77	36.5
(5) 기타	27	12.8
합 계	211	100

라. 민원상담실 경찰관의 응대태도

민원상담실 이용시 경찰관의 응대태도가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에, 70.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민원상담실 이용시 비교적 친절한 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표 50>의 경찰과의 친밀도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인식과 상반되는 것으로, 일반국민이 경찰과의 민원상담을 한 후에는 경찰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인식전환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체계구축을 통한 법률서비스제공은 경찰의 대 국민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 58> 민원상담실 이용시 경찰관의 응대태도 평가

구분	빈도	%
(1) 아주 친절했다	3	1.4
(2) 친절했다	41	19.1
(3) 보통이다	107	49.8
(4) 불친절했다	63	29.3
(5) 아주 불친절했다	1	0.5
합계	215	100

직업별 민원상담실 이용시 경찰관의 응대태도에 공무원/국영기업 30.0%, 회사원 21.6%가 친절했다는 평가를 하여 비교적 다른 직업에 비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표 59> 직업별 민원상담실 이용시 경찰관의 응대태도

구분	합계	학생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국영기업	전문직	농·수 산업	주부	생산직	기타
(1) 아주 친절했다	3 (1.4)	2 (6.7)	--	--	--	--	1 (7.7)	--	--	--
(2) 친절 했다	41 (19.17)	5 (17.2)	8 (21.6)	6 (17.1)	12 (30.0)	1 (10.0)	1 (7.7)	2 (7.1)	1 (4.3)	5 (31.3)

(3) 보통이다	107 (49.8)	11 (38.0)	21 (56.8)	17 (48.6)	19 (47.5)	7 (70.0)	7 (53.8)	16 (57.2)	-	9 (56.3)
(4) 불편걸렸다	63 (29.3)	11 (38.0)	8 (21.6)	12 (34.3)	9 (23.5)	2 (20.0)	4 (30.8)	10 (35.7)	6 (85.7)	1 (6.2)
(5) 아주 불편걸렸다	1 (0.5)	-	-	-	-	-	-	-	-	1 (6.2)
합계	215 (100)	29 (100)	37 (100)	35 (100)	40 (100)	10 (100)	13 (100)	28 (100)	7 (100)	16 (100)

$\chi^2=51.951$ $DF=32$ $P<0.014$

학력별로는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총 응답자 215명 중 대졸에서 3명 중 2명으로 66.6%, 대학원졸 12명 중 4명으로 33.0%, 전문대졸 95명 중 21명으로 22.1%, 고졸 87명 중 14명으로 16.1%, 중졸 18명 중 3명으로 16.7%가 아주 불편했다 내지는 불편했다라는 평가를 하여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층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6. 민원상담실 이외의 부서 이용

민원상담실 이외의 기타 부서를 이용한 적이 있는냐 하는 질문에, 77.8%가 없다고 하여 매우 낮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표 60〉 민원상담실 이외의 기타 부서 이용도

구 분	빈 도	%
(1) 있다	102	21.8
(2) 없다	364	77.8
합 계	466	100

민원상담실 이외의 기타 부서중 어느 부서를 주로 이용하느냐의 질문에, 55.3%가 교통부서를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조사 13.6%, 형사 11.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체계구축후 대민봉사부서에서는 먼저 주로 교통, 조사, 형사업무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61〉 기타 부서 이용의 종류

구 분	빈 도	%
(1) 형사	23	11.3
(2) 수사	13	6.4
(3) 조사	28	13.7
(4) 교통	114	55.9
(5) 방법	15	7.4
(6) 외사	1	0.5
(7) 경무	4	1.9
(8) 경비	3	1.5
(9) 보안	3	1.5
합 계	204	100

7. 고소·고발기관

가. 고소·고발기관의 선호도

고소·고발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어디로 하겠느냐하는 질문에, 53.3%가 경찰을 택하였으며, 기타 기관은 46.7%로 나타나, 고소·고발을 할 기관으로서 경찰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최일선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그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형사화여부를 결정하여 제1차 단계에서 여과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총결권을 일정사안의 경우 경찰에 넘겨서 검찰이 재조사하는 불편으로 국민생활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표 62〉 고소·고발기관 선호도

구 분	빈 도	%
(1) 경찰	251	53.3
(2) 검찰	131	27.8
(3) 정부합동민원실	51	10.8
(4) 기타 기관	36	7.6
합 계	469	99.5

나. 고소·고발시 경찰을 택하지 않은 이유

고소·고발시 경찰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수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7.1%,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9.5%,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3.3%,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부족 때문에’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 고소·고발시 경찰을 택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 도	%
(1)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64	23.3
(2) 수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2	37.1
(3)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부족 때문에	17	6.2
(4)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81	29.5
(5) 기타	11	4.0
합 계	275	100

생활수준별 고소·고발시 경찰을 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총 275명의 응답자 중 상집단은 5명 중 3명인 60.0%, 중상집단은 49명 중 24명 49.0%, 중집단은 158명 중 60명인 38.0%가 ‘수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여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하집단에서는 43명 중 15명인 34.9%, 하집단에서는 20명 중 7명인 35.0%가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8.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적 조력

가.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적 조력의 필요도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법률적으로 궁금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 74.3%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법률서비스를 시민을 상대로 제공하게 된다면 국민생활의 편의와 법의 생활화 내지는 준법의식의 고양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표 64〉 일상생활에서의 법률적 조력의 필요도

구 분	빈 도	%
(1) 아주 많다	38	7.9
(2) 많다	136	28.5
(3) 보통이다	181	37.9
(4) 적다	75	15.7
(5) 아주 적다	48	10.0
합 계	478	100

나. 법률적 조력의 대상

앞으로 법률적으로 궁금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변호사 46.3%, 법률전공자 23.3%, 법무사 14.9%, 경찰관 13.0% 순으로 선택하여 대부분의 시민이 경찰이외의 대상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고소·고발시 경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부족 때문에' 6.2%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9.5%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의 대국민 신뢰회복과 법률지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

〈표 65〉 법률적 조력의 대상

구 분	빈 도	%
(1) 경찰관	62	13.0

(2) 변호사	221	46.3
(3) 법률전문가	111	23.3
(4) 법무사	71	14.9
(5) 기타	12	2.5
합 계	477	100

학력별 법률적 조력의 대상은 전문대졸이 53.2%, 대졸이 50.0%, 고졸이 39.9%, 대학원졸이 38.5%로 각각 변호사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으며, 중졸의 경우에는 37.0%가 법률전문가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다.

〈표 66〉 학력별 법률적 조력의 대상

구 분	합 계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1) 경찰관	62 (13.00)	5 (18.5)	31 (17.9)	23 (10.0)	—	3 (11.5)
(2) 변호사	221 (46.3)	9 (33.3)	69 (39.9)	123 (53.2)	10 (50.0)	10 (38.5)
(3) 법률전문가	111 (23.3)	10 (37.0)	38 (22.0)	55 (23.8)	3 (15.0)	5 (19.2)
(4) 법무사	71 (14.9)	3 (11.1)	26 (15.0)	28 (12.1)	7 (35.0)	7 (26.9)
(5) 기타	12 (2.5)	—	9 (5.2)	2 (0.9)	—	1 (3.8)
합 계	477 (100)	27 (100)	173 (100)	231 (100)	20 (100)	26 (100)

$\chi^2 = 34.836$ DF = 16 P < 0.004

9. 경찰에의 상담 의뢰 이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경찰관을 찾아가 상담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나하는 질문에, '주변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42.6%, '경찰관이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해줄 것 같아서' 25.2%, '경찰관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8%, '경찰관이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해줄 것 같아서' 9.7%로 각각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면, 일반시민들은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주변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경찰이 국민 가까이 있고, 경찰이 일반인에 비하여 법률적 지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그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표 67〉 경찰을 찾아가 상담한 이유

구 분	빈 도	%
(1) 주변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66	42.6
(2) 경찰관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	16.8
(3) 경찰관이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해줄 것 같아서	15	9.7
(4) 경찰이 국민 가까이 있기 때문에	39	25.2
(5) 기타	9	5.8
합 계	155	100

10. 경찰관의 법률지식에 대한 평가

가. 경찰관의 법률지식 유무

경찰관이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64.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비교적 경찰관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표 63〉의 고소·고발시 경찰을 택하지 않은 이유 중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부족 때문에'가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본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일반국민은 경찰의 법률지식의 습득여부에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향후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시 경찰의 범집행과 법률상담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68〉 경찰관의 법률지식에 대한 평가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8	1.7
(2) 그렇다	31	6.6
(3) 보통이다	266	56.4
(4) 아니다	132	28.0
(5) 전혀 아니다	35	7.4
합 계	472	100

나. 경찰관이 법률적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경찰관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61.6%, ‘경찰관 스스로 법률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23.3%, ‘경찰관임용시험이 쉽기 때문에’ 8.2%, ‘학력수준이 낮아서’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면, 경찰의 법률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즉 경찰임용자격은 경찰대학 또는 4년제 대학 법학교육 이수자로 하고, 기존의 경찰을 경찰대학 내지 일반 법과대학에 일정기간 재교육을 통하여, 법률지식의 박약에 대한 비난을 일소하여야 한다. 결국 경찰 자체내의 법률전문가의 양성과 확보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지름길이다.

〈표 69〉 경찰관이 법률적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 분	빈 도	%
(1) 학력수준이 낮아서	8	2.9
(2) 전문적 법률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172	61.6

(3) 경찰관 스스로 법률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65	23.3
(4) 경찰관 임용시험이 쉽기 때문에	23	8.2
(5) 기타	11	3.9
합 계	279	100

성별로는 남자 170명 중 94명인 55.3%가 ‘전문적 법률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이것 보다 훨씬 더 높은 108명 중 78명인 72.2%가 ‘전문적 법률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하였다.

11. 법률서비스기관의 설치 요구도

일반국민이나 고소인·고발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면담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기관이 경찰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거의 절대다수인 88.2%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일반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확보와 법률지식의 만족할 만한 습득이 달성된다면 설문결과대로 경찰에 대한 일반국민의 법률서비스 요구와 맞물려 경찰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역할과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표 70〉 법률서비스기관의 설치 요구도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118	24.6
(2) 그렇다	233	48.6
(3) 보통이다	72	15.0
(4) 아니다	42	8.8
(5) 매우 아니다	14	2.9
합 계	479	100

12. 법률서비스 제공 부서

경찰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84.7%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설문결과를 그간의 민원상담실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전문부서의 설치요구와 법률서비스제공을 전담할 전문요원의 확보문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1〉 법률서비스 제공부서의 형태

구 분	빈 도	%
(1)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한다	371	84.7
(2)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	66	15.1
합 계	437	100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면 어떤 부서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민원봉사실 66.5%, 형사업무담당부서 10.6%, 조사업무담당부서 6.1%, 수사업무담당부서 5.6%의 순으로 나타나, 민원부서가 법률서비스와 가장 관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 기존의 부서 활용시 관련도

구 분	빈 도	%
(1) 민원봉사실	119	66.5
(2) 형사업무담당부서	19	10.6
(3) 수사업무담당부서	10	5.6
(4) 조사업무담당부서	11	6.1
(5) 교통업무담당부서	8	4.5
(6) 방범업무담당부서	5	2.8
(7) 외사업무담당부서	0	0.0
(8) 경무업무담당부서	5	2.8
(9) 경비업무담당부서	2	1.1
합 계	179	100

13. 법률서비스담당부서 설치 단위

경찰에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면 어느 단위에 설치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경찰서 55.3%, 지방경찰청 20.8%, 파출소 20.1%의 순으로 나타나, 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 법률서비스제공 대민봉사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표 73〉 법률서비스담당부서 설치 단위

구 분	빈 도	%
(1) 본청	17	3.8
(2) 지방경찰청	96	20.8
(3) 경찰서	255	55.3
(4) 파출소	93	20.1
합 계	461	100

직업별로는 농·수산업의 82.3%, 공무원/국영기업의 62.2%, 학생의 60.4가 경찰서에 응답하여 다른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74〉 직업별 법률서비스 단위

구분	합계	학생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국영기업	전문직	농·수 산업	주부	생산직	기타
(1) 본청	17 (3.7)	2 (2.0)	5 (7.1)	3 (5.2)	3 (3.3)	—	1 (5.9)	1 (2.0)	—	2 (5.7)
(2) 지방 경찰청	96 (20.8)	22 (21.8)	19 (27.1)	14 (24.1)	14 (15.6)	9 (30.0)	—	8 (16.3)	5 (45.5)	5 (14.3)
(3) 경찰서	255 (55.3)	61 (60.4)	37 (52.9)	28 (48.3)	56 (62.2)	17 (56.7)	14 (82.3)	22 (44.9)	4 (36.4)	16 (45.7)
(4) 파출소	93 (20.2)	16 (15.8)	9 (12.9)	13 (22.4)	17 (18.9)	4 (13.3)	2 (11.8)	18 (36.7)	2 (18.1)	12 (34.3)
합계	461 (100)	101 (100)	70 (100)	58 (100)	90 (100)	30 (100)	17 (100)	49 (100)	11 (100)	35 (100)

$\chi^2=52.694$ DF=32 P<0.012

14. 법률서비스의 내용

경찰이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고소·고발사건 47.3%, 청소년문제 14.0%, 방범순찰 11.9%, 교통 10.5%의 순으로 응답을 하여 고소·고발사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면, 경찰에서 고소·고발사건을 여과하여 형사사법단계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안별 경찰의 수사종결권 내지 각하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경찰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며, 주민의 방범안전, 교통문제 등의 경찰에 대한 역할 증대를 일반시민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 법률서비스 중점분야

구 분	빈 도	%
(1) 인·허가 문제	21	4.4
(2) 고소, 고발사건	226	47.3
(3) 가정문제	35	7.30
(4) 청소년문제	67	14.0
(5) 방범순찰	57	11.9
(6) 교통	50	10.5
(7) 기타	22	4.6
합 계	478	100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고소·고발사건에 58.6%가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60세 이상에서는 28.6%가 청소년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6) 연령과 법률서비스 분야 중점도

구 분	합 계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 인·허가문제	21 (4.4)	9 (4.2)	3 (2.0)	8 (11.0)	—	1 (7.1)
(2) 고소고발사건	226 (47.3)	104 (48.6)	71 (48.0)	30 (41.1)	17 (58.6)	4 (28.6)
(3) 가정문제	35 (7.3)	11 (5.1)	12 (8.1)	6 (8.2)	3 (10.3)	3 (21.4)
(4) 청소년문제	67 (14.0)	32 (15.0)	16 (10.8)	13 (17.8)	2 (6.9)	4 (28.6)
(5) 방법순찰	57 (11.9)	20 (9.3)	20 (13.5)	11 (15.1)	4 (13.8)	2 (14.3)
(6) 교통	50 (10.5)	28 (13.1)	15 (10.1)	5 (6.8)	2 (6.9)	—
(7) 기타	22 (4.6)	10 (4.7)	11 (7.4)	—	1 (3.4)	—
합 계	478 (100)	214 (100)	148 (100)	73 (100)	29 (100)	14 (100)

$\chi^2=37.064$ DF=24 P<0.043

15. 법률서비스 담당자

경찰이 법률서비스를 담당한다면 누가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전문상담요원선발 53.4%, 경찰내 변호사 자격자 임용 25.5%, 법학교수 9.8%, 경찰관 7.1%의 순으로 전문상담요원선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찰관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내의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이 시급하다.

〈표 77〉 법률서비스 담당자 요구도

구 분	빈 도	%
(1) 경찰내 변호사자격자 임용	122	25.5
(2) 경찰관	34	7.1
(3) 법학교수	47	9.8
(4) 전문상담요원선발	270	56.5
(5) 기타	5	1.0
합 계	478	100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전문상담요원선발에 응답한 비율이 58.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50대에서 경찰관에 응답한 비율이 10.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78〉 연령별 법률서비스 담당자 선호도

구 분	합 계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 경찰내 변호사 자격자 임용	122 (25.5)	64 (29.9)	34 (22.9)	14 (19.4)	9 (31.0)	1 (6.7)
(2) 경찰관	34 (7.1)	15 (7.0)	8 (5.4)	7 (9.7)	3 (10.3)	1 (6.7)
(3) 법학교수	47 (9.8)	9 (4.2)	18 (12.2)	11 (15.3)	4 (13.8)	5 (33.3)
(4) 전문상담요원선발	270 (56.5)	125 (58.4)	84 (56.8)	40 (55.6)	13 (44.8)	8 (53.3)
(5) 기타	5 (1.1)	1 (0.5)	4 (2.7)	—	—	—
합 계	478 (100)	214 (100)	148 (100)	72 (100)	29 (100)	15 (100)

$\chi^2=32.621$ DF=16 P<0.008

16. 법률서비스 담당부서 장래 이용도

가. 법률서비스 담당부서 장래 이용 여부

경찰에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부서가 생긴다면 자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93.3%의 절대다수가 이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 대 국민 법률서비스의 효과가 아주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서비스 담당부서가 신설될 경우 변호사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법적 구제의 곤란이 해소되고, 일반국민의 법적 구제비용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담당경찰의 도덕성과 사명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경찰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불신을 극복할 수 없다.

(표 79) 법률서비스 담당부서 장래 이용도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34	7.1
(2) 그렇다	229	47.9
(3) 보통이다	183	38.3
(4) 아니다	27	5.6
(5) 아주 아니다	5	1.0
합 계	478	100

학력별로는 총 478명의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는 응답에 대졸 20명 중 13명 65.0%, 전문대졸 323명 중 136명 58.6%, 고졸 172명 중 90명 5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경찰이 직접 담당할 경우 이용도

경찰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78.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80〉 경찰이 직접 담당할 경우 이용도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18	3.8
(2) 그렇다	152	31.9
(3) 보통이다	206	43.2
(4) 아니다	77	16.1
(5) 아주 아니다	24	5.0
합 계	477	100

다. 경찰 이외의 사람이 담당할 경우

경찰 이외의 다른 사람이 경찰의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률서비스를 담당한다면 이용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95.2%가 이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경찰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일반국민은 법률서비스 담당자로 기존의 경찰보다도 전문상담요원의 선발을 통한 법률서비스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표 81〉 경찰 이외의 사람이 담당할 경우 이용도

구 분	빈 도	%
(1) 매우그렇다	43	9.0
(2) 그렇다	305	64.0
(3) 보통이다	106	22.2
(4) 아니다	16	3.3
(5) 아주 아니다	6	1.5
합 계	476	100

다. 경찰이 직접 담당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

경찰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찰을 찾아가 보아야 별 도움을 얻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31.8%, '경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24.8%, '경찰을 찾아가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22.8%, '경찰의 법률적 지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보면, 경찰의 더 국민 신뢰회복과 조속한 법률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82〉 경찰이 직접 담당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
(1) 경찰을 찾아가 보아야 별 도움을 얻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96	32.0
(2) 경찰을 찾아가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68	22.7
(3) 경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75	25.0
(4) 경찰의 법률적 지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50	16.7
(5) 기타	11	3.7
합계	300	100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경찰관을 찾아가 보아야 별 도움을 얻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가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경찰관을 찾아가 보아야 별 도움을 얻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가 각각 28.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83〉 성별과 경찰관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

구분	합계	남	여
1. 경찰관을 찾아가 보아야 별 도움을 얻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96 (32.0)	61 (34.7)	35 (28.2)
2. 경찰에 가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68 (22.6)	42 (23.9)	26 (21.0)
3. 경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75 (25.0)	40 (22.7)	35 (28.2)
4. 경찰의 법률적 지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50 (16.7)	27 (15.3)	23 (18.5)
5. 기타	11 (3.7)	6 (3.4)	5 (4.0)
합계	300 (100)	176 (100)	124 (100)

$\chi^2=15.480$ DF=8 P<0.005

제 4 장 경찰의 역할과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의 기대효과 및 구축을 위한 착안점

제 1 절 경찰에 대한 역할 기대와 경찰의 역할 모델

1. 경찰에 대한 역할 기대

경찰은 사회의 주요한 일부분이며 사회의 구성부분이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 즉,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경찰을 시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자위권의 행사로 파악하는 영미법계 국가이든 또는 경찰의 기능을 전통적인 법집행 및 질서유지 기능에서 보는 대륙법계 국가이든 현대 경찰은 공공에 대한 봉사기능까지를 경찰의 주요 역할로 인식하게 되었다.²⁵⁾ 오늘날 사회기능의 급진적 분화는 사회집단의 분화와 다양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으므로, 경찰은 과거의 질서유지 역할만이 아닌 시대적 변천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으로 경찰의 역할은 조직 내에서 정태적으로 관찰되어 왔던 것으로 질서유지·법집행 그리고 봉사에 두어 왔다. 데이(F. D. Day) 와 갤러티(R. J. Galati)는 경찰의 목적을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 평온의 유지, 생명, 재산 그리고 개인자유 보호라고 규정하였고, 아담스(T. F. Adams)는 범죄예방과 진압, 교통법규 집행, 예방적 순찰서비스, 여웃과 가족 분쟁의 조정, 형사법 위반자의 체포와 구속·도난 재산의 회복으로 규정하였다.²⁶⁾ 이렇게 볼 때 법 집행과 질서유지는 경찰의 역할 중 가장 지배적인 것같이 보이나 통계적 조사에 의한 실증은 정

25) 김상환, 경찰의 역할변화에 따른 대민관계의 정립, 경찰대논문집 제 15집, 경찰대학, 1995, 410면

26) 김상환, 경찰의 역할변화에 따른 대민관계의 정립, 412면

찰이 실제로 하는 일중 범집행 기능은 그의 활동 중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띠고 있다.

경찰의 역할에 대해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도시경찰기능에 관한 기준"에서 ① 범법자와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범법자를 체포하고 재판과정 참여, ② 예방순찰과 기타 방법으로 범행기회 감소, ③ 신체적 위협에 처한 개인의 원조, ④ 헌법적 보장의 보호, ⑤ 사람과 차량이동의 원할, ⑥ 자조능력이 없는 사람의 지원, ⑦ 갈등의 해결 및 잠재적으로 중요한 범집행 문제나 행정적 문제의 확인, ⑧ 지역사회에서의 안정감의 조성과 유지, ⑨ 공공 질서의 촉진과 보전, ⑩ 긴급사태시의 기타 봉사제공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⁷⁾

2. 경찰의 역할 모델

가. 미 국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로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하여 경찰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전의 경찰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미국의 경찰학자인 골드스타인(H. Goldstein)교수는 문제해결중심 접근법을 시도하여 경찰은 원인의 파악이나 장기적 안목이 없이 현실에 국한된 고립적 문제해결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며, 근본적인 원인해결 위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관이나 시민, 기타 관련기관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성향의 치안시책을 지역사회중심치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많은 경찰관서에서 지역사회지향 치안시책을 위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며, 특히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행한 시던 중심의 치안체제, 뉴포트시에서의 문제해결 중심치안, 플린트시에서의 이웃방법 도보순찰 계획

27) American Bar Association, Standards Relating to the Urban Police Function (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1973), p. 53

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와 환경과의 관계 또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통하여 범죄대책을 강구하자는 ‘防禦空間理解’(defensible space theory), ‘環境設計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²⁸⁾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CPTED란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욕구를 통제하고, 한편으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피해자·장소 및 心理機制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설계를 의미한다.

CPTED란 범행을 더 어렵게 하고 거주자에게는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더욱더 안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태적 효과는 범죄행동을 유인하는 물리적 환경특성을 변경시켜 특정지역의 방어공간특성을 높임으로써 범죄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예컨대 조명의 증가, 잠금장치의 개선, 감시장비의 이용, 기타 물리적인 변화는 사회적 응집,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된다. CPTED는 물리적 공간의 설계, 공간에 대한 정상적이고 기대되는 이용, 진실한 이용자와 범죄자의 예측가능한 행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공간의 효과적인 이용을 높이기 위한 범죄예방전략을 통합하는 것이다.²⁹⁾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또는 거리·건물의 물리적 환경조건을 공학적으로 조작하여 주민 또는 범죄자의 행동, 사회유대 등을 바꿔 범죄예방을 달성하려고 하는 수법이다.³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범죄문제에 번민하고 있는 미국에서 전개된 방법기법이다.

CPTED를 통한 대표적 범죄예방사례로서는 미국의 하트포드지역연구, 뉴욕시

28) 이진중, 각국의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형사정책세미나, 1994. 9. 30. 12면 이하 ; 형사정책연구원,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1995. 88면 이하 참조.

29) T. D. Crow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1991. p. 28~29, 40.

30) 송광섭, 형사정책, 96면 참조

의 브라운스빌과 반다이크단지의 비교연구, 뉴욕의 브루켈렌과 세인트루이스의 푸르트아이고단지의 비교연구, 뉴욕에 인접한 크랜스포인트단지연구, 브롱스데일 단지연구 등이 있는데 모두 상당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¹⁾

이러한 지역사회지향 치안시책의 전략은 도보순찰, 정보수집, 피해자상담, 봉사활동, 지역사회의 조직화, 자문역할 수행, 시민교육, 도보와 차량순찰의 동시실시, 일반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활동 뿐 아니라 긴급요청에 대한 신속한 출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범죄로 인한 두려움 해소를 촉진하고 준범정신이 좋은 시민들에게 도덕적 힘을 부여하는 결과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나. 일 본

일본경찰은 주민과 공식적인 것보다는 일상적이고 탈권위적인 접촉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경찰서의 산하조직인 파출소가 한국에서는 아직도 지역사회에 대한 국가질서 유지기관으로서의 인식과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경찰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시설로써 국민과 경찰관 모두에게 인식되고 또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경찰의 대민관계는 매우 양호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최근에는 일본경찰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1) 경찰관에 대한 각종 교양의 실시

- ① 경찰학교에서의 시민응접교양
- ② 업무 manual의 정비, 활용
- ③ 연수회의 개최, 파견연수 실시

2) 창구의부의 개선

31) 양분승, 24시간 편의점의 방법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안행정학회지, 제4호, 1995, 257면 참조

32) 김중남,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4면.

1. 시설 등의 개선
2. 장구담당직원
3. 사업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추진
 - 3) 안내의무의 적극화 추진
 - 4) 상담업무의 적극 추진
 1. 상담체계의 정비
 2. 상담실의 설비
 3. 적임자의 배치
 - 5) 지역사회주민으로부터 적극적 의견청취
 - 6) 기타 시책
 1. 유실물관계사업의 개선
 2. 파출소 등에서의 직원부재시의 대책

일본에서도 CPTED를 통한 대표적 범죄예방사례로서 나고야시의 방법모델도 보연구, 유가와 도시카즈의 방법디자인 기법연구 등이 있다.

제 2 절 우리 나라 경찰의 새로운 역할변화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구조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보다 높은 고품질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작금 우리 나라는 치안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범죄가 질적·양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찰체제는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효과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내부역량이 아직 미약하고, 폭발하는 치안수요에 대하여 물리적 상재력만으로 대응하는 원시적 단계의 경찰활동을 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같은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

1. 시설 등의 개선
2. 장구담당직원
3. 사업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추진
 - 3) 안내의무의 적극화 추진
 - 4) 상담업무의 적극 추진
 1. 상담체계의 정비
 2. 상담실의 설비
 3. 적임자의 배치
 - 5) 지역사회주민으로부터 적극적 의견청취
 - 6) 기타 시책
 1. 유실물관계사업의 개선
 2. 파출소 등에서의 직원부재시의 대책

일본에서도 CPTED를 통한 대표적 범죄예방사례로서 나고야시의 방법모델도 보연구, 유가와 도시카즈의 방법디자인 기법연구 등이 있다.

제 2 절 우리 나라 경찰의 새로운 역할변화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구조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며, 국민의 보다 높은 고품질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작금 우리 나라는 치안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범죄가 질적·양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찰체제는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효과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내부역량이 아직 미약하고, 폭발하는 치안수요에 대하여 물리적 상재력만으로 대응하는 원시적 단계의 경찰활동을 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같은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

었고, 경찰 스스로가 모든 치안환경에 혼자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전세계가 탈냉전시대에 돌입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탈냉전과 냉전의 현실을 공유하는 이중적 상황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격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공정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고, 대 테러 대응전략, 해양안보능력의 제고 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범죄의 증가, 사회이탈현상 등 치안 혼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이기주의가 표면화되어 각종 집단민원과 민원성 시위가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입확대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의 연장을 허용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주민의 지역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이 만족할 만한 경찰활동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도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위협과 애로사항 및 불편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을 먼저 찾아 가는 경찰, 빈민지역에서의 봉사활동, 장애인·민원인을 위한 상담경찰,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급소를 찾아 굽어 주는 급소경찰, 격조높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경찰 등 그 역할과 기대의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지방화시대의 국민여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의미와 함께 경찰의 서비스 영역을 보다 넓은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경찰은 그 경찰력 행사의 우선 순위를 시국치안의 역량강화에 두어 국가안보의 논리가 정권보위의 논리로 왜곡되는 현실에서 경찰이 마치 특정정권 내지 정당의 친위대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의 역량강화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자본의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경찰행정의 주된 기능을 자본의 집중과 이탈로부터 소외되거나 낙오된 노동자, 시민 계층의 보호자적 역할 또는 적극적으로 시민자적 역할도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은 대화의 단절과 지역공동체로의 연대가 희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규율의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의사교환 및 의사소통의 통로의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의 경찰은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이해와 협조의 증진을 피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경찰·각 사회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위기상황의 발발시에 경찰이 신속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대응전략도 마련하여야 한다.

진술한 경찰의 새로운 역할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먼저 경찰력의 낭비적·비효율적 사용의 요인의 제거에 진력하여야 한다.³³⁾ 먼저 이를 위해서는 고소·고발사건 등을 경찰단계에서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여과시켜 경찰업무의 양을 줄여 다른 경찰활동에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³⁴⁾ 이를 위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수사영역을 보강하며,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하여 법의 무지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과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경찰의 권한이 아닌 사항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민의 편의를 적극 도모함으로써 경찰을 신뢰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찰은 국민들의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통하여 경찰력의 강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33) 검찰에서는 민사사건인데도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사건이나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등 불필요한 고소·고발은 과감히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사건에 대해 종전에는 고검 검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린 지검이나 지청에 계수사나 공소제기를 지시하는데에 그쳤으나 고검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여 항고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여 공소제기 하도록 하였다. 한국일보, 1997. 1. 15. 39면 참조.

34) 지금 현시점에서는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법원으로, 법원은 교정기관으로, 교정기관은 다시 사회로 범죄인을 밀어내고 있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무사안일·책임회피적의 형사사법체계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제 3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의 기대효과

1. 경 찰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으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미지 상승과 경찰 자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의 기대효과가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경찰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표 84>을 살펴 보면,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84.5%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을 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경찰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표 84>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 자가 평가

구 분	빈 도	%
(1) 아주 좋아질 것이다	158	34.6
(2) 좋아질 것이다	228	49.9
(3) 보통이다	47	10.3
(4)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22	4.8
(5) 전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2	0.4
합 계	457	100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서의 문턱이 낮아져 은행처럼 친절하고 부담없는 곳이 되어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경찰은 범죄예방과 대책, 국민 고충의 처리, 교통사고의 예방, 긴급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또는 경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체계가 구축되고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고, 경찰은 국민의 해결사, 가정의 수호자 또는 상담자로서 자리매김 되어, 국민과의 관계가 원활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증진되어 경찰활동

동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법률서비스체계가 구축되면 고소·고발 등에 대한 사전의 법률상담 및 자문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의 감소와 불필요한 형사사법의 낭비요인을 제거 내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리고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지역사회문제, 생활환경문제 등에 대한 상담자, 법률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의 확대를 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적정하고 긍정적인 운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가져 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게는 경찰력의 강화를 이룰 수 있다.

결국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은 경찰이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며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경찰,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경찰, 시민의 치안욕구를 보다 전문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경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경찰, 국민에게 모든 경찰활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지는 경찰상이 확립됨으로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원하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는 발전적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2. 국 민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에 대한 일반시민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며 93.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로 경찰의 대 국민 이미지는 엄청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경찰내의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설치는 대 국민 이미지제고를 통한 경찰력의 강화를 꾀할 수 있고, 경찰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현사회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5〉 법률서비스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경찰이미지 상승도

구 분	빈 도	%
(1) 매우 그렇다	63	13.1
(2) 그렇다	247	52.0

(3) 보통이다	134	28.1
(4) 아니다	28	5.9
(5) 아주 아니다	3	0.6
합 계	477	100

성별과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로 인한 이미지 상승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성별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는 아주 긍정적 응답에 남자의 경우 71.6%, 여자의 경우에는 55.4% 응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6〉 성별과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로 인한 이미지 상승도

구 분	합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아주 아니다
남	289 (100)	43 (14.9)	164 (56.7)	68 (23.5)	12 (4.2)	2 (0.7)
여	186 (100)	20 (10.8)	83 (44.6)	66 (35.5)	16 (8.6)	1 (0.5)
합계	475 (100)	63 (13.4)	247 (52.0)	134 (28.1)	28 (5.9)	3 (0.6)

$\chi^2=16.952$ $DF=8$ $P<0.031$

또한 직업별 법률서비스를 통한 경찰 이미지 상승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직업별로는 법률서비스를 통한 경찰 이미지 상승에 공무원/국영기업에서 78%, 생산직에선 72.7%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87〉 직업별 법률서비스를 통한 경찰 이미지 상승도

구분	합계	학생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국영기업	전문직	농·수 산업	주부	생산직	기타
(1) 매우 그렇다	61 (13.4)	16 (15.4)	10 (13.9)	6 (10.1)	11 (12.1)	7 (23.3)	3 (17.6)	7 (13.2)	-	4 (10.0)

(2)	248	53	36	33	60	12	7	26	8	13
그렇다	(52.0)	(50.9)	(50.0)	(56.0)	(65.9)	(40.0)	(41.1)	(49.1)	(72.7)	(32.5)
(3)보통	134	29	21	20	16	5	5	17	3	18
이다	(28.1)	(27.9)	(29.2)	(33.9)	(17.6)	(16.7)	(29.1)	(32.1)	(27.3)	(45.0)
(4)	28	6	5	—	4	5	2	3	—	3
아니다	(5.9)	(5.8)	(6.9)	—	(4.4)	(16.7)	(11.8)	(5.6)	—	(7.5)
(5)아주	3	—	—	—	—	1	—	—	—	2
아니다	(0.6)	—	—	—	—	(3.3)	—	—	—	(5.0)
합 계	477	104	72	59	91	30	17	53	11	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z^2=53.967 \quad DF=32 \quad P<0.009$$

제 4 절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착안점과 입법론적 고려사항

1.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착안점

우리 나라의 경찰은 아직도 일정부분의 제도와 운영면에서 민주화가 될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기능면에서도 대민봉사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영미법계의 지방자치경찰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지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우선시 하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경찰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찰과 같은 대륙법계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아래에서는 국가가 경찰권을 담당하여 개인의 보호보다는 국가시책의 유지나 증진을 위하여 법집행 및 질서유지 등에 치중하게 되어 자연히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 및 문명시대의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경찰기능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시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이후에는 경찰기능 중 민

(2)	248	53	36	33	60	12	7	26	8	13
그렇다	(52.0)	(50.9)	(50.0)	(56.0)	(65.9)	(40.0)	(41.1)	(49.1)	(72.7)	(32.5)
(3)보통	134	29	21	20	16	5	5	17	3	18
이다	(28.1)	(27.9)	(29.2)	(33.9)	(17.6)	(16.7)	(29.1)	(32.1)	(27.3)	(45.0)
(4)	28	6	5	—	4	5	2	3	—	3
아니다	(5.9)	(5.8)	(6.9)	—	(4.4)	(16.7)	(11.8)	(5.6)	—	(7.5)
(5)아주	3	—	—	—	—	1	—	—	—	2
아니다	(0.6)	—	—	—	—	(3.3)	—	—	—	(5.0)
합 계	477	104	72	59	91	30	17	53	11	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z^2=53.967 \quad DF=32 \quad P<0.009$$

제 4 절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착안점과 입법론적 고려사항

1.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착안점

우리 나라의 경찰은 아직도 일정부분의 제도와 운영면에서 민주화가 될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기능면에서도 대민봉사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영미법계의 지방자치경찰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지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우선시 하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경찰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찰과 같은 대륙법계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아래에서는 국가가 경찰권을 담당하여 개인의 보호보다는 국가시책의 유지나 증진을 위하여 법집행 및 질서유지 등에 치중하게 되어 자연히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 및 문명시대의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경찰기능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시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이후에는 경찰기능 중 민

생치안을 더욱 강조하면서 경찰은 시민과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시민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민주질서의 정착 노력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에는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의 독자적 관청형태를 유지시켰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분민적 경찰위원회의 구성하였고, 집회시위의 허가와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거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국민의 경찰에 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대시민 서비스 요청이 많아져 가는 추세에 맞추어서 경찰의 역할도 대 국민 서비스 위주이어야 한다. 경찰의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관리체제도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 국민서비스 중심적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³⁵⁾

첫째,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불편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설문, 상담, 제안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파악되는 행정수요나 국민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향후 경찰시책에 반영되어야만이 앞으로 경찰의 대응성이 개고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된다.

둘째, 대민봉사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지침만을 기다리거나 지침을 그대로 집행만 해 가지고는 대민봉사의 강화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초일선기관에 있는 경찰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대 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대민봉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찰내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관리차원에서 분임조, 스터디그룹 등의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봉사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지향적, 서비스 지향적, 문제해결적 경찰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직자의 능력개발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경찰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능력의 예로서

35) 김상환, 경찰의 역할변화에 따른 대민관계의 성립, 445면 이하 참조

상담·조정·합의 도출능력, 관리과학, 통계기법, 변취마킹기법 등에 관한 지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의 교육훈련은 이런 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교육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에서 대민봉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의 계층상 최하위에 있고 책임과 권한 면에서 주로 책임만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당 부분은 한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대민 봉사부서의 경우 인력·예산·상비구입 등과 관련한 지원면에서 부족하다. 따라서 어떻게 조직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재설계, 대폭적인 권한 부여, 관리자의 역할 재정립, 관리방법의 개선, 조직의 전통적인 계층구조 개념의 재인식 등이 포함된다.

2. 입법론적 고려사항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서는 먼저 법률적인 뒷받침이 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조직적 측면

경찰청 및 각 지방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조직에 대민봉사부서를 설치하기 위한 법령 및 내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나. 인력적 측면

법률서비스, 즉 대민봉사부서를 담당할 내부 자체 인력의 확보, 특별채용 및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조업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에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업무적 측면

경찰부서의 업무내용중 분산된 법률서비스관련업무를 대민봉사부서에서 담당

할 수 있도록 이관·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타기관과의 연계, 즉 일반행정기관의 민원실, 변호사회, 법무사회, 한국법률구조공단, 참여연대,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과의 관계통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담결과 국민자의 경우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도록 의뢰한다거나 모자원에 가족의 입소를 의뢰하고, 학대받는 아내들의 피난처, 쉼터 등과 같은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와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라. 교육적 측면

대민봉사부서 담당자들의 자질향상과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의식 또는 대국민 봉사자세 확립 등을 위한 특별교육, 일반교육,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대 국민상담 기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재정적 측면

대민봉사부서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제 5 장 법률서비스 관련 외국 사례와 우리 나라

제 1 절 외국의 사례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미국경찰은 경찰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활동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대표적인 모습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과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⁶⁾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시민의 신고에 의하여 반응하는 사후적 활동 대신에 경찰 스스로가 시민의 신고가 있을만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여 사전에 처리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적극적인 문제해결활동과 경찰관의 역할의 재정립을 강조한다. 한편 경찰은 법집행, 질서유지,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지역주민이 신고한 개별적인 사건만을 소극적·수동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경찰은 발생한 사건 그 자체의 처리보다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³⁷⁾ 따라서 경찰활동도 시민의 신고에 대한 사후적 활동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경찰 스스로가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의 해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예방적 기능활동이 강조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범죄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유형의 구체적인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여 사전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예컨대, ‘무질서’의 개념은 ‘가정

36) M. K. Moore, "Problem - Solving and Community Policing", Modern Policing. M. Torry and N. Morris,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ies of Chicago Press, 1992), pp. 99~158; S. Walker, The Police in America :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 - Hill Co., 1992), pp. 27~28

37) 형사정책연구원,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51면

분쟁’, ‘청소년 싸움’, ‘알콜의 남용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범죄진압자’(crime fighters)로서의 지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관리자’(community organizers)로서의 역할까지 그 활동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단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찰활동은 수동적이고 직접적인 범죄의 통제보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강조된다. 또한 범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경찰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범죄 및 기타 지역문제의 해결이 경찰단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찰은 지역사회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야 한다.

2. 미 국

가. 법률정보 데이터 베이스

법률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개가 상업적으로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 등 영미법계통에서 먼저 발달하여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에도 일반화 되어 있으며, 오늘날은 법조실무와 일반국민이 법률정보과학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LEXIS 시스템

38) M. K. Moore, op cit., pp. 99~158

법률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판례가 중요한 법원을 이루는 영미법계통의 법조실무에서 시작되었는데, 판례의 분석과 활용을 위해 한 개인사무소에서 판례를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체계화하여 이용함으로써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기원은 1964년 미국의 오하이오 법률사무소에서 자체사용을 위해 처음 제작한 판례 데이터 베이스를 Mead Corporation 이라는 회사가 인수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확장하여 On Line System으로 일반적으로 상업화함으로써 설립된 LEXIS라는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LEXIS는 그 후 내용이 더욱 확장되어 현재는 미국의 연방법, 주법에 대한 판례와 법령, 문헌 등 법률관련자료는 물론 영국법, 프랑스법에 대한 자료까지 망라적으로 수록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Legal Database로 평가되고 있다. 수록내용으로는 미국연방 및 각주의 판례법전문, 제정법 전문, 또한 미국 이외의 각국 판례법 전문과 관련자료, EU 관련 법령과 판례전문 및 관련자료, 저널 50여종의 법률관련 문헌정보 등 법률분야의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로 전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³⁹⁾ 우리 나라에서도 데이콤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미네소타 웨스트 로(WEST LAW) 시스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미국 최대의 법률서적출판 및 데이터 베이스 회사인 웨스트 로 회사는, 미국의 모든 판례·법령·법률문헌·정기간행물의 발간뿐만아니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베이스 공급·CD롬 제작판매 등 모든 법률에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미국 연방법원 뿐만 아니라 각 주의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전부 입력되어 미국 전역의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에게 즉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관련 데이터 베이스는 컴퓨터통신만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 또는 법률분야별로 CD롬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기도 한다.⁴⁰⁾

39) 유인도, 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법전문제, 법령정보서비스와 국민의 법생활, 제5회 법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 1994.11, 19면.

40)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검색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초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웨스트 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분량은 무려 4백 테라바이트(tera는 10¹² 즉 4백조 바이트)에 이르

따라서 국민들은 법률관련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법률관련의 분쟁에 있어서 궁금증이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⁴¹⁾

3) SEA KING 시스템

시애틀의 킹 카운티(King County) 컴퓨터 통신서비스부는 킹 카운티 지방정부의 법집행기관 및 재무부서 등 핵심전산망을 총괄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이다. 킹 카운티는 지방정부에서 1972년부터 SEA KING이라는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데, 이 시스템은 법원·검찰청·경찰·구치소 등 법집행기관을 모두 연결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20여년 전에 출발해 비교적 낮은 중앙집중식 시스템이지만, 경찰·검찰·법원·교도소를 모두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교환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적인 형태의 정보교환체계를 갖춘 법집행기관 종합전산망이다.⁴²⁾

이곳의 컴퓨터 룸은 넓은 실내공간에 IBM 주전산기와 하드디스크, 콘트롤러 등 각종 전산장비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오퍼레이터는 9명으로 3교대 전일 근무를 하고 있다.⁴³⁾

SEA KING 시스템은 지방정부에서 총괄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 법집행기관을 모두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교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법률서비스 담당기관에 자문을 구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로스쿨(Law-school)에서는 법률검색(legal research)과목을 1년간만 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조인목록적자에 의존하여 판례를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는 법조인이 많다고 한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연방제에 따른 복잡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분야의 데이터 베이스의 필요성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느낀 나라이고 방대한 법률자원이 있는 관계로 세계최대의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 41) 그러나 민간기업이 아닌 경찰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 42) 이같은 형태는 우리 나라 사법분야의 정보화 추진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 43) 그러나 이 전산시스템이 20여년 전에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한시적 지나간 코볼언어와 계층 데이터 베이스(Hierarchical DB)와 비능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근거리 통신망(LAN) 구축을 통한 다운사이징을 추진중에 있는데, IBM 주전산기 시스템과의 호환문제가 어렵다고 한다.

나. WE TIP 시스템

WE TIP 시스템은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 시스템은 마약밀매업자들과 싸우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

사용방법을 보면, 먼저 비밀장소에서 전화교환수가 무료전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전화교환수는 전화가 오면 “여기는 TIP전화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다음 장난전화를 가려내어 도움이 될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25개 항목의 질문을 한 다음 그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제보자의 익명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대신에 암호명과 번호가 부여된다. 제보에 의해 범인이 체포될 경우 법집행기관에서 체포 후에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기대하고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 후 WE TIP 시스템은 마약범죄 이외에 강도, 살인, 어린이 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제보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⁴⁴⁾

WE TIP 시스템을 우리 경찰에 도입하여 직접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범죄자 검거 또는 범죄예방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장난전화 또는 타인을 음해하는 등의 음해성 전화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휴스턴(Houston)의 피해자 상담활동

휴스턴에서는 1983년부터 1984년에 걸쳐 경찰의 지역사회전략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 실험에는 피해자상담활동, 지역파출소, 지역범죄신문, 시민집중순찰,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수행되었다.⁴⁵⁾

44) 김보환,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강화방안, 199년

45) L. P. Brown & M. A. Wycoff, "Policing Houston: Reducing Fear and Improving Service", *Crime & Delinquency*, 1987, pp. 71~89

피해자 상담활동은 경찰관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에 대하여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범죄의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활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영어에 서투른 이주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지역파출소는 지역사회에 상주하는 소규모 파출소로서 경찰관과 지역주민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지역분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 및 기타 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활동한다. 경찰관은 지역사회의 모임을 조직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비행소년과 상담하고 미야에방을 위해 어린이의 지문을 채취하고 범죄유발장소인 광원 등을 순찰하는 활동을 한다. 지역파출소가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범죄와 무질서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민접촉순찰은 경찰관이 순찰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는 것으로서, 순찰중 주민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활동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었으나, 흑인과 전세입주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협력은 지역에 범죄에방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흑인보다 백인에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범죄선분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범죄의 기회를 차단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활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와 같은 휴스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실험에서는 경찰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백인, 자가소유자, 노인에게도 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16) L. P. Brown & M. A. Wycoff, op cit., pp. 71~89; S. Walker, op cit. pp. 161~182.

나타났고, 소수민족·하층의 주민들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실보한 경찰의 시민에 대한 활동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라.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은 1976년 미국 뉴 멕시코주의 엘버쿼크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서구사회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용적인 범죄통제전략 중의 하나이다.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은 중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의 범죄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혐의자가 주민이 제공한 정보의 직접적인 결과로 검거된다면 그 신고자는 현금으로 그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언론매체,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다. 언론매체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시민계몽의 차원을 넘어서 직접 범죄와의 투쟁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더 나아가 언론매체의 대중성, 홍보성을 이용하여 시민참여의 효과를 일반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민간자율방범활동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⁴⁷⁾

마. 가정문제상담소

미국의 가정문제상담소(Family Trouble Clinic: FTC)는 디트로이트와 웨인 카운티의 가족서비스 기관과 디트로이트 경찰과의 협동적인 노력으로써, 가정폭력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7) 최인섭,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 1994.9, 135면

가정폭력, 즉 부부간, 친척간, 친구간, 이웃간의 폭력은 단순한 시민의 문제가 아닌 범죄로 인식되고, 가정폭력을 다루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가정폭력의 원조 대상자와 가정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사업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활발한 여성운동과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힘입어 구타당하는 아내문제가 초점이 맞추어지기 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긴급구호시설과 그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서비스 제공의 형태는 직접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일 본

가. 법률정보 데이터 베이스

일본도 1980년대의 PC 보급과 함께 법률정보를 다루는 데이터 베이스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LEX/데이터 베이스, LEGAL DATABASE, 판례 Master 등 3종의 Legal Database가 정부차원의 커다란 지원을 받으면서 육성되고 있다.

나. 범죄정보센터(110번제도)와 경찰종합상담실 상담전용전화(☎ 9110번)

일본에서는 범죄정보센터(110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범죄정보센터에서는 경찰전화 110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반시민들이 사소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도 경찰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지령실에는 110번 긴급전화신호자 전화번호 및 위치자동식별장치,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순찰출동의 최적루트, 긴급순찰차의 배치상황 등이 대형지도표시판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를 음성·팩시밀리·영상 등으로 데이터 통신용 복합단말장치를 탑재한 순찰차에 자동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체계는 범죄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 지역경찰에서는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종합상담실에는 전국통일번호의 상담전용전화 # 9110번을 설치하여 신상문제, 결혼·이혼문제, 생활곤궁문제, 소년상담, 소비자피해 상담, 각성제 상담, 민사개입 폭력상담, 교통상담 등 모든 유형의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종합상담전용전화, 즉 # 9110번은 그 활용도나 만족도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의 # 9110번의 이용실적을 살펴 보면, 남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곤란한 상담이 1994년에 총 216,098건이 접수되었다. 상담내용별로 보면, 가정문제에서 신상문제 28,884건으로 13.4%, 결혼·이혼문제 4,734건으로 2.2%, 생활곤궁 13,574건으로 6.3%, 기타 14,686건으로 6.8%로 나타나고 있고, 민사문제의 경우 금전대차분제 10,593건으로 4.9%, 토지가옥문제 6,934건으로 3.2%, 물품인수문제 3,199건으로 1.5%, 기타 11,808건으로 5.4%, 방법문제의 경우 위협방지 및 범죄예방 36,901건으로 17.1%, 기타 37,957건으로 17.5%, 기타 46,828건으로 21.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담의 처리상황별로 보면 그 처리내용중 해결이 81,929건으로 37.9%, 조언 또는 지도가 103,026건으로 47.7%, 타기관 인계가 6,818건으로 3.2%, 타경찰서 인계가 4,225건으로 1.9%, 중단이 13,923건으로 6.4%, 계속이 6,177건으로 2.9%로 나타나고 있어 그 성과가 매우 높은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⁴⁸⁾

다. 고오방(交審) 제도

일본 경찰의 특징은 고오방이라 불리는 우리 나라의 파출소와 같은 조직의 역할이다.⁴⁹⁾ 이 고오방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경찰의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오방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범죄신고 뿐만 아니라 거리안내, 주변환경에

48) 警察叢編, 警察白書, 大藏省印刷局, 1995, 78~79년

49) 고오방은 관할연구, 관할면적, 치안중점 대상지역의 수, 범죄발생수율 기준으로 하여 배치되며, 고오방내에 책임구역제를 설정하여 경찰 2인이 1구역을 관할하는 방식의 책임을 지는 고오방내 세부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 불만사항 등 경찰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경찰은 노인이나 장애인, 기타 불우한 환경하에 있는 관내의 주민들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하여 고충을 덜어주고, 상담역할 등을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고오방의 활동에서 특이한 것은 경찰이 도덕적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이들의 행동, 부모나 어른에 대한 공경, 친구간의 우정 등과 같은 문제 까지도 개입하여 적절한 훈계 등을 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없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호적 평가를 받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⁵⁰⁾

라. 방법연락소

일본의 방법연락소는 민간자율방범기구로서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경찰과 접촉함으로써 그 지역의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방법연락소는 통상 30가구 정도의 규모를 포괄하고 있으며, 거의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정 및 이웃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집에 설치된다. 이러한 방법연락소는 경찰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방법연락소의 구체적인 임무는 ① 경찰에 지역내의 각종의 사건·사고 및 범죄발생가능성에 관한 정보제공, ② 범죄예방에 관한 정보와 유인들의 지역주민에게의 배포, ③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연락소는 개별적 시민과 경찰간의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도시 지역에서 양자간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한다.⁵¹⁾

50) 이 고오방제도를 미국, 태국, 싱가포르,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켈라텔피아, 디트로이트, 포틀랜드, 샌디에고 등에서는 미니 경찰서라는 이름으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간판을 영문으로 KOBAN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51) W. L. Ames, *Police and Community i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p. 42

다. 중재센터

중재센터는 시민의 법률분쟁을 ‘문턱이 높은’ 재판에 맡기지 않고, 시민의 손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법정에서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센터는 일본의 제2 도쿄변호사회가 1990년부터 발족·운영하고 있고, 그 후 오사카변호사회도 중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재센터에는 법관에 해당하는 중재인은 전직 법관을 비롯하여 변호사, 학식 소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법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내려진 결론, 즉 합의에 근거하여 조정을 통한 중재에 이룬 해결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나중에 합의에 의거한 중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에 호소할 수도 없다. 중재센터는 자원봉사정신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지만, 중재센터는 민사소송법의 ‘중재’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의 정식기관이다.³²⁾

중재센터의 기능이 법원과 다른 점은 법원의 판결이 위에서 내려지는 것이라면, 중재센터의 결정은 당사자와 같은 눈높이로 조정, 중재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이 중재를 받으려면 변호사회의 ‘법률상담센터’의 상담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안의 중재 회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중재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변호사회의 상담에서 중재센터에의 회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중재센터에서의 중재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4. 영 국

영국의 안전도시운동(Safer Cities Programs; SCP)은 1970~1980년대에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지속적 증가의 상황하에서 1986년 불턴 등 5개 도시에서 범죄문제를 대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활동하는 시범방법계획에서부터 그 시작이 유래되었다. 이 계획은 영국 내무성의 지원으로 시작되어 1987년 10월에 정부의 예산지원은 중단되었지만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

32) 서울YMCA 시민중개실, 시민생활과 법문화, 1993. 12. 18~19년.

하여 계속 실시하여 발전시킨 것이 안전도시운동이다.⁵³⁾

안전도시운동은 내무성의 범죄예방부서에 의하여 20개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운동의 목적은 범죄의 감소와 범죄의 두려움의 감소,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여 보다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도시운동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가정과 상가, 공공건물 등의 보안상태의 개선, 가로등의 개선, 자동차범죄의 감소조치, 청소년 선도활동, 인종차별의 감소활동, 여성·노인 등 범죄취약인구집단의 지원, 약물의 오용 및 남용의 방지활동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5.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예방프로젝트는 범죄위험에 취약한 각 계층에 대하여 각기 다른 별도의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일상적으로 모든 경찰은 자신의 임무수행중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상호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범죄신고를 독려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을 홍보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경찰간에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⁵⁴⁾

가. 청소년을 위한 디스코 프로젝트

푸른 불빛 아래에서의 디스코(Blue Light Discos) 프로젝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층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가 쉽고, 독립심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타인에게 의존치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의 17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과의 유대를 증진하여 범죄 또는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경찰관이 근무시간 외에 청소년들과 함께 디스코 파티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서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회

53) P. Ekblom, "Urban crime prevention : development of policy and practice in England", International Annals of Criminology, 1992, pp. 65~82

54)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신고 증진방안, 76면이하 참조.

를 활용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사회봉사 등 여러 가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경찰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로 성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련되고 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의 신고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경찰에서는 지역사회경찰반(Community Policing Squad ; CP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 및 아동, 그리고 가족관련의 위급상황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중점은 성폭행 피해자의 건강 및 복지, 직업알선, 교육 등에 두고 있고, 피해자를 위한 구호센터의 운영, 피난처의 제공, 피해자들의 자조 모임 등을 조력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반은 위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 쉬운 피해자들의 신고의 촉진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다. 경찰관계 담당관

경찰관계 담당관(Police Liaison Officer)제도는 지역내 소수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경찰관계 담당관은 일반 경찰관 또는 특별히 채용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관계 담당관은 지역내 다양한 이익집단들과 경찰 사이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관계 담당관은 난민, 원주민, 동성연애자 등과 같은 소수 집단을 보호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전달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기 타

유럽에서는 1969년 벨기에에서 'CREDOC'이라는 Legal Database가 제작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독일의 JURIS, 이탈리아의 ITALGIURE 등과 같은

대형 Legal Database들이 제작되었고, 최근에는 EC통합과 관련하여 CELEX라는 EC공동체법에 대한 판례를 수록한 Legal Database도 제작되었다. 유럽의 Legal Database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작업이 진행되어 통일적이고 충실한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⁵⁾

제 2 절 우리 나라

우리 나라는 1980년대초에 사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판례 데이터 베이스 개발에 착수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축과정에서 검색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 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계속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한 데이터 베이스가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도 현행법령정보전산망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1988년 개발된 후 1989년 부터는 법제정보전산망 개발에 착수하여 법령뿐 아니라 포괄적인 법률정보의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간기업에서도 상업적 차원에서 법률데이터 베이스개발에 착수하여 판례와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Legal Database가 상업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⁵⁶⁾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법조인명록, 법률뉴스 등 전문인과 일반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다.

제 3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정리

미국·일본·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제국의 경찰은 여러 가지 제도 또는 경찰활동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5) 유인모, 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법적 문제, 20면.

56) 한국법률정보시스템(KOLIS법률정보), 성진전산정보센터(한국판례정보은행) 등에서는 판례정보, 법률뉴스, 법조인명록, 법정개정표, 법령정보, 입법예고 등을 CD-ROM 또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법령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들 회사에서는 1945년 이후 모든 판례를 전산화하여 임의어, 법률조문,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등 23개 검색항목을 갖춰 판례정보를 비롯한 종합적인 법률정보DB화 하고 있다.

대형 Legal Database들이 제작되었고, 최근에는 EC통합과 관련하여 CELEX라는 EC공동체법에 대한 판례를 수록한 Legal Database도 제작되었다. 유럽의 Legal Database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작업이 진행되어 통일적이고 충실한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⁵⁾

제 2 절 우리 나라

우리 나라는 1980년대초에 사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판례 데이터 베이스 개발에 착수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축과정에서 검색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 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계속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한 데이터 베이스가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도 현행법령정보전산망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1988년 개발된 후 1989년 부터는 법제정보전산망 개발에 착수하여 법령뿐 아니라 포괄적인 법률정보의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간기업에서도 상업적 차원에서 법률데이터 베이스개발에 착수하여 판례와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Legal Database가 상업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⁵⁶⁾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법조인명록, 법률뉴스 등 전문인과 일반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다.

제 3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정리

미국·일본·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제국의 경찰은 여러 가지 제도 또는 경찰활동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5) 유인모, 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법적 문제, 20면.

56) 한국법률정보시스템(KOLIS법률정보), 성진전산정보센터(한국판례정보은행) 등에서는 판례정보, 법률뉴스, 법조인명록, 법정개정표, 법령정보, 입법예고 등을 CD-ROM 또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법령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들 회사에서는 1945년 이후 모든 판례를 전산화하여 임의어, 법률조문,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등 23개 검색항목을 갖춰 판례정보를 비롯한 종합적인 법률정보DB화 하고 있다.

대형 Legal Database들이 제작되었고, 최근에는 EC통합과 관련하여 CELEX라는 EC공동체법에 대한 판례를 수록한 Legal Database도 제작되었다. 유럽의 Legal Database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작업이 진행되어 통일적이고 충실한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⁵⁾

제 2 절 우리 나라

우리 나라는 1980년대초에 사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판례 데이터 베이스 개발에 착수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축과정에서 검색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 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계속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한 데이터 베이스가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도 현행법령정보전산망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1988년 개발된 후 1989년 부터는 법제정보전산망 개발에 착수하여 법령뿐 아니라 포괄적인 법률정보의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간기업에서도 상업적 차원에서 법률데이터 베이스개발에 착수하여 판례와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Legal Database가 상업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⁵⁶⁾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법조인명록, 법률뉴스 등 전문인과 일반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다.

제 3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정리

미국·일본·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제국의 경찰은 여러 가지 제도 또는 경찰활동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5) 유인모, 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법적 문제, 20면.

56) 한국법률정보시스템(KOLIS법률정보), 성진전산정보센터(한국판례정보은행) 등에서는 판례정보, 법률뉴스, 법조인명록, 법정개정표, 법령정보, 입법예고 등을 CD-ROM 또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법령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들 회사에서는 1945년 이후 모든 판례를 전산화하여 임의어, 법률조문,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등 23개 검색항목을 갖춰 판례정보를 비롯한 종합적인 법률정보DB화 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범죄의 진압자 또는 법의 집행자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지역사회주민의 보호자 또는 지원자로서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찰이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외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강구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도입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1. 경찰내 대민봉사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미국경찰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의 신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고가 있을 만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사전에 처리하고 경찰이 다른 기관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과 그 범죄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찰에서도 대민봉사부서를 신설하여 대민봉사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그들이 바라는 문제들을 종합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찰활동으로 국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SEA KING 시스템, 미네소타 웨스트 로 시스템, LEXIS 시스템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법률정보제공체제와 같은 법률정보센터를 경찰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경찰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범죄신고체계 및 범죄보상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미국의 WE TIP시스템과 같이 전화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든지 시민이 익명으로서 신고·제보 또는 경찰을 필요로 할 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더 큰 범죄를 낳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즉 본인이 당한 피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또 다른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죄신고의 증진방안과 피해자상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고, 피해자상담·가정문제⁵⁷⁾ 해결 등을 위한 외근방문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미국·독일의 경우 조직범죄·강력범죄·성폭행범죄 등의 피해자·신고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각종 보호장치가 마련된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보복살인과 협박 등의 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강력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사건해결을 하는데 피해자·증인·목적자의 진술과 증언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법, 증인보호법 등 보호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피의자·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발부시 국민편의 위주로 하여 출석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범죄피해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상담자의 신분, 비밀 및 명예보호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범죄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상수배 등의 방식으로 현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런 현상수배외에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에게도 그 정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범죄신고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7)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민봉사부서에 가정폭력 전담부를 두고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에게는 현장출동을 의무화하여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의 제지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문변호사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일부 자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활동과 운영실적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경찰서별로 자문변호사제를 두어 법률지식의 보충과 법률상담, 의율의 착오 방지 등을 위하여 자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찰내부에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 법률지식의 박약에 대한 비난 불식, 의율의 적정성 확보 등을 꾀하여야 한다.

5. 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사거래관계의 빈번과 인적관계의 복잡화 등으로 민형사상의 문제와 연관된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폭증하고 있는 고소·고발의 증가는 그 처리에 있어서 많은 경찰력의 집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형사사법상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국민의 가장 적극적인 대범죄활동 요구표시인 고소·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88>을 보면, 특히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의 범죄척결요구인 고발은 1995년에는 1994년 보다 9.5%가 감소하는 반면, 범죄피해자의 범죄척결요구인 고소의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범죄로부터 자기보호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88> 고소·고발 접수현황

	고 소	고 발	계
1991	98.268	243.822	342.090
1992	127.159	363.061	390.220
1993	164.361	265.384	429.745
1994	208.665	275.621	484.286
1995	247.117	249.345	496.462

※ 자료 : 경찰백서

따라서 경찰내에 중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중재센터에서는 국민이 경찰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오면 자문변호사, 시민단체의 회원, 학식 소유자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중재결과에 대하여 강제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감도 있기 때문에, 다만 양 당사자간의 이견을 좁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사건화 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인적 낭비를 감소시키는 물론 경찰력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다른 부문에 경찰 역량을 집중시켜 보다 나은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제도는 일 대 일 대면을 통한 갈등의 해결을 강조하지만, 중재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분쟁사항을 중재센터에 의뢰하여 중재센터의 중재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중재센터는 제3자인 중재자가 중립적으로 양당사자의 견해차이를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합의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중재센터를 대민봉사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전담중재요원을 배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양당사자간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사건화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한편 고소·고발 사건이 중재센터의 중재를 거쳐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고발의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각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⁵⁸⁾

58) 1995년 7월 1일부터 경찰에서는 고소·고발각하제도(법무부령 제405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각하제도는 부의한 고소·고발의 낭용·남발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력의 낭비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이 각하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에도 즉시 수사종료후 적사의 지휘를 받아 고소·고발장, 고소·고발인 진술조서 등 그때까지 수사된 자료에 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송치된 사건은 배당절차를 밟은 후 각하결정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사력의 낭비와 사건처리의 지연을 가져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각하결정이 명백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의 권한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경찰은 대 국민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여야 한다.

경찰서 내지 파출소 등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시설로 인식되기 위하여서는 경찰의 친절한 봉사자세의 확립과 외근방문의 활성화, 지역주민과 연계한 치안대책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경찰의 대 국민 서비스의 강화의 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도모, 국민의 신뢰확보 등을 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경찰력의 강화를 가져온다.

7. 지역파출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고오방제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파출소의 기능이 지역주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상담에 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명실공히 민경협력체제가 수립되어 지역경찰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방법연락소, 지역사회경찰관, 경찰관계 담당관 제도와 같이 지역사회주민과 각 단체들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 등도 범죄예방과 경찰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조성적 방안이며, 지역주민과의 의사교환 및 법률서비스 제공 목적의 지역이동출장소제도의 설치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8. 민경협력체제의 구축과 경찰의 지역연대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경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려면 경찰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경찰이 국민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시민에 대한 봉사활동 위주로 변모하고, 방법활동도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찰과 국민이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공동분제로 인식하는 국민과 경찰의 관계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경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먼저 국민들을 경찰의 동반자이자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하여야만이 상호간의 관계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 올 때까지

지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주민들의 불안·불편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급소경찰, 적극적인 봉사경찰로 태어나야 한다.

경찰과 민간인의 협력을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민간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즉 지역방법협의회, 라이온스클럽, 어머니회, 교통봉사대, 자율방법대, 해병전우회, YMCA, YWCA 등의 사회단체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경찰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단체의 실태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항상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⁵⁹⁾ 민간경비업의 지원·육성과 지도도 필요하다.

영국의 안전도시운동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가칭 안전도시운동추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지역주민대표, 조직대표, 각 기관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경찰 주도하에 각 지역의 범죄 또는 기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경찰의 정보와 지역내의 기타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더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는 범죄의 감소를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59) 우리 나라에서는 1976년 경비용역법에 의거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시설 등 경비 수요자와 도급계약에 의해서 민간경비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짧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수준이 낮아 경찰의 범죄예방동반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의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법능력의 향상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국민생활의 안전과 범죄예방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장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방책

제 1 절 대민봉사부서의 신설

1. 기존 대민봉사부서에 대한 경찰의 평가

현재 경찰에서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사항은 주로 민원봉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민원봉사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상담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경찰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표 30>를 분석하여 보면,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할 전문 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85.3%가 아주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경찰관 스스로가 법률서비스 전담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찰이 법률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면 현 경찰조직내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표 32>를 분석하여 보면, 62.8%가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에 설치한다'에 응답하였고, 다만 37.2%는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에 응답하여 전문부서의 설치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력별 법률서비스 설치형태 <표 33>를 분석하여 보면,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한다'에 3년미만 66.7%, 5년미만 65.7%, 10년미만 65.3%, 20년미만 64.5%, 20년이상 56.7%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경력이 낮을 수록 전문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률서비스 부서의 설치 단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표 34>을 분석하여 보면,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면 어느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83.1%가 경찰서에 응답하여, 압도적으로 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⁰⁾ 직급별 설문조사의 결과 <표 35>을 분석하여 보면, 경찰서에 응답한 비율이 경위 93.3%, 경사 87.2%, 경장 81.4% 순으로 경위직급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대민봉사부서의 신설에 대한 국민의 선호

일반시민에게 한 경찰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 <표 71>을 분석하여 보면, 84.7%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간의 민원봉사실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전문부서의 설치요구와 법률서비스제공을 전담할 전문요원의 확보문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서비스담당부서 설치 단위에 대한 설문조사 <표 73>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경찰에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면 어느 단위에 설치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경찰서 55.3%, 지방경찰청 20.8%, 파출소 20.1%의 순으로 나타나, 경찰서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 법률서비스설치 단위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표 74>을 분석하여 보면, 농·수산업의 82.3%, 공무원/국영기업의 62.2%, 학생의 60.4%가 경찰서에 응답하여 다른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수준별로 법률서비스 설치 단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생활수준별로는 상집단의 83.3%, 중집단의 56.4%, 중하집단의 59.3%가 경찰서에 응답하여 다른 계층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기존의 민원봉사실이 수행하여 온 역할의 한계 노출과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일반시민 모두가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새로운 전문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 이 설문결과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결과와 같은 설치단위의 응답이다.

3. 대민봉사부서의 신설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경찰의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여야 한다. 즉,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민봉사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즉, 법률서비스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국의 대민과, 일본에서의 생활안전국 또는 지역과, 미국의 지역사회국과 같은 대민봉사 부서를 설치하여 법률서비스, 청소년문제, 가정문제, 지역사회문제, 생활환경, 법률분쟁의 중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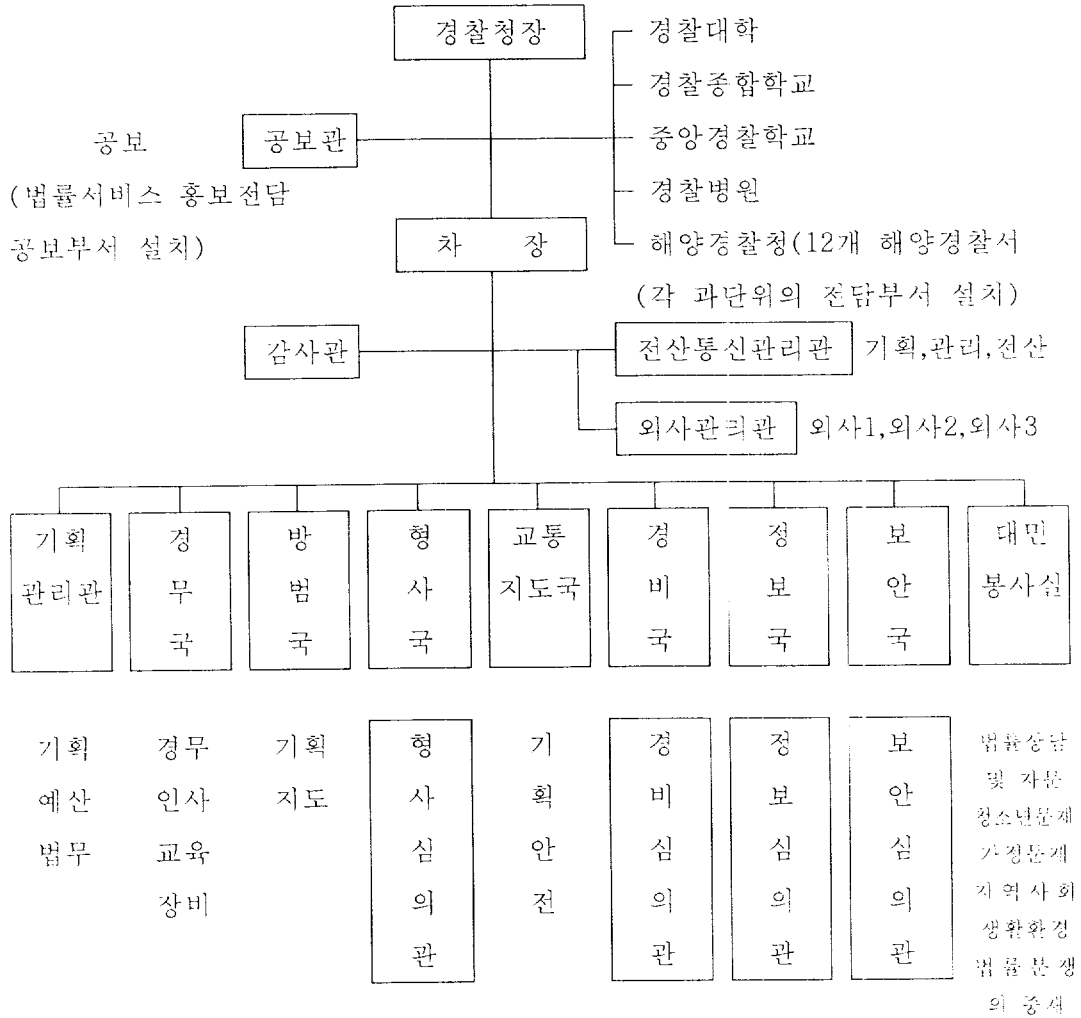
이 부서를 가칭 대민봉사실이라 칭하고, 경찰청에 각 단위조직의 대민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대민봉사실을 두고, 지방경찰청에는 대민봉사실을 담당관제로서 구성하고, 각 경찰서에는 경감급의 책임자로서 대민봉사실을 구성한다. 이 대민봉사실에서 대 국민 법률서비스와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방범부서에서 청소년보호, 보호실 관리, 미아 및 가출인 보호 및 수배, 유실물관리 등과 수사부서에서의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의 민원사건의 접수 및 법률자문 등과 교통부서에서의 도로교통 범칙금관계, 교통관계 민원접수 등과 보안부서에서의 외사 업무중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및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경무부서에서의 민원실 업무를 대민봉사부서에서 관할하도록 전면 이관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홍보관실에 대민봉사 부서의 설치에 대한 홍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찰청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 조직을 각급기관별로 도표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찰청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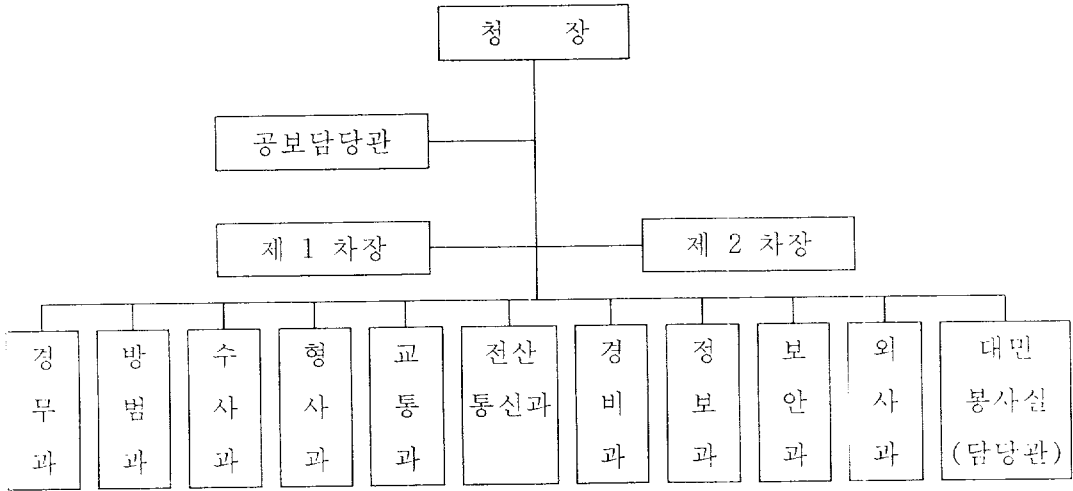
경찰청의 조직



수사	경비	정보1	보안1
특수수사	경호	정보2	보안2
형사	진경	정보3	보안3
조사	항공	정보4	보안4
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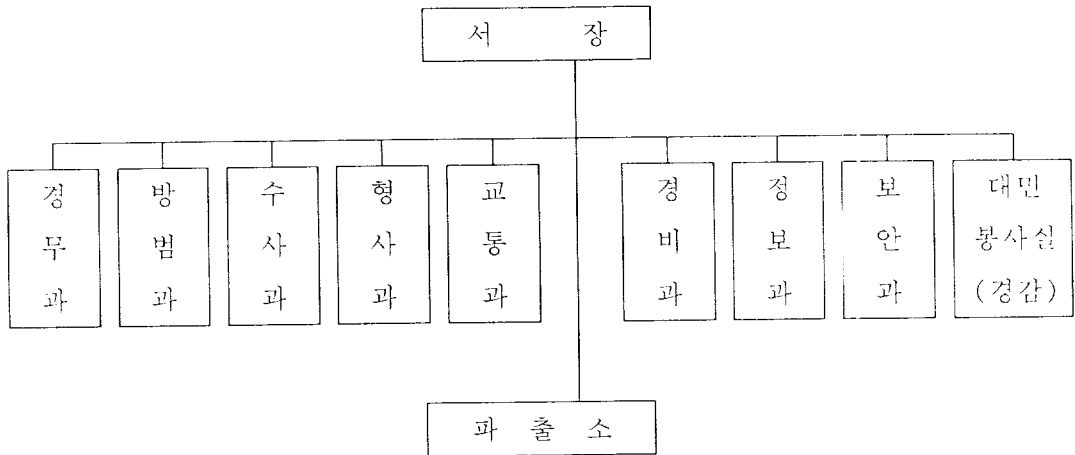
다. 직할시·도 지방 경찰청

〈도 3〉 직할시·도 지방경찰청의 조직



라. 경찰서

〈도 4〉 경찰서의 조직



방법교실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노인층 희망자를 방법운동, 교통안전운동 등 지역활동에 참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점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술한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0 절 시민협력체제의 강화

1. 시민협력단체

종래의 경찰활동에서는 주로 사후대응적이고 수동적인 범죄수사와 시국치안에 주력해 왔으나, 오늘날은 범죄의 사전예방활동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민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활동의 여러 분야는 수요자인 시민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원활히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시민협력기구들은 본래의 취지로 보면 주로 경찰공공관계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경찰대민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나 참여도 부족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민관계 프로그램을 본래의 취지대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우선 청소년선도위원회, 방법자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보안지도위원회 등의 각 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전문가로 구성하여 경찰활동계획 및 평가시 자문을 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경우회, 경승·경목위원회, BBS연맹, 어린이 교통경찰대, 자율방법기동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은 여기에 소속한 주민과 경찰이 사전에 함께 작성한 경찰활동계획에 따라 운용이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2. 경찰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각국의 제도는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지만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직무수행상 감시, 감독, 경고, 중재, 건의 등을 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으로서 민원을 구제하고 행정의 폐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그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그 민원을 매우 신속하고 신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옴부즈만이 민원제기자와 직접 만나 그 불만이나 그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를 경찰에서도 실시하여 시민들의 권리구제 또는 고충처리를 확충하여 시민의 불편이나 애로를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경찰옴부즈만제도는 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을 감시하고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적 통제기구를 말한다. 이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기능을 심사하고 제도개선을 담당해야 하므로 경찰내부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찰옴부즈만제도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찰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다.⁶⁹⁾

또한 현재 우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안모니터링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원하는 바 수렴하고 feed back하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제 11 절 외국인의 범죄와 보호

현대의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범하는 범

69) 이수성,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제언, 경찰장결 50주년과 경찰의 화교, 창경 50주년기념 치안정책 세미나, 1995. 10. 17. 치안연구소, 19~23면 ; 홍순행, 김태웅 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제 2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 치안연구소, 1994. 185면 참조.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각국의 제도는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지만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직무수행상 감시, 감독, 경고, 중재, 건의 등을 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으로서 민원을 구제하고 행정의 폐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그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그 민원을 매우 신속하고 신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옴부즈만이 민원제기자와 직접 만나 그 불만이나 그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를 경찰에서도 실시하여 시민들의 권리구제 또는 고충처리를 확충하여 시민의 불편이나 애로를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경찰옴부즈만제도는 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을 감시하고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적 통제기구를 말한다. 이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기능을 심사하고 제도개선을 담당해야 하므로 경찰내부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찰옴부즈만제도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찰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다.⁶⁹⁾

또한 현재 우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안모니터링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원하는 바 수렴하고 feed back하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제 11 절 외국인의 범죄와 보호

현대의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범하는 범

69) 이수성,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제언, 경찰장결 50주년과 경찰의 화교, 창경 50주년기념 치안정책 세미나, 1995. 10. 17. 치안연구소, 19~23면 ; 홍순행, 김태웅 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제 2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 치안연구소, 1994. 185면 참조.

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약점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국인에게 범죄피해 또는 억울한 사정 등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사건을 처리하고 외국인의 피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외국인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 졌다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하여 그 범인을 검거하여야 한다. 범죄자를 검거하였을 때에 그들과 언어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경찰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이때 대민봉사부서에 외국어에 능통한 요원이 배치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 없다면 해당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처리해야 될 것이다.

외국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외국인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애만 태우고 있을 것이다. 이때에 경찰의 대민봉사부서에서 발행한 팜플렛이나 기타 홍보물에 의해 대민봉사부서를 찾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⁷⁰⁾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면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왔던 20대 조선족 여성이 불법체류를 고발하겠다는 40대 남자의 협박에 8개월동안이나 성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뒤늦게 처벌을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⁷¹⁾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유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대민봉사부서에 국제상담코너의 설치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 국제상담코너에서는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통보를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110번 제도인데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70) 일본에서는 국제상담코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방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어로 된 방법요령 및 경찰통보요령 소개책자나 전단 등을 배부하기도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연수생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체에는 연락협의회를 결성하여 이 협의회와 제휴하여 방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71) 중앙일보, 1996년 11월 5일, 23면.

일본의 나가노현(長野縣)경찰통신지령실에는 외국인으로부터 110번 통보를 지 정통역인에게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외국인 메시지 송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 7개국어의 통역이 즉시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외국인을 위한 통역체계를 확립해 놓거나 통역센터에의 전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확실한 외국인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도 어학능력자의 특채 또는 공개경정임용시험에서 구분 선발하여 이들을 대민봉사부서에 배치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어학능력이 충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즉 각 학교 어학분야의 교수·교사·대학원생, 각 어학학원 강사, 기타 지역사회 주민중 각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하여 명단을 비치하여 놓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12 절 경찰사회사업가 제도

청소년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경찰의 유대가 필요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경찰의 상호협력과 교류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이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소년캠프, 스포츠페스티벌, 청소년음악캠프 등 각종 이벤트 행사나 학교의 자치활동프로그램에 범죄예방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하여 규범의식과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일, 고교생들의 봉사경찰관 임명,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비행방지좌담회 개최,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한 사회봉사활동분야의 개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특히 분세되고 있는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민·경협력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경찰은 전통적으로 공공의 원칙을 엄수해 왔기 때문에 사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로 여겨 왔다. 가정내 폭력에 경찰이 개입을 꺼려왔던 부간섭주의는 오늘날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경찰은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경찰의 개입에 높은 장애물이 되었던 가정내

일본의 나가노현(長野縣)경찰통신지령실에는 외국인으로부터 110번 통보를 지 정통역인에게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외국인 메시지 송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총 7개국어의 통역이 즉시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외국인을 위한 통역체계를 확립해 놓거나 통역센터에의 전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확실한 외국인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도 어학능력자의 특채 또는 공개경정인용시험에서 구분 선발하여 이들을 대민봉사부서에 배치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어학능력이 충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즉 각 학교 어학분야의 교수·교사·대학원생, 각 어학학원 강사, 기타 지역사회 주민중 각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하여 명단을 비치하여 놓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12 절 경찰사회사업가 제도

청소년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경찰의 유대가 필요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경찰의 상호협력과 교류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이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소년캠프, 스포츠페스티벌, 청소년음악캠프 등 각종 이벤트 행사나 학교의 자치활동프로그램에 범죄예방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하여 규범의식과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일, 고교생들의 봉사경찰관 임명,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비행방지좌담회 개최,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한 사회봉사활동분야의 개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특히 분세되고 있는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민·경협력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경찰은 전통적으로 공공의 원칙을 엄수해 왔기 때문에 사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로 여겨 왔다. 가정내 폭력에 경찰이 개입을 꺼려왔던 부간섭주의는 오늘날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경찰은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경찰의 개입에 높은 장애물이 되었던 가정내

라는 답을 경찰이 직접 넘어가기 보다는 경찰과 협동하여 가정내 폭력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이웃간의 분쟁 등 현실적으로 경찰이 사생활의 영역이라서 개입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경찰조직내에 경찰사회사업가⁷²⁾를 두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경찰을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의 크고 작은 문제에 경찰이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이며, 봉사하는 경찰, 문제의 해결사로서의 경찰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경찰사업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민봉사부서 내에서 흡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72) 경찰사회사업가제도에 관해서는 최원규,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활용방안, 치안연구소, 1995 참조.

제 2 절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 및 교육과정

1. 담당인력의 확보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 확보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가. 민간인 전문상담요원 선발

전문상담요원이란 경찰이 아닌 민간인 자원자를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어, 즉 경찰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각 단위부서에 배치한다. 예컨대, 각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상급직위에 배치하고, 각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는 중급관리자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실무에 종사하도록 배치한다.

나. 경찰직 전문상담요원 선발

경찰직 전문상담요원이란 위와 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채용 또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하여 각 전공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정 또는 경감직위에, 석사학위 소지자는 경위 또는 경사직위에, 학사학위 소지자는 경장, 순경직위로 임용하여 각 관서에 배치하고 그들의 임용직위에 따라 업무를 분담케 한다.

다. 경찰내에서 보직 변경에 의한 담당

현 경찰에 재직중인 경찰관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경찰교육기관, 즉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또한 경찰자체내에서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일반대학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 채용시험시 전문분야 세분 선발

경찰간부 후보생 모집시와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시에 모집분야를 전문분야로 세분화하여 모집한다. 일반, 통신, 해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집분야를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 즉, 일반, 수사, 외사, 해양, 항공, 정보통신, 대민봉사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이를 도표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선
일반·통신·해양·항공	일반·수사·외사·해양·항공·정보통신·대민봉사

마. 변호사 자격자의 확보

경찰조직내에 사법시험합격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찰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각 경찰서 단위마다 자문변호사제도를 두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사법시험합격자를 일정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로서 경찰내에 배치하여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며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보조인력의 확보

각 경찰관서에 상담업무 담당자가 있고 중간관리자와 실무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각 분야를 일일이 다 맡아서 처리할 수는 없다. 즉 가정방문, 전화상담, 직접상담, 출장상담 등으로 인한 인력의 부족이 필연적이다. 물론 소요인력이 모두 충원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각 유관기관 단체, 즉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에서의 자원봉사상담, 외국인 문제에 관하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민통역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항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대학과 협조하여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각 경찰관서의 대민봉사부서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 현장학습을 통한 법적응능력의 배양과, 학점 이

수의 필수화 방안과 퇴직한 경찰관중에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3. 인력배치

경찰에서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일반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풍부한 법률적 지식과 인생경륜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적 분쟁의 사실적 내용에 깊숙히 들어가 보면 법률상담 자체가 인생상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인한 대민봉사부서의 근무자는 법률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어려움까지도 상담하고 원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첫째,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자, 둘째, 경찰의 직무를 다양한 분야에서 취급한 자, 셋째, 풍부한 인생의 경륜과 인격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전술한 경찰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경찰의 '경찰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업인인가'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보통 47.1%, 잘못 알고 있다 9.2%, 매우 잘못 알고 있다 2.6%로 나타나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진 경찰에 대한 회의적 내지는 소극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을 묻는 질문에, 아주 많다 3.2%, 많다 15.6%, 보통이다 53.1%, 적다 22.7%, 아주 적다 5.4%로 나타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령별 '법률적 지식과 업무수행의 곤란'을 묻는 질문에, 아주 많다, 많이에 20대 30.5%, 30대 19.6%, 40대 17.5%, 50대 이상 11.8%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력별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아주 많다, 많이에 3년 미만 45.4%, 5년 미만 22.8%로 나타나 비교적 경력이 낮을수록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별 법률상담 요청도'를 묻는 질문에, 40대의 경찰은 95.2%, 50대의 경찰은 88.3%가 법률서비스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연령이 높고 사회적 경륜이 있는 경찰에게 시민이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찰내에 전문인력의 확보와 인력배치가 선결과제이다. 대민봉사부서에서 근무할 사람의 전문적인 법률지식, 사명감, 도덕성과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해당사자의 불신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경찰, 편안한 이웃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요원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4. 법률서비스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강화

경찰에서 법률서비스 교육담당자들에게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이란 경찰관이 법률서비스를 담당함에 있어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완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법률서비스 기능의 특성상 담당자에게는 광범위한 법적 지식과 함께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제1차적 판단과 조치가 요구되며, 따라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법령의 개폐와 그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법률상담·민원사항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교육으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에서 체계적인 신입교육, 보수교육, 각종 전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직장교육으로서는 각급 경찰관서에서 월 1회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으로는 국내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해외교육 기관에 경찰관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교육과정 중에는 법률서비스 관련교육은 없고, 다만 경찰종합학교에서의 직무과정중 민원행정과정이 1주의 기간으로 연 4회에 걸쳐 경위·경사급에 실시되고 있으며, 소양과목에 대민 예절 및 대화술이라는 과목이 경위 기본과정에는 5시간, 경사 기본과정에는 4시간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대민봉사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급 교육기관 또는 각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행하여져야만 한다.

가.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대학으로서 경찰대학생 및 경감이 상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필수·선발교육과 수사지휘등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법률서비스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여 장래에 그들이 각 경찰 관서에 근무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상담기법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설기관으로서 경찰수사연수소 및 보안 경찰연수소가 있어 직무교육과정 및 전문화 교육과정을 통해 경찰간부의 전문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으나, 법률서비스 관계 전문화교육과정도 설치하여 대 국민 법률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과목으로는 예컨대, 상담심리학, 상담기법, 대화기법 등을 들 수 있다.

나. 경찰종합학교

경찰종합학교는 간부후보생과 해양경찰 신입순경과정 등 신입교육과 초급간부인 경사·경위에 대한 필수교육과정과, 일선 현장에서 직접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직무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직무교육과정에 경위·경사를 대상으로 1주간 민원행정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기능이 대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담당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현행 1주간의 교육기간을 확대시키고, 효율적인 교육방법 및 교재 등을 개발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교육과목은 대민 예절 및 대화술이 경사 기본과정 4시간, 경위 기본과정 5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외의 다른 과목, 즉 상담기법, 상담심리학 등의 과목도 신설하여 10시간 이상 교육시켜 법률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는 신입순경에 대한 신규 채용교육 및 전·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서 신입순경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실시하는 신규채용 교육은 일반 공개 채용자와 101경비단, 여경, 전산·통신요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임순경들은 6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소양과 필요한 실기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교육 후에는 바로 일선 경찰기관에 배치되어 직접 국민과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많이 국민과 접촉하게 되는 이들의 교육과목 속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은 예컨대, 상담심리학, 상담기법, 대민 예절 및 대화술 등을 채택하여 10시간 이상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최일선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로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응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어 명실상부한 대민서비스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각 관서별 교육

각 관서에서 법률서비스 담당자들이 자체적인 교육과 서비스 관련 문제집과 애로집 및 우수한 법률서비스 상담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토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 관서별로 그 지역현실에 적합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정보관리시스템의 Networking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 통신기기가 새로이 개발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테이타 통신이 일반화되면서 정보통신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다양한 양질의 경찰 서비스의 수혜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찰종합정보체제 통신망을 구축하여 24시간 ON-Line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느때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에 요청하면 이 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경찰종합 정보체제란 각 기능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자료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경찰관서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

신임순경들은 6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소양과 필요한 실기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교육 후에는 바로 일선 경찰기관에 배치되어 직접 국민과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많이 국민과 접촉하게 되는 이들의 교육과목 속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과목은 예컨대, 상담심리학, 상담기법, 대민 예절 및 대화술 등을 채택하여 10시간 이상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최일선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로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응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어 명실상부한 대민서비스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각 관서별 교육

각 관서에서 법률서비스 담당자들이 자체적인 교육과 서비스 관련 문제집과 애로집 및 우수한 법률서비스 상담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토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 관서별로 그 지역현실에 적합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정보관리시스템의 Networking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 통신기기가 새로이 개발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테이타 통신이 일반화되면서 정보통신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다양한 양질의 경찰 서비스의 수혜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찰종합정보체제 통신망을 구축하여 24시간 ON-Line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느때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에 요청하면 이 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경찰종합 정보체제란 각 기능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자료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경찰관서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① 조직적·인적 측면에서 사무자동화 추진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사무기기의 이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기기·설비면에 있어서는 다기능(Multi-Function)을 가진 사무기기를 확대·보급하여야 될 것이며, ③ 정보관리 및 활용적인 면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보관과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자료의 電算化

경찰정보 및 자료의 전산화는 사무자동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현재 전산처리되는 정보 외에도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그리고 그래프나 영상자료도 경찰업무의 과학화를 위해서 전산처리 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의 디지털화란 경찰업무에 이용되는 모든 문서 및 음성, 또는 영상자료를 실제로 컴퓨터 내의 기억장치 속에 저장되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문서에 인쇄된 글자 자체로는 컴퓨터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컴퓨터에 입력하여 실제로 컴퓨터상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경찰의 전산화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할 때는 일관성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 서식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업무에는 문자정보 보다 음성이나 영상자료, 그리고 그래픽 자료가 더 많이 생성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비문자 정보도 Scanner, Digitiger, Multimedia 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해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경찰업무의 시스템화

경찰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경찰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 해 나가야 한다. 경찰업무들이 시스템화되면 경찰업무

의 처리과정에 일관성이 있고 자동화가 되며, 자료 및 정보가 종합화되고, 자료 및 정보의 입력이 중복되지 않아 노력이 절감되면서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성이 이루어진다. 또 경찰수사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자동화되어 그 진행상황을 모든 경찰단위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효율적인 사건처리 능력이 제고된다. 따라서 전 경찰관 개개인에 대하여 정보통신을 최대한 활용할 정보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구축된다.

양질의 정보처리 환경이 구축되면 개개인의 근무장소에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⁶¹⁾을 통하여 개개인의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된 정보 및 자료들을 즉시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문서의 작성, 발송 등의 업무를 컴퓨터로 수행하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정보처리 요구에 맞는 근무환경을 구축해 주며,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찰의 내 국민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3. 경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최근의 사회·경제가 국제화의 추진 및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치안 정세도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경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업무에 컴퓨터활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 경찰 단위별 업무를 새로운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과 실용화 경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중앙/분석처리 네트워크, UNIX/MS-Dos 등 운영 체제, 중형 또는 대형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의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술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은 사용되어지는 각 시스템들과 상호 연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타기관 전산망과의 연계

61) Workstation은 컴퓨터 단말기 또는 퍼스널 컴퓨터로서 중앙컴퓨터와 연결되어 정보처리를 하는 기기를 말한다.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은 그 규모가 크고 업무 내용면에서 복잡하므로 단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네트워크화

경찰내부와 외부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이들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여야 한다.

나. 분산처리 체계의 확립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분산처리 시스템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와 사무자동화 등이 분산처리 시스템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의 고도화

분산처리되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통신기술과 분산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라. 컴퓨터의 보급과 교육

경찰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퍼스널 컴퓨터, 단말기, 그리고 주전산기가 주를 이룬다.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는 분산처리형 미니컴 주전산기가 한대 이상씩 보급되어야 하며, 사무처리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에게 컴퓨터 또는 단말기가 보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컴퓨터의 보급과 사무자동화 추진과 더불어 전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컴퓨터 사용교육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경찰업무는 각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고, 또 각 기관별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하의상달의 방법에 따라 각 기능별, 그리고 각 기관별 업무전산화에 착수하고 이 작업이 끝난 후 2차적으로 각 기능별로 구성될 기능별·업무별 데이터 베이스의 통합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은 상의하달의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은 시스템 설계상의 두 가지 방법을 상호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축될 경찰 종합정보시스템은 각 기관의 퍼스널 컴퓨터들에 의해 운용되는 워드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전자메일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일차적으로 구축하고,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 위치한 중·소형 전산기기가 각 단위별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 업무의 전산화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상호교환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경찰 유관 기관들과의 통신망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⁶²⁾

5. 국민을 위한 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제공

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일반 국민의 범생활과 관련될 경우 그 정보의 종류와 내용은 생활법률이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생활법률은 각종 민원관련정보와 생활에 직결된 특정 법령조문의 유권해석, 분쟁이 예상되거나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관한 법적 결과의 예상을 위한 정보의 요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법률에 대한 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지능형 정보시스템이 성격

62) 대법원은 그동안 유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간 혹은 관사별 선고형량이 들쭉날쭉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고형량기준인 양형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21세기 사법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서 이 양형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여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양형 데이터베이스란 각 법원의 재판사례를 컴퓨터방에 입력하여 판사들이 유사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참조토록 함으로써 서로 별 차이없이 균정한 선고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상 가장 적합한 것이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의 지능형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전문가시스템이 법령정보의 분야에 서비스되고 있는 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법률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별도의 생활법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⁶³⁾

제 4 절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국민들이 경찰에 어떤 상담내용이나 요구사항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통로가 확보되도록 경찰의 대민봉사부서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⁶⁴⁾

1.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형성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위원회’가 제시한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개선을 위한 공공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동 위원회는 시민자문위원회의 결성 및 경찰과 지역사회지향 치안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채택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상담소 안내의무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사업계획하에 상담체계의 정비 및 상담실의 설치 및 강화, 적임자의 배치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역사회에 관한 일을 전담하는 담당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경찰서 방문을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 지역주민의 고소·고

63) 이준우, 국민의 법생활과 법령정보 체계화, 법령정보서비스와 국민의 법생활, 제5회 법제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 1994. 11. 10, 106~108면 참조

64) 김충남, 경찰의 지역사회관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총, 동국대 중앙행정연구소, 1991, 45~49면 참조.

상 가장 적합한 것이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의 지능형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전문가시스템이 법령정보의 분야에 서비스되고 있는 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법률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법령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별도의 생활법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⁶³⁾

제 4 절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국민들이 경찰에 어떤 상담내용이나 요구사항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통로가 확보되도록 경찰의 대민봉사부서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⁶⁴⁾

1.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형성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위원회’가 제시한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개선을 위한 공공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동 위원회는 시민자문위원회의 결성 및 경찰과 지역사회지향 치안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채택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상담소 안내의무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사업계획하에 상담체계의 정비 및 상담실의 설치 및 강화, 적임자의 배치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역사회에 관한 일을 전담하는 담당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경찰서 방문을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 지역주민의 고소·고

63) 이준우, 국민의 법생활과 법령정보 체계화, 법령정보서비스와 국민의 법생활, 제5회 법제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 1994. 11. 10, 106~108면 참조

64) 김충남, 경찰의 지역사회관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총, 동국대 중앙행정연구소, 1991, 45~49면 참조.

발접수 및 진정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하는 정기적 조사 프로그램

경찰과 지역사회간에 발생하는 마찰이나 쟁점에 관하여 경찰과 주민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 내용 방법 및 대상자를 잘 선정하여 지역사회문제의 공공성과 함께 조사결과에 따른 경찰기관의 조치 및 의견을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알람으로서 feed back의 통로를 용이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경찰관의 현장방문 상담 프로그램

우리 경찰의 경우 종래 호구조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방법심방규칙(1997년 6월 1일 내무부 훈령 제889조)이 제정되어, 경찰관이 각 가정이나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시설물의 안전성, 범죄가능성 등에 관한 상담과 대책을 강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그 활동이 미약하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 사업장, 공공장소 등에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법률상담,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경찰, 또한 경찰이 각급 학교에 1일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경찰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나 청소년 분지 등을 상담하고 해결하여 주어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4. 경찰활동의 홍보 프로그램

경찰기관내 자문위원회, 즉 방법위원회, 대공지도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실

건설서위원회 등과 민간자율단체, 즉 민간인 기동순찰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경찰대, 모범운전자회 등의 사회봉사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경찰이 법률서비스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도록하여 경찰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그 처리에 노력하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제 어느 때나 경찰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가 형성되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법률서비스 관련 업무지침 및 처리과정의 Manual화

법률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업무지침과 처리과정이 Manual화 되어야 한다. 시행초기에는 법률서비스 상담시 시민들이 상담을 요청할 만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그 처리과정 등을 책자형식으로 발간하여 참조케 한다. 그 후 법률서비스 상담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면 그 사례를 모아 분석하여 비슷한 사례별로 그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상담내용이 계속 축적되면 각 부분별·유사형태별로 책자를 발간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여야 한다.

제 6 절 타 기관과의 공조체제 수립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 및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민간 자율단체들은 각기 나뉠대로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청의 한국법률구조공단, 시청의 민원봉사실, 세무서의 민원실, 또한 민간단체에서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활발한 법률서비스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기관들은 어떠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고, 단지 각 기관간의 의문사항이나 필요시 간단한 의견교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종합적인 상호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데, 경찰의 법률서비

건설서위원회 등과 민간자율단체, 즉 민간인 기동순찰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경찰대, 모범운전자회 등의 사회봉사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경찰이 법률서비스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도록하여 경찰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그 처리에 노력하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제 어느 때나 경찰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가 형성되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법률서비스 관련 업무지침 및 처리과정의 Manual화

법률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업무지침과 처리과정이 Manual화 되어야 한다. 시행초기에는 법률서비스 상담시 시민들이 상담을 요청할 만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그 처리과정 등을 책자형식으로 발간하여 참조케 한다. 그 후 법률서비스 상담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면 그 사례를 모아 분석하여 비슷한 사례별로 그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상담내용이 계속 축적되면 각 부분별·유사형태별로 책자를 발간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여야 한다.

제 6 절 타 기관과의 공조체제 수립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 및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민간 자율단체들은 각기 나뉠대로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청의 한국법률구조공단, 시청의 민원봉사실, 세무서의 민원실, 또한 민간단체에서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활발한 법률서비스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기관들은 어떠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고, 단지 각 기관간의 의문사항이나 필요시 간단한 의견교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종합적인 상호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데, 경찰의 법률서비

건설서위원회 등과 민간자율단체, 즉 민간인 기동순찰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경찰대, 모범운전자회 등의 사회봉사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경찰이 법률서비스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도록하여 경찰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그 처리에 노력하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제 어느 때나 경찰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가 형성되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법률서비스 관련 업무지침 및 처리과정의 Manual화

법률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업무지침과 처리과정이 Manual화 되어야 한다. 시행초기에는 법률서비스 상담시 시민들이 상담을 요청할 만한 사례들을 추출하여 그 처리과정 등을 책자형식으로 발간하여 참조케 한다. 그 후 법률서비스 상담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면 그 사례를 모아 분석하여 비슷한 사례별로 그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상담내용이 계속 축적되면 각 부분별·유사형태별로 책자를 발간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여야 한다.

제 6 절 타 기관과의 공조체제 수립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 및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민간 자율단체들은 각기 나뉠대로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청의 한국법률구조공단, 시청의 민원봉사실, 세무서의 민원실, 또한 민간단체에서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활발한 법률서비스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기관들은 어떠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고, 단지 각 기관간의 의문사항이나 필요시 간단한 의견교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종합적인 상호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데, 경찰의 법률서비

스체계가 구축된다면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경찰의 법률서비스 체계를 주축으로 공조체제를 수립하면, 각 기관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법률서비스를 그 기관들의 특색에 따라 서로가 보완하면서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마다 법률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비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제 7 절 입법론적 보완

우리 나라의 현행 경찰관련 법규는 약 60여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경찰에서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대민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법령을 보완·정비해 나가야 한다.

1. 경찰법

경찰관련법령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찰법이다. 경찰법은 경찰조직이 독립된 경찰청으로 승격되면서 그 조직과 작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국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대민봉사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고충의 해결 또는 법률서비스 등의 대민봉사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대민봉사업무를 수행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스체계가 구축된다면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경찰의 법률서비스 체계를 주축으로 공조체제를 수립하면, 각 기관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법률서비스를 그 기관들의 특색에 따라 서로가 보완하면서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마다 법률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비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제 7 절 입법론적 보완

우리 나라의 현행 경찰관련 법규는 약 60여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경찰에서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대민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법령을 보완·정비해 나가야 한다.

1. 경찰법

경찰관련법령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찰법이다. 경찰법은 경찰조직이 독립된 경찰청으로 승격되면서 그 조직과 작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국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대민봉사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고충의 해결 또는 법률서비스 등의 대민봉사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대민봉사업무를 수행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로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경찰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경찰권발동의 남용이나 무분별한 행사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까지도 삽입하여야 한다. 즉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대민봉사부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의 범위는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대민봉사업무의 수행, ⑥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에 대민봉사분야의 구분별 시험과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에도 대민봉사분야의 구분별 시험과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도 대민봉사분야를 삽입하여야 한다.

4. 기 타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가 구축된다면 이에 수반하는 경찰조직 변경, 지원기관 및 지원인력의 보수규정, 법적 성격 및 효력, 법률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과의 업무범위 및 협조사항 등이 입법 추진되어야 한다.

제 8 절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경찰은 경찰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수용함으로써 그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현재는 경찰청공보관실 및 지방경찰청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체계를 전담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내에 대민봉사홍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이나 애로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경찰이 아무리 능동적으로 일을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면 경찰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법률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경찰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직접매체

직접매체란 경찰조직의 구성원, 즉 경찰관 전원을 의미한다. 이는 경찰관 개개인을 직접매체로 하고 대중매체를 간접매체로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찰조직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컨대, 어느 기업에 있어서 사원(외부사원)의 광고활동이 간행물이나 방송·텔레비전을 이용한 광고보다도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원용하여 경찰관이 일상근무 때나 또는 그 밖의 경우를 통하여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⁶⁵⁾ 즉 경찰홍보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단으로는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경찰관 각자가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법률서비스 기능에 관하여 모든 경찰관에게 그 목적 및 시행방법 등을 자세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모든 경찰관들이 관

65) 정기섭, 경찰홍보, 계원각재법령출판사, 1985, 120면

내 순찰시 또는 제조사시, 기타 주민과 접촉시마다 적절한 기회에 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반상회, 좌담회 등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장소에 참여하여 이 새로운 경찰의 법률서비스 기능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간접매체

경찰의 법률서비스 체계를 신문, 방송, TV, 잡지, 전단, 표어, 담화분, 기타인쇄물, 유인물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체계를 인식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그간에 경찰은 KBS의 「사건 25시」와 1994년 1월 26일부터 1994년 3월 24일까지 방영되었던 특집 드라마 「폴리스」, MBC의 「경찰청 사람들」등 TV프로 제작을 지원하여 경찰의 활약상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1994년 10월 중 PC통신망 하이텔에 경찰대학 재학생들과 일선 경찰관들이 주축이 되어 경찰컴퓨터통신 동호회인 「지팡이」를 발족하여 대화방, 자료실, 컴퓨터 문답방, 법률상담방, 사건25시, 토론의 장 등 모두 15개의 메뉴를 갖추고 10만명 이상의 하이텔 가입자에게 경찰의 활동상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전략도 의식과 제도면에서 시민과 가까이 하는 실제적인 시민생활의 현장에서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 경찰의 안내용 팸플릿을 보면, 16쪽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머리에는 '일본은 세계에서든 굴지에 꼽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110번으로 연락해 주시고 아무런 걱정없이 오사카 여행을 만끽해 주십시오'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맨 뒷면에는 오사카 市에 소재한 65개의 경찰서 번호를 사색하게 적어 놓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홍보용 팸플렛에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일본어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홍보물이 거리 곳곳에 있다는 것이다.²²⁾

²²⁾ 경찰신문, 타이텍크 홍보로 새롭게 태어났다, 수사연구, 1996. 5. 122~123면 참조.

이러한 선진국의 지역사회중심의 경찰활동전략을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에 맞추어 전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이나 자전거 순찰에 역점을 둔다거나 시대변화에 걸맞는 경찰복제의 개선, 방법모델 도로의 설정, 민·경 합동의 지역사회 순찰활동, 민·경 친선오락회 등 대 시민접촉과 관계유지의 장을 넓혀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 9 절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일반국민보다 더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노인은 연령에 따른 신체의 특성상 범죄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경찰은 순회연락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집을 방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방법지도 및 애로사항 및 상담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특히 독거 고령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요하므로 정기적·지속적 방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⁶⁷⁾

장애자에 대한 경찰활동은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경찰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장애자를 지원하는 의식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아자들을 위한 수화상담소나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접수를 받아 법률서비스 담당요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애로점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 경찰서의 슬로프 설치 의무화, 수화상담소의 운영,⁶⁸⁾ 범죄 및 사고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법좌담회·

67)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에게 황색의 깃발을 나누어 주어 일정한 시각에 그 깃발을 게양하도록 약속하고, 순찰 중 깃발이 게양되지 않았으면 지역 경찰관이 바로 그 집을 방문하게 하는 지역 경찰관서가 몇군데 있는데 대단히 호평을 받는다고 한다 ; 양분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경찰의 역할 모델, 논문집 제32-1집, 원광대학교, 312면.

68) 일본 오오사카에서 1993년 11월부터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교번 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지역사회중심의 경찰활동전략을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에 맞추어 전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이나 자전거 순찰에 역점을 둔다거나 시대변화에 걸맞는 경찰복제의 개선, 방법모델 도로의 설정, 민·경 합동의 지역사회 순찰활동, 민·경 친선오락회 등 대 시민접촉과 관계유지의 장을 넓혀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 9 절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일반국민보다 더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노인은 연령에 따른 신체의 특성상 범죄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경찰은 순회연락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집을 방문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방법지도 및 애로사항 및 상담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특히 독거 고령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요하므로 정기적·지속적 방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⁶⁷⁾

장애자에 대한 경찰활동은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경찰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장애자를 지원하는 의식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아자들을 위한 수화상담소나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접수를 받아 법률서비스 담당요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애로점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 경찰서의 슬로프 설치 의무화, 수화상담소의 운영,⁶⁸⁾ 범죄 및 사고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법좌담회·

67) 일본에서는 독거 고령자에게 황색의 깃발을 나누어 주어 일정한 시각에 그 깃발을 게양하도록 약속하고, 순찰 중 깃발이 게양되지 않았으면 지역 경찰관이 바로 그 집을 방문하게 하는 지역 경찰관서가 몇군데 있는데 대단히 호평을 받는다고 한다 ; 양분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경찰의 역할 모델, 논문집 제32-1집, 원광대학교, 312면.

68) 일본 오오사카에서 1993년 11월부터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교번 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법교실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노인층 희망자를 방법운동, 교통안전운동 등 지역활동에 참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점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술한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0 절 시민협력체제의 강화

1. 시민협력단체

종래의 경찰활동에서는 주로 사후대응적이고 수동적인 범죄수사와 시국치안에 주력해 왔으나, 오늘날은 범죄의 사전예방활동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민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활동의 여러 분야는 수요자인 시민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원활히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시민협력기구들은 본래의 취지로 보면 주로 경찰공공관계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경찰대민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나 참여도 부족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민관계 프로그램을 본래의 취지대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우선 청소년선도위원회, 방법자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보안지도위원회 등의 각 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전문가로 구성하여 경찰활동계획 및 평가시 자문을 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경우회, 경승·경목위원회, BBS연맹, 어린이 교통경찰대, 자율방법기동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은 여기에 소속한 주민과 경찰이 사전에 함께 작성한 경찰활동계획에 따라 운용이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2. 경찰 옴부즈만 제도

제 7 장 법률서비스체계의 도입모형 및 결론

이상에서는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에 관하여 문헌조사, 공식통계자료 및 내부자료분석, 심층면접 및 설문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검토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법률서비스체계 도입모형

1. 경찰조직정비 및 인력확보

구분	단 기		중 기		장 기		완성기
	도입기		발전기		정착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추진방안							
관 련 조 직 정 비		○					
· 경 찰 청		○					
· 서울지방경찰청		○					
· 지방경찰청		○					
· 경 찰 서		○					
· 과 출 소			○				
전 문 인 력 확 보		○					
· 민간 전문요원 선발		○					
· 경찰직 전문요원 선발		○					
· 경찰내 보직 변경	○						
· 대법봉사 전문분야 경찰선발		○					
· 변호사 자격자 확보	○						
·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확보	○						
· 대학생 봉사자(학교와 연계)확보	○						
· 우수 퇴직경찰관 유치	○						

2. 정보관리 및 교육훈련

구분 추진방안	단 기		중 기		장 기		완성기 2003
	도입기		발전기		정착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정보관리시스템 네트워크			○				
· 경찰청 - 사무기기 보급 - 사무자동화		○ ○ ○					
· 경찰업무의 시스템화 · 경찰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법률서비스교육훈련수요조사	○						
· 민간 전문요원 선발 -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 - 중앙경찰학교 - 직무교육(관서별)		○ ○ ○ ○ ○					
· 대민봉사 교육센터설치 운용		○					
· 지속적 의식 교육 실시	○						
· 어학교육 확대실시	○						
· 컴퓨터교육 확대실시	○						
· 사무자동화 교육 확대실시	○						
· 타부처와 협력교육체제 정비	○						

3.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기타 관련문제

구분 추진방안	단 기		중 기		장 기		완성기
	도입기		발전기		정착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시민협력단체와 연계	○						
· 타기관과의 공조체계 수립	○						
· 읍부즈만 제도 도입		○					
· 대민봉사업무지침 및 처리과정 매뉴얼화	○						
·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					
· 법률서비스체계에 대한 홍보		○					
·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					
· 민원절차 자동안내장치 설치		○					
· 수화상담소 설치		○					
· 통역체계 수립	○						

제 2 절 결 언

오늘날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경찰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날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 동안 시국치안의 첨병 역할을 본의 아니게 수행해 왔던 경찰의 역할이 민생치안 위주의 임무수행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동안 어찌면 법의 집행자로서의 역할로 군림하던 경찰의 모습으로 인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 시민들에게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점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3.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기타 관련문제

구분 추진방안	단 기		중 기		장 기		완성기
	도입기		발전기		정착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시민협력단체와 연계	○						
· 타기관과의 공조체계 수립	○						
· 읍부즈만 제도 도입		○					
· 대민봉사업무지침 및 처리과정 매뉴얼화	○						
·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					
· 법률서비스체계에 대한 홍보		○					
·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					
· 민원절차 자동안내장치 설치		○					
· 수화상담소 설치		○					
· 통역체계 수립	○						

제 2 절 결 언

오늘날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경찰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날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 동안 시국치안의 첨병 역할을 본의 아니게 수행해 왔던 경찰의 역할이 민생치안 위주의 임무수행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동안 어찌면 법의 집행자로서의 역할로 군림하던 경찰의 모습으로 인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 시민들에게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점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우리 경찰이 창설된지 이미 50년이 넘었다. 이제 3년이 지나면 21세기가 된다.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찰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찾아 나가 우리의 토양과 정서에 알맞는 역할의 모색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과 경찰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강화·확대하여, 지역주민을 먼저 찾는 경찰, 주민의 입장에서 본 경찰활동을 추구하여야 한다. 단순한 법의 집행자, 국가질서 유지기관으로서 인식과 역할에서 탈피하여 주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로 경찰과 국민이 하나라는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매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과 시민사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괴리감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로서 거듭 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구축'을 통한 시민과 경찰과의 접점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가 구축됨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소·고발·진정 등의 민원사항을 조기에 화해·조정·형사사건화 불가 등의 방법으로 여과시켜 형사사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와 이로 인하여 남는 경찰력을 대민봉사, 수사 등 다른 부문에 집중 투입하여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 법의 생활화 또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이미지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

〈설문지〉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구축에 관한 설문지』

—경찰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경찰이 더욱더 국민 가까이에서 법의 집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실무자인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제시가 본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응답된 내용은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뿐이므로, 여러분의 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읽어 보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6. 11.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송 광 섭 올림

(연락처)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송광섭 교수 연구실 (0653) 50 0373

(5) 교통	1	2	3	4	5
(6) 방법순찰	1	2	3	4	5
(7) 기타사항	1	2	3	4	5

4. 귀하께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얼마나 겪으십니까?

- (1) 아주 많다 (2) 많다 (3) 보통이다 (4) 적다 (5) 아주 적다

5. 귀하는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법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습니까?

- (1)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2) 적절히 갖게 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다 (5) 아주 적다

* (1), (2), (3) 항에 응답하신 분은 아래 6번 문답에 응해 주십시오.

(4), (5)항에 응답하신 분은 7번 문답에 응해 주십시오

6. 교육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었다면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이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7. 귀하께서는 일반시민들이 “경찰관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업무에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업인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타당하다 (2) 타당하다 (3) 보통이다
(4) 잘못 알고 있다 (5) 매우 잘못 알고 있다

8. 귀하께서는 일반시민들로 부터 시민생활과 관련한 법률상담요청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 (1) 매우 많다 (2) 많다 (3) 보통이다
- (4) 흔하지 않다 (5) 전혀 없다

9. 귀하께서는 일반시민(고소인, 고발인 포함)에게 법률서비스제공을 전담할 전문부서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그저 그렇다
- (4) 필요치 않다 (5) 전혀 필요치 않다고 본다

* (1),(2),(3) 항에 응답하신 분은 아래 10번, 11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4),(5) 항에 응답하신 분은 12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0. 경찰이 법률서비스제공을 전담한다면 현 경찰조직내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한다.
- (2)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

* (1) 항에 응답하신 분은 아래 11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2) 항에 응답하신 분은 12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1.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부서를 새로이 설치한다면 어느 단위부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본청 (2) 지방경찰청 (3) 경찰서 (4) 파출소

12. 기존의 부서를 활용한다면 다음에 열거한 부서 중 어느 부서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 (2) 교통업무담당부서 (3) 방법담당부서
- (4) 경비담당부서 (5) 정보담당부서 (6) 보안담당부서
- (7) 수사담당부서 (8) 형사업무담당부서 (9) 조사업무담당부서
- (10) 외사업무담당부서 (11) 경무업무담당부서 (12) 기타

13. 귀하는 법률서비스 담당부서의 신설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좋아질 것이다 (2) 좋아질 것이다 (3) 보통이다
- (4)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5) 전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14. 경찰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면 이를 전담할 전문인이 누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내 변호사자격자 임용 (2) 경찰관 (3) 법학교수
- (4) 전문상담요원선발 (5) 기 타()

15. 귀하는 법률서비스를 전담할 부서가 설치될 경우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근무하기를 대단히 희망할 것이다 (2) 조금은 희망하게 될 것이다
- (3) 보통이다 (4) 근무하기를 별로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 (5) 현부서에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 (4),(5) 항에 응답하신 분은 아래 16번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6.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결여 (2) 근무조건외 열악 (3) 진급의 어려움
- (4) 법률서비스의 급격한 과중현상 (5) 기타()

17. 귀하는 112신고 즉응체제(112신고후 경찰이 3분안에 현장에 출동하는 것)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 (4)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지 않다

18. 귀하는 어떤 유형의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선진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

(2)

(3)

19.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

(2)

(3)

*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1) 20--29 (2) 30--39 (3) 40--49 (4) 50세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1) 고졸 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졸이상 (5) 기타

3. 귀하의 월 수입은?
 (1) 100만원이하 (2) 150만원이하 (3) 200만원이하 (4) 200만원이상

4.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5. 귀하의 직급은?()
 (1) 순경 (2) 경장 (3) 경사 (4) 경위 (5) 경감 (6) 경정이상

6. 귀하의 경찰경력은?()
 (1) 3년 미만 (2) 5년 미만 (3) 10년 미만 (4) 20년 미만 (5) 20년 이상

7. 귀하의 담당업무는?()
 (1) 수사담당업무 (2) 조사담당업무 (3) 방법담당업무
 (4) 형사담당업무 (5) 경무담당업무 (6) 기타()

8. 귀하의 단위 근무처는?
 (1) 지방경찰청 (2) 경찰서 (3) 파출소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구축에 관한 설문지』

- 시민용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국가의 최일선에서 법률 집행하고 있는 우리 경찰이 더욱더 국민 가까이에서 법의 집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시민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제시가 본 연구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응답된 내용은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뿐이므로, 여러분의 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읽어 보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6. 11.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송 광 섭 올림

(연락처)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송광섭 교수 연구실(0653) 50-6373

*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번호를 괄호안에 기입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주거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 (4) 그렇지 않다 (5) 절대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경찰관과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친밀하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 (4) 친밀하지 않다 (5) 아주 아니다.

3. 귀하는 우리 나라 경찰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매우 잘한다 (2) 잘한다 (3) 보통이다
- (4) 못한다 (5) 아주 못한다

* (1), (2), (3) 항에 응답하신 분은 아래 5번 문답에 응해 주십시오.

(4), (5)항에 응답하신 분은 4번 문답에 응해 주십시오.

4. 경찰의 전반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경우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권위적이기 때문에 (2) 법률적 지식의 부족때문에
- (3) 수사능력 부족때문에 (4) 뇌물을 많이 받기때문
- (5) 기 타 ()

5. 귀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이 되기 위하여 경찰이 가장 노력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사항 중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1) 범인검거 (2) 범죄예방활동강화 (3) 정당한 범집행
- (4) 민원처리 (5) 대면봉사활동 (6) 정보수집
- (7) 시위진압 (8) 기 타 ()

- (1)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 수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부족때문에 (4)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5) 기타()

13.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법률적으로 궁금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1) 아주 많다. (2) 많다. (3) 보통이다.
 (4) 적다. (5) 아주 적다.

14. 앞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그 대상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 (1) 경찰관 (2) 변호사 (3) 법률전문가
 (4) 법무사 (5) 기타()

* (1) 항에 응답하신 분은 아래 15번 문답에 응해 주십시오.

15.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경찰관을 찾아가 상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주변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 경찰관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경찰관이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해줄 것 같아서
 (4) 경찰이 국민 가까이 있기때문에
 (5) 기타()

16. 귀하는 경찰관이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아니다.

* (4), (5)항에 응답하신 분은 17번 문답에 응해 주십시오.

*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은?

- (1) 20-29 (2) 30-39 (3) 40-49 (4) 50-59 (5) 60세 이상

3. 귀하의 결혼여부는?

-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기타

4. 귀하의 가족수는?

- (1) 2인 미만 (2) 3-4인 (3) 5-6인 (4) 7인 이상

5. 귀하의 학력은?

- (1) 중졸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 (5) 대학원졸 (6) 기타

6. 귀하의 직업은?

- (1) 학생 (2) 회사원 (3) 자영업 (4) 공무원/국영기업
(5) 전문직 (6) 농·수산업 (7) 주부 (8) 생산직 (9) 기타

7. 귀하의 주거지역은?

- (1) 상가지역 (2) 농촌지역 (3) 아파트지역
(4) 위락지역 (5) 주택지역 (6) 기타()

8.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십니까?

-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研究報告書 97-17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

1997年 11月 日 印刷
1997年 11月 日 發行

發 行 金 大 圓
編 輯 治 安 研 究 所
印 刷 大 韓 文 化 社

ABSTRACT

Our police from their foundation in confusion and disorder of the first stage of the founding of a country have stopped squirm of communist camp as the foundation police to set up the basis of a free and democratic state and in the time of Korean War have played on important part as a police to defend the nation.

But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unstable society honor and disgrace of our police are interspered, in atonement for their sin of government power, due to role out of the proper duty of police but in spite of difficulty and trouble of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y fulfill their duties by protecting people's life, property, liberty and right and this results from effort to maintain an individual and society.

These days, there is different from scholar's view about the duty of police. O. W. Wilson said, "It is to keep the life and property of people from the attack of crime and maintain safety", and J. L. Sullivan said, "It is protect life and property, sustain public peace, prevent crime, execute a sentence, arrest an offender and restore last property". Nowadays,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police play a role to regulate traffic, supervise a traffic or velocity defender, remedy a criminal, service for public interest, and so on.

Crime is in any time or in any society but each country has an unique method to cope with crime because it badly destroy the peace and order of that society unless it is controlled. In our country, police have made an effort to prevent crime in spite of unfavorable environment, but crime have increased in quantity every year and become systematization intelligence atrocity mobility wide young in quality. Besides the style of crime is so various and dexterous

that criminal investigation become gradually difficult. While science continues to grow and intellectual crime increases, using technical knowledge, the condi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faces a various difficulty. Moreover, growing public resentment, an accusation and indictment is aggravating this situation. Above all, the major factors of this situation are the weak spirit of obeying laws and the lack of dialogue with the person concerned. At present, we should make an effort to maintain the public peace and order.

Moreover, our police, especially the criminal investigation squad, primarily responsible for risk bearing going with crime, a sense of responsibility, proper and clear human rights. What we should consider at first to activate public security is to convert people's senses and guide properly the need of people, expanding contact with them. So given the internal and external state of affairs this time, our police have to be not only an executor but also an agent safeguarding human rights or judge of the court—marshal.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lternatives to meet actively the varied given condition of this society, cultivating investigative ability of police and maximizing law service people.

Law service which public servant doesn't know law--knowledge through the each section of criminals, civils and house hold affairs, solving problem that was happened in common--life for the people who weren't in law--protection as he hadn't know law practice, lest happenirg the improfitable, slavish and oppositive function law dispute from civil service. accusation and complaint through the person concerned good offices when rise slight dispute and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It is purpose to search for a device to build law service, but it is desire to go on study for law service system of the machinery criminal law.

In the next page, we can study for police law service.

In the process of this treatise parallel theoretical process with actual process,

theoretic process draw role model of the police and expectation model of the people through analyzing, systematically, for each research report related with this subject, the interior and external literature study by treatises and books, present business situation of police organization as well as the police bureau and official statistic data also internal data, elating police system and police policy of each advanced country.

As actual process, we draw a factor which is necessity to build law service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and police and investigated through a question's paper about it.

After a question investigation, it's conclusion graft on theoretical study through statistics's analysis.

At the first step, we can considered a plan to build law service system.

At the second step, I suggested presented organiza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pian for efficiency operation of plan.

To the main effects to be expected through research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the first, to crimes and persons associated with cases, the cognate lawful counsel is hastily attained the law enforcement to filter the surge of accusations or civil appeals, and then the effectiveness and the extravagance with public funds would be contributed to be removed.

The second, number of the cases decreased assisted matter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human intellect investigation or the investiga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civilian **law observation and the trust of the police are progressed as well.

The third, the frequent approaches through public activities of the neighborhoods centere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connected and the constructions of the system of civilians and the police improving a mental state to avoid the police authority.

The fourth, to utilize policies of the law services is contributed to accuracy

and substantiality within the security police and improvements of the investigators' quality are also contributed its specialization.

The fifth, beside fields of investigation, to expand justice services such as the fields of traffic and crime prevention creates, pervasive effects and relations of police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 ration function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is contributed not only to find the police new duty and the field of matters diversifying levels but also to serve criminal, preventive law services concerning the police image with kindness and service attitude for civilians.

The sixth, as policies linking law service' lines, to progress the following justice service program is familiar with rel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civilians and thus colliaboration of civilians on the basis of the effective developments with police administration and extensive comprehension settled down the whole field of society.

The seventh, to divert communications and a system of intelligence bases from a system of regional security bases strengthen force of civilian justice.

The eighth, in the enforcements of the police law education the Reengineering of the police system accelerated attains the police' elite which accomplish the special law acquaintance in qualitative levels. The systematic guarantee of excellent workforce hopes for the accuracy from fields of the correct law enforcement and offers qualitative law services through the appointment of special counselors and the education of the police innermore forces.

In the future, the active and leading performanc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cquires a touchstone to draw independen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s right. The order of monograph described about the necessity of studies, the conception of a legal service, the method of studies and expedient effect in the first chapter.

The second chapter considered the change of public peace circumstances, the

quantitative growth and the qualitative change of a crime.

The third chapter analyzed for a related business items of an attitude of a police, in offering a legal service and grasped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ort activities of a legal service.

And the fourth chapter described about the necessity of the role model of America and Japan police, and the role change of Korea police.

There is the point aimed at to drive a legal service system as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grasp how a nation administrative patron has inconvenience, or unsatisfied desire. In order to this, we have to institutionalize a question, a consultation, a proposal, and so on.

Second, it is necessary for a study to improve service for public welfare on police side. On the side what if we can provide the big nation with a legal service, the police that serve at the forefront with a positive attitude have to grasp a legal service and a relative problem, and devise a solution for this.

Third, in order to become a service police, police administration have to be progressed study, improved service and solved problems. And for the sake of this, it must follow the ability development of a public official corresponding to it.

Fourth, it is necessity to have human strength, budget, the support to buy equipment, and so on, in order to be able to perform an effective business of the big nation service bureau.

Fifth, it considered a method of service for public welfare, the information industry and foreigner crime.

Sixth, I adjust problem for law service system.